

국가회계 재지토계

ISSN 2635-7119

2025년 봄호
Vol. 42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국가회계 동향
국가결산체계개편 시리즈 1
(「국가회계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재정통계 동향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분석」 발간

공기업·준정부기관·공익법인회계 동향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현황

센터 동향
제25차 OECD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CONTENTS

2025년 봄호

Vol. 42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국가회계 재정통계

국가회계 동향

- 04 국가결산체계개편 시리즈 1
(「국가회계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 22 2024년 4분기 IPSASB 정례회의 안건 소개
- 56 IPSASB SRS ED 1 - '기후 관련 공시' 의견 제출
- 71 해외 재무결산 동향(호주)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80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 83 2025년 국가회계교육 사업 추진

재정통계 동향

- 90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분석」 발간
- 97 『2024 알기 쉬운 재정통계』 발간

VOL. 42

계간 국가회계재정통계 2025년 봄호

발행인 이 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편집 장우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진태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윤성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분석팀장(결산분석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전화 044-414-2440(센터)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
발행일 2025년 3월 31일
제작처 경성문화사



공기업·준정부기관·공익법인회계 동향

- 100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현황
- 102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일정 및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현황
- 105 일본의 공익법인 관련 회계기준 현황

센터 동향

- 112 제25차 OECD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공지사항

- 127 국가회계재정통계 구독 안내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
재지통계



국가회계 동향



- 국가결산체계개편 시리즈 1
(「국가회계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 2024년 4분기 IPSASB 정례회의 안건 소개
- IPSASB SRS ED 1 – ‘기후 관련 공시’ 의견 제출
- 해외 재무결산 동향(호주)

01 국가결산체계개편 시리즈 1

(「국가회계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가. 시리즈의 구성

국가결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재무제표의 활용도를 높여 국가결산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결산보고서 체계가 개편되었으며, 2025회계연도부터 개편된 내용을 적용하여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이다. 이를 맞아 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총 4개의 시리즈로 구성하여 소개할 계획이다.

각 시리즈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시리즈 1: 「국가회계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시리즈 2: 재무제표 개정 사항

시리즈 3: 국가회계예규 및 계정과목(COA) 주요 개정 사항

시리즈 4: 결산보고서(결산개요, 주식) 주요 개정 사항

이 중 첫 번째 시리즈인 「국가회계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에서

는 개정된 모든 법과 규칙의 개정 전후를 비교해 보여줌으로써 개정의 핵심 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신규 조문 대비표는 신조문 오름차순으로 배치하였으나,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 개정 사유가 동일한 연관 조문들은 묶어서 배치함에 따라 실제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s://law.go.kr>)의 신규 조문 대비표 배치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과 신규 조문 대비표는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국가회계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

-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 추가[별지 제8호 서식]
- 중앙관서 또는 기금, 국가에 각 1개였던 재정운영표에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추가하여 각 2개로 변경
 - 추가된 성질별 재정운영표상 수익, 비용 구분 및 표시 규정 신설
 - 변경된 분야별 재정운영표 구분 표시 방법 신설

중앙관서 또는 기금	국가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별지 제2호 서식]	분야별 재정운영표[별지 제4호 서식]
성질별 재정운영표[별지 제3호 서식]	성질별 재정운영표[별지 제5호 서식]

- 재무제표의 부속서류였던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를 주석으로 통합
- 기존에는 유동, 비유동 계정과목을 구분했으나 재정상태표상 장·단기 구분 없이 단일 계정으로 통합(회계과목(Ⅲ) 이하 레벨에서 장·단기 구분 유지)하는 등의 계정과목 체계(V레벨로 구성)를 전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동반해 수정되어야 할 규칙의 모든 부분 개정

계정과목 체계	대분류(Ⅰ)	중분류(Ⅱ)	회계과목(Ⅲ)	관리과목(Ⅳ)	세부관리과목(Ⅴ)
---------	--------	--------	---------	---------	-----------

- 재정상태표상 표시되는 자산, 부채 중분류(II) 계정을 각각 세 개로 간소화

자산		부채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I. 유동자산	I. 금융자산	I. 유동부채	I. 차입부채
II. 투자자산	II. 유·무형자산	II. 장기차입부채	II. 총당부채
III. 일반유형자산	III. 기타 자산	III. 장기총당부채	III. 기타부채
IV. 사회기반시설		IV. 기타비유동부채	
V. 무형자산			
VI. 기타비유동자산			

- 순자산변동표상 조정항목에 중요성을 고려하여 표시되는 회계과목(III)을 변경
 - (개정 전)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파생상품평가손익,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
 - (개정 후)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보험수리적손익,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



다. 국가회계법

표 1 「국가회계법」 개정 사항

(구) 국가회계법 [법률 제19544호, 2023. 7. 18., 타법개정]	(신) 국가회계법 [법률 제20402호, 2024. 3. 26., 일부개정] ¹⁾
<p>핵심 개정: 국가재정의 현금흐름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산보고서를 구성하는 서류 중 하나인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 항목을 신설</p>	
<p>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3. 재무제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p>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3. 재무제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라. 현금흐름표 4. 성과보고서

주: 1) 부칙(법률 제20402호, 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흐름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호 라목의 개정 규정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표 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71호, 2021. 11. 18., 일부개정]	(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7호, 2024. 7. 31., 일부개정] ¹⁾
<p>핵심 개정: 「국가회계법」 개정 사항에 맞추어 현금흐름표 추가(①항) ▪ 재무제표의 부속서류인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의 주식으로 통합되었으므로, 관련 조문 삭제(②항)</p>	
<p>제5조(재무제표와 부속서류)</p> <p>①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 제3호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p> <p>②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한다.</p> <p>③·④ (생략)</p>	<p>제5조(재무제표)</p> <p>①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 제3호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p> <p>〈삭제〉</p> <p>③·④ (현행과 같음)</p>
<p>핵심 개정: 재정상태표 표시과목은 장·단기 구분 없이 단일 계정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유동성 배열법 관련 조문 삭제</p>	
<p>제8조(재정상태표 작성기준)</p> <p>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 경우 유동성이란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정도를 말한다.</p> <p>② (생략)</p>	<p>제8조(재정상태표 작성기준)</p> <p>〈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p>핵심 개정: 자산 중분류의 간소화(6개→3개)</p>	
<p>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생략)</p> <p>②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p>	<p>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현행과 같음)</p> <p>② 자산은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및 기타 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p>
<p>핵심 개정: 구 체계의 필수보충정보가 신 체계에서 주식으로 통합됨에 따라 유산자산의 종류와 현황을 필수보충정보 공시에서 주식 공시로 개정</p>	
<p>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① (생략)</p> <p>②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이하 “유산자산”이라 한다)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p> <p>③ (생략)</p>	<p>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이하 “유산자산”이라 한다)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주식으로 공시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표 2 의 계속

(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71호, 2021. 11. 18., 일부개정]	(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7호, 2024. 7. 31., 일부개정 ¹⁾]
<p>핵심 개정: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조문을 삭제하고 금융자산, 기타자산 조문 신설</p> <p>* 투자자산의 경우 금융자산으로만 분류되며, 유동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은 금융자산 여부를 판단하여 금융자산, 기타자산 등으로 분리됨</p>	
<p>제11조(유동자산)</p> <p>① 유동자산은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 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및 기타 유동자산 등을 말한다.</p> <p>② 제1항의 단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내이거나 1년 이내에 처분 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을 말하고, 같은 항의 기타 유동자산은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및 재고자산 등을 말한다.</p>	<p>제11조(금융자산)</p> <p>금융자산이란 현금 또는 현금을 추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인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정부출자금, 대여금, 미수채권, 기타 금융자산을 말한다.</p>
<p>제12조(투자자산)</p> <p>① 투자자산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및 기타 투자자산 등을 말한다.</p> <p>② 제1항의 장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후이거나 1년 후에 처분 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 장기투자증권을 말한다.</p>	<p>제13조(기타 자산)</p> <p>기타 자산이란 금융자산과 유·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p>
<p>핵심 개정: ▫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조문을 삭제하고 유·무형자산 조문 신설</p> <p>▫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의 하위 계정과목 나열 삭제</p> <p>▫ 무형자산의 정의에 '물리적 실체가 없음'을 명확화</p>	
<p>제13조(일반유형자산)</p> <p>① 일반유형자산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제14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비품, 기타 일반유형자산 및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 등을 말한다.</p> <p>② 제1항의 전비품은 전쟁의 억제 또는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적인 군사장비와 탄약 등을 말한다.</p>	<p>제12조(유·무형자산)</p> <p>① 유·무형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p> <p>② 일반유형자산이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제3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p>

표 2 의 계속

(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71호, 2021. 11. 18., 일부개정]	(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7호, 2024. 7. 31., 일부개정 ¹⁾]
<p>제14조(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 기타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p> <p>제15조(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으로서,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기타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p>	<p>③ 사회기반시설이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을 말한다.</p> <p>④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을 말한다.</p>
<p>핵심 개정: 부채 중분류의 간소화(4개→3개)</p>	
<p>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① (생략) ②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p>	<p>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채는 차입부채, 충당부채 및 기타 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p>
<p>핵심 개정: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조문을 삭제하고 차입부채, 기타 부채 조문 신설 ▪ '국가채무'와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입부채의 하위 계정과목을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액으로 구분 * 장기차입부채 경우 차입부채로만 분류되며, 유동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는 차입부채 여부를 판단하여 차입부채, 기타 부채로 분리됨</p>	
<p>제19조(유동부채) ① 유동부채는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국채, 단기공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및 기타 유동부채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타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등을 말한다.</p>	<p>제20조(차입부채) 차입부채는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하는 부채로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액 및 기타 차입부채를 말한다.</p>
<p>제20조(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는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후에 만기가 되는 확정부채로서 국채, 공채, 장기차입금 및 기타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p>	
<p>제22조(기타 비유동부채) 기타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장기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채를 말한다.</p>	<p>제22조(기타 부채) 기타 부채는 차입부채와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를 말한다.</p>

표 2 의 계속

(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71호, 2021. 11. 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077호, 2024. 7. 31., 일부개정¹⁾]

핵심 개정: ▪ 제목을 장기충당부채에서 충당부채로 변경
 ▪ 중요성에 따라 재정상태표에 표시되는 회계과목 변경(4개→5개)*
 *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기타충당부채 하위인 관리과목(Ⅳ)으로 내리고, 기타장기충당부채 하위인 관리과목(Ⅳ)에 있던 보증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를 회계과목(Ⅲ) 레벨로 올림

제21조(장기충당부채)

장기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장기충당부채 등을 말한다.

제21조(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충당부채를 말한다.

핵심 개정: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와 국가의 재정운영표 서식 내용(구 ②, ③항)을 각각 신 조문 제25조 ①항, 제26조 ①항에 분리하여 기재

제24조(재정운영표)

-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 ②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 ③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24조(재정운영표)

-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 〈제25조 ①로 이동〉
- 〈제26조 ①로 이동〉

핵심 개정: ▪ 재정운영표를 프로그램별*,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개정(신 ①항)
 ▪ 관리운영비의 정의에 「정부기업예산법」 참조를 삭제하고 개별적 정의로 수정
 ▪ 성질별 재정운영표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 추가(신 ③항)
 *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기존 양식과 유사. 구 ① ~ ④항을 신 ②항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같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 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 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②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 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②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1. 프로그램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text{프로그램순원가} = \text{프로그램총원가} - \text{프로그램수익}$
$\begin{aligned} \text{프로그램총원가} &= (\text{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합계}) \\ &+ (\text{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 \\ &- (\text{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 \end{aligned}$
프로그램수익: 프로그램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표 2 의 계속

(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71호, 2021. 11. 18., 일부개정]	(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7호, 2024. 7. 31., 일부개정 ¹⁾]				
<p>③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더하고, 제3호의 수익은 빼서 표시한다.</p> <p>1. 관리운영비: 기관운영비와 같이 기관의 여러 정책이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정부기업 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에는 관리업무비를 말한다.)</p> <p>2. 비배분비용: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p> <p>3. 비배분수익: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p>	<p>2. 재정운영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td> </tr> <tr> <td>관리운영비: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국가회계실체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 및 특정 프로그램의 행정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와 경비</td> </tr> <tr> <td>비배분비용: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td> </tr> <tr> <td>비배분수익: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td> </tr> </table>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국가회계실체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 및 특정 프로그램의 행정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와 경비	비배분비용: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	비배분수익: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국가회계실체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 및 특정 프로그램의 행정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와 경비					
비배분비용: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					
비배분수익: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					
<p>④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제28조 제2항 제2호의 비교환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빼서 표시한다.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란에 표시한다.</p>	<p>3. 재정운영결과: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 등</td> </tr> <tr> <td>비교환수익 등: 제28조 제2항 제2호의 비교환수익과 그 밖에 재원 이전거래 금액.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란에 표시한다.</td> </tr> </table>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 등	비교환수익 등: 제28조 제2항 제2호의 비교환수익과 그 밖에 재원 이전거래 금액.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란에 표시한다.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 등					
비교환수익 등: 제28조 제2항 제2호의 비교환수익과 그 밖에 재원 이전거래 금액.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란에 표시한다.					
<p>(신 설)</p>	<p>③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비용: 이전비용 및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재정운영결과: 제2호의 비용에서 제1호의 수익을 뺀 금액을 표시 				
<p>핵심 개정: ▪ 국가의 재정운영표를 분야별*,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개정(신 ①항)</p> <p>▪ 성질별 재정운영표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 신설(신 ③항)</p> <p>* 분야별 재정운영표: 기존 중앙관서별 재정운영순원가를 표시하던 방식에서 신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상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유사한 양식으로 변경됨. 단, 제25조의 프로그램순원가 대신 제26조에서는 분야별로 사업순원가를 표시(구 ①항을 신 ②항 분야별 재정운영표와 같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p>					
<p>제26조(국가의 재정운영표)</p> <p>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p> <p>1. 재정운영표: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하되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p>	<p>제26조(국가의 재정운영표)</p> <p>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분야별 재정운영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p>				

표 2 의 계속

(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71호, 2021. 11. 18., 일부개정]	(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7호, 2024. 7. 31., 일부개정 ¹⁾]				
	<p>② 분야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p> <p>1. 사업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업순원가 = 분야별 총원가 - 분야별 수익</td> </tr> <tr> <td> 분야별 총원가 = (분야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합계) + (다른 분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 - (다른 분야에 배부한 원가) </td> </tr> <tr> <td> 분야별 수익: 분야별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td> </tr> </table>	사업순원가 = 분야별 총원가 - 분야별 수익	분야별 총원가 = (분야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합계) + (다른 분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 - (다른 분야에 배부한 원가)	분야별 수익: 분야별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사업순원가 = 분야별 총원가 - 분야별 수익					
분야별 총원가 = (분야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합계) + (다른 분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 - (다른 분야에 배부한 원가)					
분야별 수익: 분야별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 재정운영순원가: 각 중앙관서별로 구분하여 표시	<p>2. 재정운영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재정운영순원가 = 사업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td> </tr> <tr> <td> 관리운영비: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관리운영비를 합산한 금액 </td> </tr> <tr> <td> 비배분비용: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배분비용을 합산한 금액 </td> </tr> <tr> <td> 비배분수익: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배분수익을 합산한 금액 </td> </tr> </table>	재정운영순원가 = 사업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관리운영비: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관리운영비를 합산한 금액	비배분비용: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배분비용을 합산한 금액	비배분수익: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배분수익을 합산한 금액
재정운영순원가 = 사업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관리운영비: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관리운영비를 합산한 금액					
비배분비용: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배분비용을 합산한 금액					
비배분수익: 각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비배분수익을 합산한 금액					
3.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 환수의 등을 빼서 표시	<p>3. 재정운영결과: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의 등</td> </tr> <tr> <td> 비교환수의 등: 제 28조 제2항 제2호의 비교 환수의과 그 밖에 자원 이전거래 금액 </td> </tr> </table>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의 등	비교환수의 등: 제 28조 제2항 제2호의 비교 환수의과 그 밖에 자원 이전거래 금액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의 등					
비교환수의 등: 제 28조 제2항 제2호의 비교 환수의과 그 밖에 자원 이전거래 금액					
<p>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의 재정운영표 작성 방법은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작성 방법을 준용한다.</p> <p>〈신 설〉</p>	<p>〈삭 제〉</p> <p>③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p> <p>1. 수익: 국세수익,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p> <p>2. 비용: 이전비용 및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p> <p>3. 재정운영결과: 제2호의 비용에서 제1호의 수익을 뺀 금액을 표시</p>				

표 2 의 계속

(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71호, 2021. 11. 18., 일부개정]	(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7호, 2024. 7. 31., 일부개정 ¹⁾]
<p>핵심 개정: ▪ 비교환수익 정의에서 하위 항목의 나열 없이 일반적인 문구로 수정 ▪ 성질별 재정운영표 신설에 따라 수익의 정의에 성질별 구분 조문 신설</p>	
<p>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p> <p>① (생략)</p> <p>②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생략)</p> <p>2. 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p> <p><신설></p>	<p>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p> <p>③ 수익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국세수익: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수익</p> <p>2. 이전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을 제외한 수익</p> <p>3. 국가운영수익: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과 제2호의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p>
<p>핵심 개정: ▪ '비용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비용의 정의와 구분', '비용의 인식기준' 조문으로 각각 구분하는 것으로 개정(구 제30조를 신 제30조, 제30조의2로 분리) ▪ 성질별 재정운영표 신설에 따라 제30조(비용의 정의와 구분)에 성질별 구분 조문 신설</p>	
<p>제30조(비용의 정의와 인식기준) ① (생략)</p> <p><신설></p> <p>②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p> <p>1.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p> <p>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p>	<p>제30조(비용의 정의와 구분) ① (현행과 같음)</p> <p>② 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이전비용: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용</p> <p>2. 국가운영비용: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제1호의 이전비용을 제외한 비용</p> <p>제30조의2(비용의 인식기준)</p> <p>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p> <p>1. 재화나 용역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해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p> <p>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p>

표 2 의 계속

(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71호, 2021. 11. 18., 일부개정] (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7호, 2024. 7. 31., 일부개정¹⁾]

핵심 개정: ▪ 성질별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순원가'가 사라짐에 따라 조문상 재정운영순원가로 서술 하던 부분을 모두 재정운영결과로 대체
 ▪ 조정항목은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이 모두 포함되므로 조문상 조정항목 으로 서술하던 부분을 명확하게 모두 순자산조정으로 수정
 ▪ 구 제49조 ②항의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순자산변동표 조정항목 중 하나로 표시되었으나 개 편 후 '기타순자산의증감'에 포함되어 표시되므로 문구 수정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①·② (생략)

③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은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물리적 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 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서 직접 빼서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 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 하며 감액명세를 주석으로 표시한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해당 자산이 감액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장부가 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 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④ (생략)

제46조(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명목가액 과 현재가치 가액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 은 유효이자율로 매 회계연도에 환입하거나 상 각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제47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변동효과는 외화 평가손실 또는 외화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④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손익을 **조정항목**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해당 조정 항목에 반영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 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해당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⑤·⑥ (생략)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은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직접 빼서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감액 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하며 감액명세를 주석으로 표시한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해당 자산 이 감액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 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명목가액 과 현재가치 가액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 은 유효이자율로 매 회계연도에 환입하거나 상 각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제47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변동효과는 외화 평가손실 또는 외화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④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손익을 **순자산조정**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함께 반영하고,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해당 **재정운영 결과**에 반영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표 2 의 계속

(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71호, 2021. 11. 18., 일부개정]	(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7호, 2024. 7. 31., 일부개정 ¹⁾]
<p>제49조(파생상품의 평가) ① (생략)</p> <p>②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발생한 시점에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다만, 미래예상 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 중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p> <p>③ (생략)</p>	<p>제49조(파생상품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발생한 시점에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다만, 미래예상 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핵심 개정: ▪ 체계 개편에 따라 유가증권이 투자증권과 정부출자금으로 분리된 사항 반영 (①항의 유가증권 → 투자증권, 제33조의2(정부출자금의 평가) 조문 신설)</p> <p>▪ 개편 시 단기·장기 구분을 없애 관련 내용 삭제(②항)</p> <p>▪ 투자증권의 경우 기존의 '투자목적'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치 평가 수행(③항)</p> <p>▪ 감액손실 인식 내용은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③항'과 중복되어 삭제(④항)</p>	
<p>제33조(유가증권의 평가)</p> <p>① 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p> <p>② 유가증권은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한다.</p> <p>③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자본증권과 기타 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투자목적의 장기투자증권 또는 단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표시한다.</p> <p>④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 반영한다.</p>	<p>제33조(투자증권의 평가)</p> <p>① 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p> <p>② <삭제></p> <p>③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p> <p>④ <삭제></p>
<p>핵심 개정: ▪ 투자증권과 평가방법이 다른 정부출자금의 평가 조문 신설</p> <p>▪ 출자를 통한 취득이 가능하므로 취득원가로 매입가뿐만 아니라 출자액도 명시</p>	
<p>제33조(유가증권의 평가)</p> <p>① 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p>	<p>제33조의2(정부출자금의 평가)</p> <p>정부출자금은 출자액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품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p>

표 2 의 계속

(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71호, 2021. 11. 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077호, 2024. 7. 31., 일부개정¹⁾]

핵심 개정: ▪ 평가방식이 유사한 대여금을 미수채권과 한 조문에서 명시
 ▪ 제34조 ②항에 용자사업 대여금에 한정해 용자보조원가총당금 설정 문구 신설
 (구 제45조 ①항 용자보조원가총당금 평가 내용을 신 제34조 ②항으로 이동)

<p>제34조(미수채권 등의 평가) 미수채권, 장기대여금 또는 단기대여금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p> <p>제45조(용자보조원가총당금과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①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은 용자사업에서 발생한 용자금 원금과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 차액으로 평가한다. ②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 등에 따른 피보증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자보조원가총당금 및 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4조(대여금 및 미수채권의 평가) ① 대여금 및 미수채권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자사업에서 발생한 대여금의 경우에는 용자금 원금과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용자보조원가총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p> <p>제45조(보증충당부채의 평가) ①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 등에 따른 피보증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	---

핵심 개정: 기준 하위 예규(회계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던 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추가

<p>제40조(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취득 후 지출)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p>	<p>제40조(유·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유·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p>
--	--

핵심 개정: 공채는 국채와 성격, 평가방법이 유사하므로 공채의 평가를 함께 규정

<p>제42조(국채의 평가) ① 국채는 국채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② 국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국채할인(할증)발행차금 과목으로 액면가액에 빼거나 더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그 할인(할증)발행차금은 발행한 때부터 최종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로 상각 또는 환입하여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p>	<p>제42조(국채 및 공채의 평가) ① 국채 및 공채(이하 “국채등”이라 한다)는 국채 등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② 국채등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할인(할증)발행차금 과목으로 액면가액에 빼거나 더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그 할인(할증)발행차금은 발행한 때부터 최종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로 상각 또는 환입하여 국채등에 대한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p>
--	--

표 2 의 계속

(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71호, 2021. 11. 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077호, 2024. 7. 31., 일부개정¹⁾]

핵심 개정: 퇴직급여충당부채 개편 후 계정 체계에 맞추어 제43조에 '기타충당부채 중'을 추가

구분	I	II	III	IV	V
구 계정 체계	부채	장기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신 계정 체계	부채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제43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으로 평가한다.

② (생략)

제43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① 기타 충당부채 중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으로 평가한다.

② (현행과 같음)

핵심 개정: ▪ 연금충당부채와 보험충당부채는 서로 성격이 다르므로 조문을 분리

- 각 충당부채의 평가의 기본적인 내용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이외의 내용을 「국가회계예규」로 위임
- 연금충당부채의 평가방식을 준용하는 퇴직수당충당부채를 연금충당부채의 평가 조문과 함께 규정

제44조(연금충당부채 및 보험충당부채의 평가)

연금충당부채 및 보험충당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44조(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평가)

- ① 연금충당부채는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재직기간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 ② 제1항의 연금추정지급액이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연금가입자에게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장래 예상퇴직시점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보험수리적가정(예상퇴직시점의 장래 추정보수, 전체 추정근무기간 등 연금충당부채와 연금비용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재무적·인구통계적 가정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을 말한다.
- ③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금충당부채”는 “퇴직수당충당부채”로, “연금추정지급액”은 “퇴직수당추정지급액”으로, “연금비용”은 “퇴직수당비용”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2 의 계속

(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71호, 2021. 11. 18., 일부개정]	(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7호, 2024. 7. 31., 일부개정 ¹⁾]
<p>제44조(연금충당부채 및 보험충당부채의 평가) 연금충당부채 및 보험충당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p>	<p>제45조의2(보험충당부채의 평가) ① 보험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예상액과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지급예상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핵심 개정: 개편 후 재무제표에 분야별재정운영표, 성질별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등이 추가되어 별지 서식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하는 명칭으로 수정</p>	
<p>제52조(순자산변동표) ①·② (생략) ③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순자산변동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④ (생략) ⑤ 국가의 순자산변동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p>	<p>제52조(순자산변동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순자산변동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의 순자산변동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p>
<p>핵심 개정: 중요성을 고려하여 순자산변동표 조정항목의 표시과목 수정</p>	
<p>제53조(조정항목) 조정항목은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포함한다.</p>	<p>제53조(조정항목)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보험수리적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p>
<p>핵심 개정: 개편 후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를 추가함에 따라 정의, 작성기준 등 조문 신설 * 현금흐름표 구조: 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 기초 현금 = 기말의 현금</p>	
<p>〈신 설〉</p>	<p>제53조의2(현금흐름표)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의 유입 및 유출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현금흐름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p>
<p>〈신 설〉</p>	<p>제53조의3(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1. 운영활동: 국가의 재정활동 중 제2호의 투자활동과 제3호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활동 2. 투자활동: 자금의 용자와 회수, 투자증권과 유·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활동 3. 재무활동: 자금의 차입과 상환, 국채의 발행과 상환 등 부채와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운영활동의 경우에는 현금의 유입은 원천별로, 현금의 유출은 용도별로 각각 분류하는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표 2 의 계속

(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71호, 2021. 11. 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077호, 2024. 7. 31., 일부개정¹⁾]

핵심 개정: ▪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에서 주식과 통합함에 따라 제54조 및 제56조 삭제
 ▪ 기존의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에서 제공하던 정보를 주식에서 모두 공시할 수 있도록 주식 공시사항을 나열식에서 정의식으로 개정
 ▪ 주식의 항목과 양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결산작성지침)

제54조(필수보충정보)

〈삭 제〉

- 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 하였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 ② 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2. 연금보고서
 3. 보험보고서
 4. 사회보험보고서
 5. 국세징수활동표
 6.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7.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8.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③ 필수보충정보의 작성기준과 서식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주식)

제55조(주식)

- ① 주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주식 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식으로 표시한다.
 1.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3. 장기충당부채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지급보증, 파생상품, 담보 제공자산 명세를 포함한다)
 6. 전기요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7. 순자산조정명세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주식의 작성기준과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① (현행과 같음)
- ② 주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2. 이 규칙에서 주식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
 3.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 ③ (현행과 같음)

표 2 의 계속

(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71호, 2021. 11. 18., 일부개정]	(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7호, 2024. 7. 31., 일부개정 ¹⁾]
--	---

<p>제56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 명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속명세서의 종류, 작성기준 및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삭 제〉</p>
--	--------------

서식

<p>[별지 제1호 서식] 재정상태표 [별지 제2호 서식] 재정운영표(기금, 중앙관서)</p>	<p>[별지 제1호 서식] 재정상태표 [별지 제2호 서식]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기금, 중앙관서) [별지 제3호 서식] 성질별 재정운영표(기금, 중앙관서)</p>
<p>[별지 제3호 서식] 재정운영표(국가)</p>	<p>[별지 제4호 서식] 분야별 재정운영표(국가) [별지 제5호 서식] 성질별 재정운영표(국가)</p>
<p>[별지 제4호 서식] 순자산변동표(기금, 중앙관서) [별지 제5호 서식] 순자산변동표(국가)</p>	<p>[별지 제6호 서식] 순자산변동표(기금, 중앙관서) [별지 제7호 서식] 순자산변동표(국가) [별지 제8호 서식] 현금흐름표</p>

주: 1)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077호, 2024. 7. 3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 제3조(현금흐름표 작성에 관한 특례) 2025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는 제6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02 2024년 4분기 IPSASB 정례회의 안건 소개

2024년 4분기 IPSASB 정례회의가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개최되었다. 2024년 4분기 IPSASB 정례회의에서는 IPSAS 개선 과제 중 ‘중요성 판단 기준’, ‘재무제표 표시’,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된 최신 쟁점이 다루어졌다. 다음 표는 프로젝트별 세부 안건과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프로젝트	안건
중요성	안건 4: 중요성 판단 기준(Project Brief, Making Materiality Judgements)
재무제표 표시	안건 7: 재무제표의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지속가능성	안건 10: 지속가능성 보고(Sustainability Reporting – Research and Scoping)

안건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ipsasb.org/meetings/ipsasb-meeting-39>

가. 중요성 판단 기준(Making Materiality Judgements)

● 프로젝트 목표 및 추진 경과

- (배경) 일반목적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중요성 판단 기준 부재
 - 일부 공공부문실체들이 중요성 판단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없이 IPSAS의 공시 요구사항을 단순 체크리스트로 활용하는 실정임
 - 이러한 관행은 재무제표에서 관련성이 낮은 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는 반면, 실제로 중요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공시 문제를 초래함
 - 공공부문실체가 IPSAS에 따라 일반목적재무제표(General Purpose Financial Statements, 이하 GPFS)를 작성할 때, 명확한 중요성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지침이 필요함

- (목표) IPSAS 기반 GPFS 작성 과정에서의 중요성 판단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 개발

표 1 프로젝트 추진 계획(2024년 12월 현재)

회의시기	추진 단계		주요 논의사항
2024년 12월	PB	이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의 목적 및 범위 논의 • 주요 이슈 논의
2025년 3월	PB	PB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B 승인
2025년 9월	ED	이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초안의 이슈 논의 및 검토
2025년 12월	ED	ED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초안 승인 및 발행(26년 1월)
2026년 4월	ED	의견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조회(26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2026년 6월	ED	의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회신 검토
2026년 9월	IP	검토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검토 및 IPSAS 승인
2026년 10월	IP	기준서 발행	-

● 정례회의 논의사항(발표자: Agustina Llambi)

- 중요성 판단 기준 프로젝트의 목적 및 범위 논의
- 중요성 판단 기준 프로젝트의 주요 이슈 논의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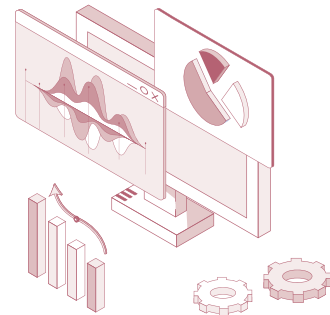


표 2 중요성 프로젝트 세부 안건별 주요 내용 요약

■ 안건 4: 중요성 판단 기준(Making Materiality Judgements)	
안건 항목	내용
Project Brief: 목적과 범위(Objective and Scope)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9월 회의에서 IPSASB는 중요성 판단 기준에 관한 제한적 범위 프로젝트의 착수에 동의함 • 해당 프로젝트는 2021 중기 업무 프로그램 협의(2021 Mid-Period Work Program Consultation)에서 사전 약정된 사항임 • IPSASB는 IFRS 실무서 2, Making Materiality Judgements와 정합성을 갖춘 지침을 개발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는 실체가 IPSAS에 따라 일반목적재무제표(GPFS)를 작성할 때 중요성 판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임
4.2.2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체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중요성 판단을 하기보다는 IPSAS의 공시 요구사항을 점검 표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IPSASB는 중요성 판단 기준 프로젝트를 업무 프로그램(Work Program)에 추가함 • 중요성은 재무제표 작성 시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실체는 IPSAS에 따라 인식, 측정, 표시, 공시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성 판단을 수행하여야 함. 이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실체가 IPSAS의 회계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그 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 재무제표의 주석에 어떤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 판단 방법과 관련된 지침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에 따라 제안된 해당 프로젝트의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음 : IPSAS 기반 GPFS 작성 과정에서의 중요성 판단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 개발 • 이상과 같이 제안된 본 프로젝트의 목적 및 범위는 다음에 부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가 2021 중기 업무 프로그램 협의에서 해당 프로젝트 추진을 사전에 약속한 이유 - 중요성 판단 관련 공공부문 특화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IFRS 실무서 2의 목적 및 범위
Project Brief: 주요 이슈(Key Issues)	
4.2.3	<p>[Staff 권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IPSASB가 Project Brief에 다음의 주요 이슈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IPSASB의 문헌 전반에서 중요성의 정의가 일관되도록 조정 (b) 해당 지침의 지위와 문서의 유형

표 2 의 계속

■ 안건 4: 중요성 판단 기준(Making Materiality Judgements)

안건 항목	내용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연구 및 범위 설정 단계에서 다음의 주요 이슈를 식별하였으며, 이를 Project Brief 범위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음 • IPSASB의 문헌 전반에서 중요성의 정의가 일관되도록 조정 • IFRS 실무서 2는 기업이 IFRS에 따라 일반목적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중요성 판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실무서 2는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 개념체계에 따른 중요성 정의를 차용하며, 이는 IFRS 18,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중요성 정의와 유사함 • 다만 IPSASB 문헌의 경우, IPSAS 1 재무제표의 표시에 따른 중요성의 정의와 IPSASB 개념체계에 따른 중요성의 정의는 서로 차이가 있음. 이러한 차이는 IPSAS 1이 2024년에 개정된 IPSASB 개념체계 제3장 질적 특성의 완료 이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까지 IPSAS 1을 개정하여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고자 논의된 바는 없음 • 또한 IPSAS와 IFRS의 중요성 정의 간에도 서로 차이가 존재함. IPSAS에서는 ‘이용자(users)’를 기준으로 중요성을 정의하는 한편, IFRS에서는 ‘주요 이용자(primary users)’를 기준으로 중요성을 정의함 • 중요성 판단 기준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IPSASB 문헌 전반에서 중요성의 정의가 일관되도록 하는 조정이 필요함.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IPSASB 문헌상 중요성 정의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검토해야 하며, 이는 IPSAS에 따른 중요성 판단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는 데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4.2.3	<p>본 지침의 지위와 문서의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는 해당 지침의 지위와 이러한 지침이 포함될 문서의 유형을 결정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ASB는 중요성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독립적인 비강제 지침인 실무서(Practice Statement) 형태로 발행하였음 (b) IPSASB가 IASB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경우, 어떤 유형의 비강제 문서가 적절한지 결정해야 함



나. 재무제표의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 프로젝트 목표 및 추진 경과

- (배경) IPSAS 개념체계 및 IAS 1 개정 사항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한 현행 IPSAS 1의 개정 소요 발생
 - 현행 IPSAS 1, 재무제표 표시(2006년 최초 개정)와 개념체계(2014년 발표) 간 정합성 검토 필요성 제기
 - IPSAS 1의 개발 토대였던 IAS 1, 재무제표 표시가 2024년 중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로 개정 대체

- (목표)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신규 기준서 발표 및 관련 기준서¹⁾의 단계별 개정
 - (1단계)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 이하 CP) 발표 및 의견수렴
 - (2단계) 신규 및 관련 기준서 개정 사항 반영된 공개초안(Exposure Draft, 이하 ED) 발표
 - (3단계) ED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반영한 최종안 발표

1) IPSAS 2, 현금흐름표, IPSAS 22, 일반정부부문에 관한 정보 공시, IPSAS 24, 재무제표상 예산정보의 표시 이상 3개 기준서

표 3 프로젝트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2024. 9월 현재)

회의시기	추진단계		주요 논의사항
2022년 12월	PB	이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 추진 배경 논의 연구활동 결과 보고
2023년 6월	PB	이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 목표, 적용범위, 주요 이슈, CP 발행 여부 논의
2023년 9월	PB	PB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SAS 22 및 IPSAS 24 관련 교육세션 개최 프로젝트 개요 승인
2023년 12월	CP	이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CP(안)의 개요 챗터 검토 재무제표 표시 관련 선택지 허용 개념에 대한 논의 재무성과표의 분류 및 중간합계, 경영자 정의 성과측정치 등에 대한 분과별 토의
2024년 3월	CP	이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 요소별 정의, 상계 표시 일반원칙 등 이슈 검토 수익·비용 과목의 재무성과표 외 별도표시에 관한 분과별 토의
2024년 6월	CP	이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부채 분류 등 재무상태표 표시 관련 이슈 논의 예시공개초안(IED)의 섹션별 검토
2024년 9월	CP	이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상태표 작성 관련 IED 검토 재정상태표 작성 관련 CP(안) 검토
2024년 12월	CP	이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성과표의 분류, 중간합계, 별도표시과목 관련 이슈 논의
2025년 3월	CP	이슈 논의	-
2025년 6월	CP	이슈 논의	-
2025년 9월	CP	CP 승인	-

● 정례회의 논의사항(발표자: Anthony Heffernan)

-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 및 예시공개초안(Illustrative Exposure Draft) 개발 경과 보고
- 재무성과표(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표시 관련 쟁점 검토
 - 수익·비용 과목의 범주 신설 및 분류(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 재무성과표에 표시할 2종의 중간합계 신설(영업손익, 재무손익차감전손익)
 - 당기순이익(순손실)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비용 과목의 유형 및 표시 방법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표 4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 세부 안건별 주요 내용 요약

■ 안건 7: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프로젝트 개괄 및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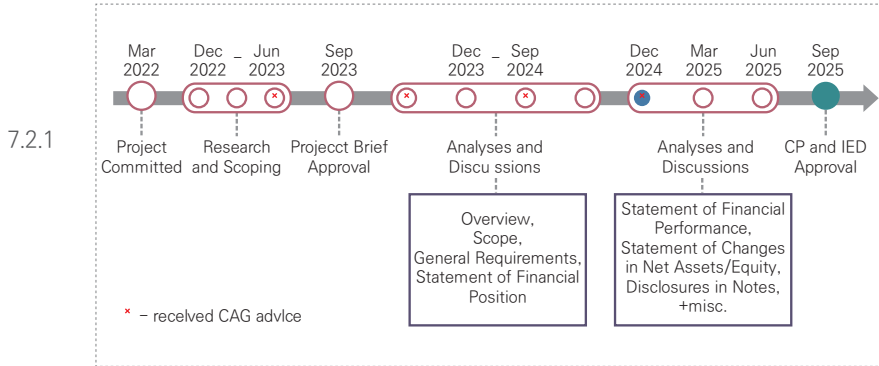
[목적]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개괄 제공

[배경]

-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는 2023년 9월 프로젝트 개요 승인 이후 2025년 9월까지 자문 보고서(Consultation Paper) 및 예시공개초안(Illustrative Exposure Draft)을 개발하고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임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 추진 경과 개요〉



- IPSASB가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결정한 개발 방침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4월에 발표된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정합성을 유지할 것
 - 공공부문 이슈를 고려하여 IFRS 18과의 차이가 적절하거나 필요한지 판단할 것
 - IPSASB 개념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유용하거나 적절한 현행 IPSAS 1의 요소들도 유지할 것
 - 재무제표 구조의 '필요성(비교가능성·일관성 측면)'과 '유연성(유용성·이해가능성 측면)' 사이의 균형을 잡을 것

표 4 의 계속

■ 안건 7: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의 단계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안함 			
주제	이슈 논의	CP 개발	IED 개발
프로젝트 개괄 및 개발			
목적 및 적용범위	완성	검토 완료	검토 완료
개발 접근법			
재무제표의 목적 및 일반 원칙			
재무제표의 목표 및 목적	완성	검토 완료	검토 완료
재무제표 이용자와 정보 수요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			
비교정보			
공정한 표시와 IPSAS의 준수	완성	2025. 1분기	검토 완료
상계			
통합 및 세분화			
중요성	2025. 2분기	2025. 2분기	2025. 2분기
계속실체			
기타 주제(업데이트 예정)	진행 중	2025. 2분기	진행 중
재무상태표			
자산 및 부채의 분류	완료	검토 완료	검토 완료
합계 및 소계	완료	검토 완료	N/A
표시 과목	완료	검토 완료	검토 완료
재무성과표			
수익 및 비용의 분류	진행 중 (안건 7.2.2, 7.2.3)	2025. 1분기	2025. 1분기
합계 및 중간합계			
표시 과목	2025. 1분기	2025. 2분기	2025. 2분기
순이익(순손실) 외부 별도표시 과목	진행 중(안건 7.2.4)	2025. 1분기	2025. 1분기
순자산변동표			
순자산의 분류			
조정 양식	2025. 1분기	2025. 2분기	2025. 2분기
표시 및 공시			
주석 공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진행 중	2025. 3분기	2025. 3분기
구조			
회계정책	2025. 2분기	2025. 3분기	2025. 3분기
불확실성 추정의 주요 원천			
기타 주제			
예시공개초안의 기타 요소			
기타 섹션(업데이트 예정)	2025. 3분기	2025. 3분기	2025. 3분기

표 4 의 계속

■ 안건 7: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p>재무성과표 - 범주(categories)</p> <p>[의결사항] IFRS 18에 맞추어 재무성과표상 수익·비용 과목을 범주별로 분류 및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공공부문 특화 지침으로 보완하는 것에 동의하는지?</p> <hr/> <p>[Staff 권고사항] Staff는 IPSASB가 자문보고서를 통해 다음을 제안할 것을 권고함 (a) 이용자가 재무성과 정보를 더 잘 이해·분석·비교하기 용이하도록 재무성과표상 수익·비용 과목을 범주별로 분류 및 표시하도록 규정할 것 (b) IFRS 18 및 그 범주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되, 공공부문실체가 그 목적과 의도, 각 범주의 구성요소를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한 추가 지침을 제공할 것</p> <hr/>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성과표는 공공부문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재무정보의 가장 중요한 원천임 2000년에 처음 발표된 IPSAS 1은 IAS 1에 대응되는 기준서로, 최소한의 표시 및 공시 규정만을 두어 공공부문실체에게 추가 정보의 표시 및 공시에 관한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기준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동일 기간의 모든 수익 및 비용을 재무성과표에 표시하도록 요구 2024년 IAS 1을 대체하는 IFRS 18의 발표 이후, IPSASB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무제표 작성 목표 및 역할이 동일하다는 점과 그동안 IFRS 18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확 인함 								
7.2.2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AS 1은 재무성과 정보의 표시에 대해 최소한의 지침만을 제공하였던 것에 비해, IFRS 18은 수익 및 비용 과목을 5개의 특정 범주로 분류하고 2개의 새롭게 정의한 중간합계를 표시 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함 이러한 개정 사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조치이면서 주로 민간부문의 재무제표 이용자의 정보 수요에 영향을 받은 것들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개선의 잠재력: IAS 1의 구체적 규정 부족으로 인한 각기 다른 보고서 구조 및 내용은 이 용자가 재무성과 정보를 이해·분석·비교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 (b) IFRS 18 규정의 장점: 한정된 범주 및 신규 중간합계 도입을 통해 공식적인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보고서의 다양성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서상 정보의 이해·분석·비교를 용이하게 함 <p>[분석 접근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aff는 IFRS 18과의 정합성 유지 여부를 IPSASB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음의 질문과 그에 대한 의견을 구성하여 제공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질문</th> <th style="text-align: center;">Staff 의견</th> </tr> </thead> <tbody> <tr> <td>[질문A] 유사한 개선의 잠재력이 공공부문에도 있는가?</td> <td>존재함</td> </tr> <tr> <td>[질문B] 범주화하는 것이 공공부문에도 개념적으로 유용한가?</td> <td>유용함</td> </tr> <tr> <td>[질문C] IFRS 18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범주를 정하는 것이 공공부문에도 적절한가?</td> <td>공공부문 지침을 제공하여 보완한다면 적절함</td> </tr> </tbody> </table>	질문	Staff 의견	[질문A] 유사한 개선의 잠재력이 공공부문에도 있는가?	존재함	[질문B] 범주화하는 것이 공공부문에도 개념적으로 유용한가?	유용함	[질문C] IFRS 18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범주를 정하는 것이 공공부문에도 적절한가?	공공부문 지침을 제공하여 보완한다면 적절함
질문	Staff 의견								
[질문A] 유사한 개선의 잠재력이 공공부문에도 있는가?	존재함								
[질문B] 범주화하는 것이 공공부문에도 개념적으로 유용한가?	유용함								
[질문C] IFRS 18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범주를 정하는 것이 공공부문에도 적절한가?	공공부문 지침을 제공하여 보완한다면 적절함								

표 4 의 계속

■ 안건 7: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p>[질문A] 유사한 개선 잠재력이 공공부문에도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무제표 정보 수요의 성격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이 개별 재무제표 이용자의 정보 수요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의도와 과제를 갖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과거 IPSASB는 재무제표의 목표 및 역할에 대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구조화된 양식으로 제공하는 것임을 공식화한 바 있음 (b) 재무성과표와 손익계산서는 공히 분석 및 의사결정을 위한 재무정보의 주요 원천임 (c) IAS 1과 유사하게 IPSAS 1도 구체적 규정 부족으로 인한 각기 다른 보고서 구조 및 내용은 이용자가 재무성과 정보를 이해·분석·비교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였음 IASB의 경우 수익·비용 과목을 특정 범주화하여 표시하는 보다 구조화된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서 개선 잠재력을 확인했던 것처럼 공공부문에도 동일한 개선 잠재력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 						
	<p>[질문B] 범주화하는 것이 공공부문에도 개념적으로 유용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념적으로 볼 때 정보를 범주화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유용하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다른 주요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된 바 있으며, 아래와 같은 구조화된 양식 도입의 효익은 공공부문에도 동일할 것으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재무성과의 이해 및 분석 개선: 재무성과 및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괄 제공 (b) 객관적 비교 강화: 국가 내 또는 국가 간 유사 실체와의 재무성과 비교 시 다양성 감소 및 비교가능성 증대 						
7.2.2	<p>[질문C] IFRS 18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범주를 정하는 것이 공공부문에도 적절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RS 18은 수익·비용 과목을 다음과 같은 5개의 특정 범주로 분류하도록 요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범주</th> <th style="text-align: center;">관련 규정 요약</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투자</td> <td> ①~③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다만,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제외 <div style="border: 1px dashed red; padding: 5px; margin-top: 5px;"> ① 관계기업, 공동기업 및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② 현금 및 현금성자산 ③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 </div> 예) 이자수익(비용), 배당수익, 임대료수익, 감가상각비, 손상차손(환입), 공정가치 손익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재무</td> <td> ①의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과 ②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div style="border: 1px dashed red; padding: 5px; margin-top: 5px;"> ①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채, 대출금, 어음, 담보대출 등 현금으로 결제되는 채무상품 재화·용역에 대한 채무를 제거할 때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른 부채 자기지분상품 매입의무 등 ②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으로 결제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채무 계약부채, 리스부채, 사후처리 또는 자산 복구관련 총당부채, 소송총당금 등 </div> 예) ① 이자비용, 공정가치 손익, 부채 제거 관련 수익·비용 ② 매입채무/유의적 금융요소 있는 계약부채/리스부채의 이자비용,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비용 등 </td> </tr> </tbody> </table>	범주	관련 규정 요약	투자	①~③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다만,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제외 <div style="border: 1px dashed red; padding: 5px; margin-top: 5px;"> ① 관계기업, 공동기업 및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② 현금 및 현금성자산 ③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 </div> 예) 이자수익(비용), 배당수익, 임대료수익, 감가상각비, 손상차손(환입), 공정가치 손익	재무	①의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과 ②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div style="border: 1px dashed red; padding: 5px; margin-top: 5px;"> ①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채, 대출금, 어음, 담보대출 등 현금으로 결제되는 채무상품 재화·용역에 대한 채무를 제거할 때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른 부채 자기지분상품 매입의무 등 ②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으로 결제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채무 계약부채, 리스부채, 사후처리 또는 자산 복구관련 총당부채, 소송총당금 등 </div> 예) ① 이자비용, 공정가치 손익, 부채 제거 관련 수익·비용 ② 매입채무/유의적 금융요소 있는 계약부채/리스부채의 이자비용,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비용 등
범주	관련 규정 요약						
투자	①~③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다만,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제외 <div style="border: 1px dashed red; padding: 5px; margin-top: 5px;"> ① 관계기업, 공동기업 및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② 현금 및 현금성자산 ③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 </div> 예) 이자수익(비용), 배당수익, 임대료수익, 감가상각비, 손상차손(환입), 공정가치 손익						
재무	①의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과 ②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div style="border: 1px dashed red; padding: 5px; margin-top: 5px;"> ①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채, 대출금, 어음, 담보대출 등 현금으로 결제되는 채무상품 재화·용역에 대한 채무를 제거할 때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른 부채 자기지분상품 매입의무 등 ②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으로 결제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채무 계약부채, 리스부채, 사후처리 또는 자산 복구관련 총당부채, 소송총당금 등 </div> 예) ① 이자비용, 공정가치 손익, 부채 제거 관련 수익·비용 ② 매입채무/유의적 금융요소 있는 계약부채/리스부채의 이자비용,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비용 등						

표 4 의 계속

■ 안건 7: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범주</th> <th style="width: 85%;">관련 규정 요약</th> </tr> </thead> <tbody> <tr> <td>영업</td> <td>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범주 중 하나로 분류되지 않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td> </tr> <tr> <td>법인세</td> <td>IAS 12, 법인세에 따른 법인세비용, IAS 21 환율변동효과 적용에 따른 관련 외환차이</td> </tr> <tr> <td>중단 영업</td> <td>IFRS 5, 매각목적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른 중단영업 관련 수익 및 비용</td> </tr> </tbody> </table>	범주	관련 규정 요약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범주 중 하나로 분류되지 않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	법인세	IAS 12, 법인세에 따른 법인세비용, IAS 21 환율변동효과 적용에 따른 관련 외환차이	중단 영업	IFRS 5, 매각목적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른 중단영업 관련 수익 및 비용
범주	관련 규정 요약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범주 중 하나로 분류되지 않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								
법인세	IAS 12, 법인세에 따른 법인세비용, IAS 21 환율변동효과 적용에 따른 관련 외환차이								
중단 영업	IFRS 5, 매각목적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른 중단영업 관련 수익 및 비용								
7.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IASB가 거래를 5개의 범주로 분류한 근거들을 고려하여 이러한 근거가 공공부문에 도 여전히 유효한지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영업, 투자, 재무 범주로 분류되는 거래의 유형이 서로 동일할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별로 적용 가능한 IPSAS 기준서는 IFRS 기준서와 정합성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익이 범주별로 분류되는 방법은 서로 일치할 것임 (b) 이러한 범주로 표시되는 정보가 공공부문에서도 유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의 재무제표 이용자도 핵심 공공서비스의 전달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영업), 종장기에 걸친 서비스 전달 유지에 필요한 자원 투자 과정(투자),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과정(재무)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에 대해 이해하고자 함 (c) 민간부문 이해관계자도 범주의 이름(용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투자', '재무'라는 용어를 현금흐름표와 손익계산서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공유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이해관계자는 다른 범주 명칭을 제안한 바 있음 (d) 범주의 이름대로 제목(명칭)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므로, 실체의 판단에 따라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성과 정보를 범주별로 분류하는 것은 실체가 자신의 수익·비용을 객관적으로 판단 하여 당해 정보의 특징을 충실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함 • 기준 제정 관점에서 IPSASB는 ①안 IFRS 18의 범주 용어를 사용하되, 공공부문실체의 수익·비용 과목의 분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추가 지침을 제공하는 것과 ②안 공공부문만의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 중에서 선택 가능함 • Staff는 다음을 근거로 ①안이 공공부문실체의 수익·비용 과목의 분류 판단 및 재무제표 이용자의 재무성과에 대한 이해·분석·비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재무성과 정보를 5개 범주로 분류하는 IFRS 18의 규정과 차이를 둘 만한 실질적인 이유를 찾지 못하였는데, 1안이 IFRS 18과의 정합성이 유지되는 방안임 (b) IFRS와 정합성을 갖고 있는 다른 IPSAS 기준서처럼 공공부문 특유 지침을 반영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과목을 유용한 방법으로 분류하도록 지원 가능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재무성과표 - 합계 및 중간합계(Totals and Subtotals)</td> </tr> </table>	재무성과표 - 합계 및 중간합계(Totals and Subtotals)							
재무성과표 - 합계 및 중간합계(Totals and Subtotals)									
7.2.3	<p>[의결사항]</p> <p>IFRS 18에 맞추어 재무성과표상 합계 및 중간합계를 표시하도록 규정하되, 공공부문을 위한 일부 수정 및 특정 중간합계를 추가하는 것에 동의하는지?</p>								

표 4 의 계속

안건 7: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p>[Staff 권고사항]</p> <p>Staff는 IPSASB가 자문보고서를 통해 다음을 제안할 것을 권고함</p> <p>(a) '당기순손익'은 IFRS 18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재무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유용한 지표이므로, IPSAS 1의 규정과 동일하게 '당기순손익'을 합계로서 표시하도록 규정할 것</p> <p>(b) IFRS 18과의 정합성 유지 및 공공부문을 위한 일부 수정사항을 고려하여 새로 정의된 중간합계로서 '영업손익' 및 '재무손익차감전손익'을 표시하도록 규정할 것</p> <p>(c)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실체가 중간합계를 추가 표시하는 것을 허용할 것</p>

[배경]

- 현행 IPSAS 1은 재무성과표에 '당기순손익'을 합계로서 표시하는 것만을 요구할 뿐, 기타 중간합계의 표시를 요구하지 않음
- IPSASB는 범주화 및 신규 중간합계 요구 관련 탐사 논의가 있었던 2023년 12월의 분과별 토의 이후로 재무성과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음
- 본 안건은 안건 7.2.2의 접근방식을 기초로 합계 및 중간합계의 표시에 관한 논의의 진행을 위한 것임

[분석]

- IFRS 18의 손익계산서 구조에 관한 새로운 규정의 도입 효과는 특정된 범주 및 신규 중간합계를 통해 일관성 있는 손익계산서 구조를 제공한다는 것과 공공부문 재무제표 이용자의 전반적인 효익을 증폭시킨다는 것임

[분석접근법]

- Staff는 안건 7.2.2의 접근법과 동일하게, IFRS 18과의 정합성 유지 여부를 IPSASB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음의 질문과 그에 대한 의견을 구성하여 제공함

7.2.3

질문	Staff 의견
[질문A] 유사한 개선의 잠재력이 공공부문에도 있는가?	존재함
[질문B] 합계 및 중간합계를 사용하는 것이 공공부문에도 개념적으로 유용한가?	유용함
[질문C] IAS 1과 IFRS 18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합계의 경우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가?	적절함
[질문D] IFRS 18에서 새로 정의하여 요구하는 중간합계의 경우 공공부문에도 적절한가?	공공부문 용어로 보완한다면 적절함

[질문A] 유사한 개선 잠재력이 공공부문에도 있는가?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무제표 정보 수요의 성격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이 개별 재무제표 이용자의 정보 수요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의도와 과제를 갖고 있음
 - (a) 과거 IPSASB는 재무제표의 목표 및 역할에 대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구조화된 양식으로 제공하는 것임을 공식화한 바 있음
 - (b) 재무성과표와 손익계산서는 공히 분석 및 의사결정을 위한 재무정보의 주요 원천임
 - (c) 합계 및 중간합계와 관련, IPSAS 1과 IAS 1은 최소한의 규정만 두고 있고, 결과적으로 각기 다르게 정의된 중간합계의 사용은 두 부문 모두에서 이용자의 재무성과 정보에 대한 이해 분석·비교에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 왔음
- IASB의 경우 새로 정의된 중간합계를 표시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것에서 개선 잠재력을 확인했던 것처럼 공공부문에도 동일한 개선 잠재력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

표 4 의 계속

■ 안건 7: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p>[질문B] 합계 및 중간합계를 사용하는 것이 공공부문에게도 개념적으로 유용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념적으로 볼 때 구조화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민간부와 공공부의 재무제표 이용자 모두에게 동일한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데, 합계와 중간합계는 재무성과표의 일관성 있는 구조를 제공하고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새로 정의된 중간합계를 사용하면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재무성과의 이해 및 분석 개선: 재무성과 및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괄 제공 (b) 일관적이고 객관적 비교 강화: 국가 내 또는 국가 간 유사 실체와의 재무성과 비교 시 다양성 감소 및 비교가능성 증대

[질문C] IAS 1과 IFRS 18에서 계속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합계의 경우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가?

- IPSAS 1과 IAS 1은 모두 '당기순손익'을 재무성과표(손익계산서)에 합계로서 표시하도록 요구하며, IFRS 18도 여전히 '당기순손익' 합계 표시를 요구
- '당기순손익' 합계는 근본적인 지표로서 실체의 전반적인 재무성과를 명확히 보여줄 뿐 아니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여전히 유용하므로, 당해 규정이 IPSAS에서도 유지되어야 IFRS 18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공공부문 재무제표 이용자의 정보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음

[질문D] IFRS 18에서 새로 정의하여 요구하는 중간합계의 경우 공공부문에 적절한가?

7.2.3

- IFRS 18은 비교 가능한 재무성과 측정치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정의된 중간합계로서 '영업손익' 및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손익'을 표시하도록 규정하며, 이와 별개로 추가적인 중간합계를 표시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음

구분	목적 및 이용자의 효익(근거)	비고
영업손익	· 비교가능한 재무성과의 측정치 및 현금흐름 예측의 출발점으로서 재무제표 이용자의 분석을 지원하는 지표	· 운영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된 신규 중간합계
재무손익및 법인세차감 전손익	· 실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과 무관하게 비교 가능한 재무성과의 측정치로서 재무제표 이용자의 분석을 지원하는 지표 · 자금조달 효과와 무관한 재무성과 이해 가능	· 영업손익,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된 신규 중간합계
당기순손익	· 재무성과의 개괄을 제공하는 지표	· 손익계산서상 모든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한 합계

- Staff는 다음과 같이 공공부문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여 상기 2종의 중간합계를 도입하면 더 유용하고 적절할 것으로 판단
 - (a) 영업손익(operating surplus or deficit): IFRS 18의 영업손익(operating profit or loss)에 공공부문의 용어 체계를 반영하여 채택한 것으로, 현재 수준의 수익(예: 조세, 부담금, 기타 원천 등)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그러한 수익이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품질을 유지하고 미래의 서비스 전달 활동 및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중간합계

표 4 의 계속

■ 안건 7: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재무정보 수요는 국가 간 혹은 국가 내에서도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체의 판단에 따라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해당 중간합계가 IPSAS에 따라 인식·측정한 금액으로 구성될 것 (b) 해당 중간합계가 재무성과표 구조와 호환되어야 함 (c) 해당 중간합계가 기간 간 일관성을 가질 것 (d) 해당 중간합계가 IPSAS에서 요구하는 합계 및 중간합계보다 두드러지지 않게 배열될 것

[향후 계획]

- Staff는 이번 회의에서의 IPSASB 결정에 근거하여 자문보고서(CP)의 제4장 및 예시공개초안(IED)의 관련 섹션의 초안 작성을 개시할 예정임

당기순이익(순손실)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비용 과목의 투명성 강화

[의결사항]

- 없음
- * '당기순이익(순손실)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비용의 표시 방법'에 관한 분과별 토의를 위한 제공자료

[배경]

- 2024년 3월 회의에서 IPSASB는 순이익(순손실)의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비용 과목의 표시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의 사항에 대해 동의한 바 있음
 - (a) 만약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표시 관련 IPSAS 규정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재무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이해도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함
 - (b) 개념적 관점에서 볼 때, IFRS와 일치시키는 방향의 접근법(IFRS-aligned approach)을 취하는 것이 더 적절하므로 GFS와 일치시키는 방향의 접근법은 채택하지 않아야 함

[분과별 토의 주제]

- 2024년 12월 정례회의의 분과별 토의 참석자는 다음 주제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예정임
 - (a) 현행 IPSAS의 개정 필요성: 재무제표상에서 순이익(순손실)의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비용 과목에 대한 전달 방법 및 투명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 (b) 전달 방법 및 투명성 개선 방안: 만약 그렇다면, 그 위치와 용어 측면에서 IPSASB에 권고할 사항은 무엇인지?

[주제시] 현행 IPSAS의 개정 필요성

- 현행 IPSAS 1은 수익·비용 과목을 다음 중 하나의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요구함
 - (a) 재무성과표 - 당기순손익에 표시(당기순손익은 공공부문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재무정보의 주요 원천으로 인식)
 - (b) 순자산변동표 - 당기순손익 외부의 순자산으로 직접 표시(← 이러한 항목의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의 관심이 크지 않음)

표 4 의 계속

■ 안건 7: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SASB가 당기순손익(재무성과표) 또는 당기순손익 외부의 순자산(순자산변동표)에 직접 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적으로 개발하지는 않았으나, 분과별 토의 참석자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분류 결과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을 인지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재무성과표</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순자산변동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실체의 서비스 전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상적인 영업 관련 과목 · 실현된 차손익 포함 · 보고실체가 어느 정도 통제하는 거래와 관련된 과목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실체의 서비스 전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상적인 영업과 관련 없는 과목 · 미실현 차손익 포함 · 보고실체가 어느 정도 통제하지 못하는 거래와 관련된 과목 </td> </tr> </tbody> </table>	재무성과표	순자산변동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실체의 서비스 전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상적인 영업 관련 과목 · 실현된 차손익 포함 · 보고실체가 어느 정도 통제하는 거래와 관련된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실체의 서비스 전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상적인 영업과 관련 없는 과목 · 미실현 차손익 포함 · 보고실체가 어느 정도 통제하지 못하는 거래와 관련된 과목
재무성과표	순자산변동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실체의 서비스 전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상적인 영업 관련 과목 · 실현된 차손익 포함 · 보고실체가 어느 정도 통제하는 거래와 관련된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실체의 서비스 전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상적인 영업과 관련 없는 과목 · 미실현 차손익 포함 · 보고실체가 어느 정도 통제하지 못하는 거래와 관련된 과목 				
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순손익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 및 비용 과목은 주로 특정 자산·부채를 현행가치로 재측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상기의 수익·비용 과목의 분류 결과는 일반적으로 2000년 이후의 IASB의 분류 결과와 일치함 · 전반적으로 특정 수익·비용을 실현 여부 및 통제 여부를 기준으로 분리하여 표시하는 것은 실체의 순자산 변동의 성격과 크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두 수익·비용 그룹이 서로 다른 재무제표에 표시되고 있음 · 재무성과표의 당기순손익에 표시하는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IPSAS 1의 개정 필요성은 안건 7.2.2 및 안건 7.2.3에 이미 분석되어 있음(즉 재무성과표 내 범주화 및 일부 중간합계 신설 필요) · Staff는 다음을 근거로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표시하는 당기순손익 외부의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개정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분과별 토의 참석자들이 보고기간 내 보고실체의 '모든' 수익·비용 과목에 대해 투명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동의함에 따라, IPSASB가 현재 순자산변동표 표시를 요구하는 규정이 회계책임 목적상 필요한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함 (b) 순자산변동표에 직접 표시하는 수익·비용 과목은 일반적으로 미실현 또는 비통제된 순자산의 변동을 의미하므로, 재무제표 이용자가 실체의 순자산의 변동내역 및 서비스 전달 목표의 달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c) 다만, 순자산변동표가 활발히 이용되지 않는 재무제표라는 점, 당기순손익 표시 방법에 비해 수익·비용 과목을 눈에 잘 띄지 않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표시방법은 현행 IPSAS하에서 투명성 및 전달 방법의 명료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d) 이용자가 실체의 순자산 변동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정보 수요를 갖고 있다는 점과 현행 IPSAS 1의 표시 규정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투명성 및 전달 방법 측면에서 개선의 잠재력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p>[주제B] 전달 방법 및 투명성 개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별 토의 참석자들이 개정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다음과 관련된 사항이 IPSASB의 기준 제정 의사결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위치: 이러한 재무정보의 성격과 의미,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접근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위치에 표시되어야 함 (b) 용어: 공공부문의 다수 이용자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당해 재무정보의 성격과 의미를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함 				

표 4 의 계속

안건 7: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당기순손익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 및 비용 과목의 위치와 관련하여 Staff는 다음의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함 		
	대안	장점	단점
7.2.4	<p>① 재무성과표 내 별도 섹션에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의 위치에 전체 수익·비용을 표시하므로, 이용자가 재무성과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일치 재무정보의 가시성을 높이며, 순자산 변동내역 및 서비스 전달 목표 달성에 관한 종합적인 개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성과표의 길이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음 당기순손익 내·외부 표시에 따른 수익 및 비용 과목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혼동 유발 가능
	<p>② 신규의 별도 재무제표에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정보의 가시성을 높이며, 순자산 변동내역 및 서비스 전달 목표 달성에 관한 종합적인 개괄 제공 수익·비용 과목을 실현 여부 및 통제 여부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쉬움 각 재무제표의 길이 및 정보량 관리 측면에서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수익·비용 과목이 두 가지 재무제표에 걸쳐 표시됨 새로운 재무제표는 이용자의 충분한 관심을 얻지 못할 수 있음 당기순손익 내·외부 표시에 따른 수익 및 비용 과목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혼동 유발 가능
	<p>③ 순자산변동표 내 별도 섹션에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관행과 일치하므로 이용자에게 친숙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 및 비용 과목의 투명성 및 이해도 제고 목표 달성 불가능 현재 관행에 따른 가시성 이슈를 다루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관련 대안들의 단점 중 일부는 당기순손익 표시 수익·비용 과목과 순자산변동표 직접 표시 수익·비용 과목이 갖고 있는 성격 및 의미상 차이점을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용어를 개발하여 사용하면 해소 가능함 IAS 1(2007)은 모든 수익·비용 과목을 소유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 변동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실체에게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단일 재무성과표: 상기 대안 ①과 유사하게, 재무성과표 내 하나의 섹션에는 당기순손익 포함 수익·비용 과목을, 다른 섹션에는 당기순손익 외부의 수익·비용 과목을 표시 (b) 두 개의 재무성과표: 상기 대안 ②와 유사하게, 하나의 재무성과표에는 당기순손익 포함 수익·비용 과목을, 다른 재무성과표에는 당기순손익 외부의 수익·비용 과목을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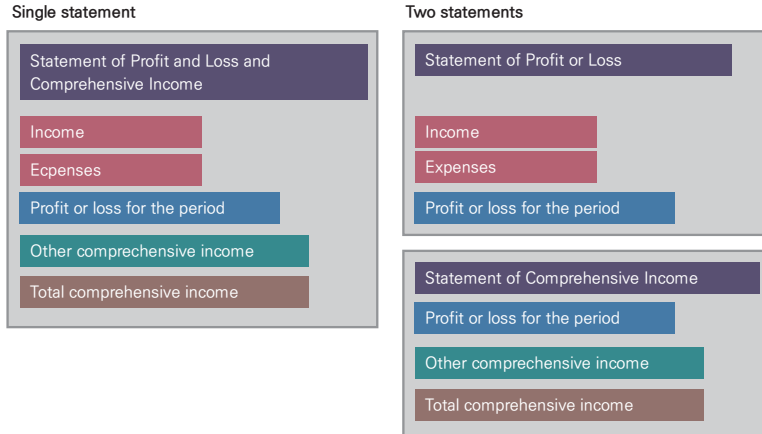
표 4 의 계속

■ 안건 7: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IFRS 18의 수익·비용 표시 선택방법 개요〉



7.2.4

- IAS 1의 이러한 선택 표시 규정은 IASB가 단일 재무성과표 표시 방법을 선호하였음에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라 IFRS 18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바 있음
- Staff는 위치 관련 대안의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종합함
 - (a) 대안 ③과 달리, 대안 ① 및 대안 ②는 모두 재무정보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현행 IPSAS 1과 비교하여 투명성 및 전달 방법의 명료성을 개선할 수 있음
 - (b) 대안 ①과 대안 ②의 적용 효익은 실체별·국가별 요인 및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c) 대안 ①과 대안 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IPSASB의 다음 두 가지 전략적 의사결정 사항에 부합함
 - (i) 재무제표 구조의 '필요성(비교가능성·일관성 측면)'과 '유연성(유용성·이해가능성 측면)' 사이의 균형을 잡을 것
 - (ii) 차이를 둘 만한 공공부문 근거가 없다면 IFRS 18과 정합성을 유지할 것
- (용어) IPSASB는 당기순손익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 및 비용 과목의 성격과 의미를 반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를 식별할 필요가 있음
- 적절하고 이해 가능한 용어를 식별하여 관련 수익·비용의 표시에 관한 규정에 사용하는 것은 위에서 분석한 표시 위치에 대한 고려사항과 연계될 때 실체의 순자산 변동내역 및 서비스 전달 목표 달성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IPSAS 1의 당기순손익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 및 비용의 구성 과목은 IFRS 18에서 그러한 수익·비용 과목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인 '기타포괄손익(OCI)'의 구성과 일치하는데, Staff는 기타포괄손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목함
 - (a) 일부 민간부문 이해관계자들은 '기타포괄손익' 용어가 혼동을 유발한다고 지적함
 - (b) IFRS 18에서 '기타포괄손익'을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IASB는 해당 항목의 특징을 충실히 표현할 수 있다면 실체들이 다른 용어나 제목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표 4 의 계속

안건 7: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용어와 관련된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종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과거 IFRS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에서 자문위원회(CAG)는 동일한 의미의 용어라면 IPSAS와 IFRS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므로, 당기순손익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 및 비용의 구성 과목이 민간부문의 '기타포괄손익'과 동일하다면 IPSASB 역시 '기타포괄손익' 용어를 사용해야 함 (b) 당기순손익 외부에 인식하는 수익 및 비용 과목을 지칭할 수 있는 완벽한 용어가 없을 수 있음. 다만, IASB의 사례처럼 기준 제정 목적으로 IPSASB가 선택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 (c) IASB의 사례처럼, IPSASB는 용어 선택 결과와 무관하게 당해 용어와 관련된 목적과 의도를 밝히는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실체의 선택에 따라 당해 항목의 특징을 충실히 표현 가능한 다른 용어 또는 제목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

다. 지속가능성 보고(Sustainability Reporting – Research and Scoping)

● **프로젝트 목적 및 추진 경과**

- (배경) 투명성 제고 및 회계책임 이행 강화, 이용자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일관되고 비교가능한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개발과 관련된 공공부문의 책임이 증대되고 있음
 - 세계은행은 IPSASB가 공공부문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개발에 대한 글로벌 자문을 주도할 것을 촉구
 - IPSASB는 자문보고서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 기후 관련 공시 및 천연자원 관련 공시에 관한 지침을 우선적인 연구 대상 및 적용범위 설정 대상으로 선정
- (목표) IPSASB의 기존 권장실무지침(RPG) 및 개념체계, 민간부문의 IFRS S1 등을 고려·활용하여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 기준에 대한 공식 지침 개발

표 5 프로젝트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2024년 12월 현재)

회의시기	추진 단계		주요 논의사항
2022년 3월	CP	이슈 논의	• 자문보고서,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 발간
2022년 5월~ 2022년 9월	CP	이슈 논의	• 의견수렴
2022년 10월	CP	이슈 논의	• 응답에 대한 예비검토(Preliminary Review)
2022년 12월	CP	이슈 논의	• 자문보고서 의견수렴 응답 검토 • 이슈 논의
2024년 12월	CP	이슈 논의	• 잠재적 지속가능성 보고 프로젝트 평가 관련 이슈 논의

● 정례회의 논의사항(발표자: Eileen Zhou)

-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개발과 관련된 사항(우선순위 대상으로 선정된 일반 공시, 기후 관련 공시 및 천연자원 관련 공시 포함)을 다음 카테고리별로 분석 및 평가
 - 보편성(Prevalence), 결과(Consequences), 긴급성(Urgency), 실행 가능성(Feasibility)
-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에서의 IPSASB의 중요한 임무와 역할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표 6 지속가능성 프로젝트 세부 안건별 주요내용 요약

■ 안건 10: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안건 항목	내용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향후 계획	
	[목적]
10.2.1	• 2023년에 수행된 지속가능성 보고의 연구 및 범위 설정을 되돌아보고, 향후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의 잠재적 발전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IPSASB의 업무 계획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표 6 의 계속

■ 안건 10: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안건 항목	내용
	<p>[배경]</p> <p>자문보고서-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은행은 2022년 1월에 발표한 “주권 기후 및 자연 보고: 위험 및 기회 공시 프레임워크 제안” 보고서를 통해 IPSASB가 공공부문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개발에 관한 글로벌 자문을 주도할 것을 촉구함. 2022년 5월, IPSASB는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을 위한 자문보고서를 발표함 • 2022년 12월, 자문보고서 의견수렴 결과에서 확인된 강력한 지지에 기반하여, IPSASB는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확정함. 공공부문에 특화된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개발의 일환으로, IPSASB는 추가 연구 및 범위 설정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주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에 대한 지침 (b)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지침(문단 4-5 참조) (c) 천연자원 - 비재무 공시(천연자원 재무보고 프로젝트 개발과 병행) <p>연구 및 범위 설정-지속가능성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3월 정례회의에서, IPSASB는 자문보고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이슈에 관한 연구 및 범위 설정을 논의하고, 잠재적인 초기 지속가능성 보고 프로젝트의 범위는 다음을 기반으로 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정하기로 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자문보고서 의견수렴 결과 - 주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자본 시장에서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강조 (b) IPSASB 개념체계 - 개념적 관점을 제공하고 IPSASB가 기준을 개발할 때 적용하는 개념들과의 연결 고리를 제공 (c) ISSB 글로벌 기준 - IFRS와의 공통점, 주요 원칙들, 그리고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의 국채의 중요성 및 자본 시장 접근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d) GRI 기준 - 조직의 경제, 환경, 사람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에 대해 복수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제공 • 연구와 적용범위 설정을 거쳐 2023년 6월에 IPSASB는 공공부문에 특화된 기후 관련 공시 기준 개발 추진을 결정하였으며, 2024년 9월에는 IPSASB SRS ED 1, 기후 관련 공시 초안의 공개적 의견수렴 절차가 승인됨 <p>지속가능성 연구 및 범위 설정 프로젝트의 다음 우선순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는 2022년 12월 이후 지속가능성 분야에서의 유의미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에 더하여 IPSASB SRS ED 1 개발을 통해 귀중한 통찰을 얻었음 • 따라서 이 시점에서 Staff는 최근의 개발 사항과 다른 우선순위 프로젝트에 대한 잠재적인 기회를 고려하여 초기 우선순위로 설정된 연구 및 범위 설정 프로젝트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함 • 이 논의의 목적은 IPSASB의 향후 업무계획에 대한 공개적 의견 수렴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IPSASB SRS X, 기후 관련 공시의 최종 발표 이후 지속가능성 기준 설정 프로젝트 관련 향후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IPSASB는 아직 연구 및 범위 설정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나머지 두 개의 프로젝트(일반 공시, 자연 관련)와 관련하여 IPSASB Sustainability Reference Group(SRG)에 우선 순위 설정, 예상되는 어려움 및 프로젝트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조언을 구한 바 있음
10.2.1	

표 6 의 계속

■ 안건 10: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안건 항목	내용
1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RG 회의에서 ISSB와 GRI의 외부 발표자는 각각 IFRS S1과 GRI 101: Biodiversity 2024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으며, ISSB는 현재 진행 중인 생물다양성, 생태계 및 생태계 서비스(BEES) 연구 프로젝트의 현황에 대해서도 개요를 제공함(ISSB 프로젝트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건 10.2.5의 문단 4-5 참조). • SRG에서 나온 일부 의견과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문제의 중요성 (b) 자연과 관련된 공공부문 역할의 중요성(자연과 관련된 보고의 복잡성과 자연과 관련된 보고 프레임워크의 지속적인 개발을 인지) (c) 향후 지속가능성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순위, 유용성 및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 피드백 및 방향성의 필요성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가 2023년에 적용한 연구 및 범위 설정 가정(상기 문단 4 참조)은 IPSASB가 향후 지속가능성 보고 프로젝트를 심의할 때 필요한 중요한 기반과 참조사항을 제공함. 특히 IPSASB 개념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IPSASB가 향후 지속가능성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개념적 관점을 제공함(안건 10.2.2 분석 및 논의 참조) • 또한 IPSASB Strategy and Work Program 2024-2028에 따라, Staff는 다음의 프로젝트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따라 잠재적 프로젝트를 평가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보편성: 해당 문제가 공공부문실체 사이에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지 여부 (b) 결과: 해당 문제가 GPFS(일반목적재무제표) 및 GPFR(일반목적재무보고서)이 회계책임 과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을 저해하는지 여부 (c) 긴급성: 해당 문제의 최근 중요성 증가로 가까운 시일 내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d) 실현 가능성: 해당 문제에 대한 기술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현재의 자원 제약 속에서 다른 프로젝트의 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 • 다음의 안건 문서는 2022년 12월에 추가 연구 및 범위 설정을 위해 우선순위가 매겨진 세 가지 잠재적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RPG 1 및/또는 RPG 3을 기반으로 한 규정 성격의 지침 개발(안건 10.2.3 참조): Staff는 IPSASB의 기존 비강제 지침인 RPG 1 및 RPG 3을 기반으로 삼으면, 이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하며 공공부문에서의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및/또는 서비스 성과 보고에 관한 명확한 규정 성격 지침의 시급한 필요성 해결에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함 (b) 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안건 10.2.4 참조): IFRS S1 민간부문 지침을 참고할 때, Staff는 IFRS S1이 공공부문의 광범위한 역할과 책임을 반영한 지속가능성 보고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므로 이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함. Staff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위험과 기회를 망라하는 보다 넓은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가 갖는 복잡성과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적용범위 설정 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음

표 6 의 계속

■ 안건 10: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안건 항목	내용
10.2.1	<p>(c) 자연 관련 공시(안건 10.2.5 참조): Staff는 자연 이슈가 널리 퍼져 있는 긴급한 문제라는 점과 자연의 보호자로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자연 관련 프레임워크와 새로 도입되는 민간부문 지침을 참고할 때 이 프로젝트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언급함. 민간부문 지침을 기반으로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나(문단 4 참조), ISSB의 자연 관련 보고에 대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국제적으로 다양한 지침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GPFR(일반목적재무보고서) 및 통계적 보고 프레임워크 관련 보고 모두에서 공공부문 수요에 부합하는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복잡할 것으로 보임</p>

[의사결정 사항]

- 정보 제공 및 논의만을 위한 안건이며, 의결 요구사항 없음

지속가능성 보고에서의 IPSASB 개념체계 및 IPSASB의 역할

[목적]

-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에서의 IPSASB의 임무와 역할을 IPSASB 개념체계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향후 지속가능성 보고 프로젝트의 연구 및 범위 설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배경]

- IPSASB의 전략적 목적은 발생주의 IPSAS 및 국제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의 채택과 이행을 증가시켜, 전 세계적으로 공공재무관리(PFM)와 지속가능성 개발을 강화하는 것임
- IPSASB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PSASB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GPFRs) 내에서 보고를 위한 기준과 지침을 개발함. 이는 IPSASB의 업무 범위와 국제 공공부문 회계기준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 “IPSASB의 목적은 전 세계 공공부문실체들이 GPFRs를 준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회계 및 기타 출판물을 개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임.”
- IPSASB는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GPFS(일반목적재무제표)와 GPFR(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서의 보고를 위한 공공부문 기준을 개발함. 아래 그림은 GPFRs 외의 더 넓은 보고 영역과 관련된 임무를 설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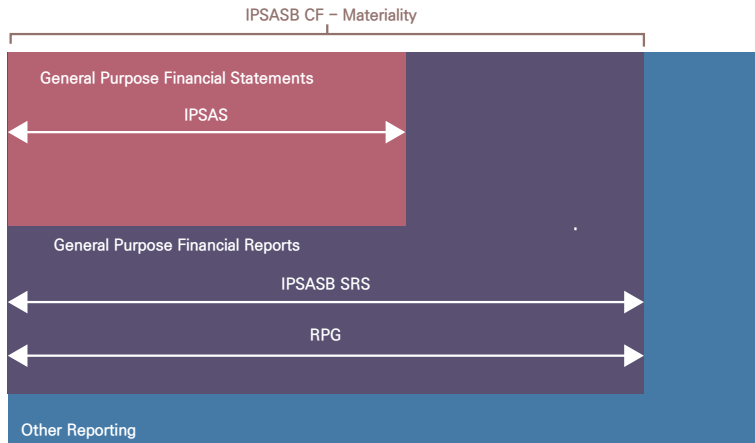


표 6 의 계속

■ 안건 10: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안건 항목	내용
10.2.2	<p>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목적 및 이용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 개념체계(IPSASB CF) 문단 2.1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 공공부문실체의 재무보고 목적은 GPFRs 이용자에게 회계책임을 다하고 이용자의 의사 결정을 위해 기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문단 2.4에서는 GPFRs의 주요 이용자들이 '서비스 수령자와 자원 제공자'인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이어서 문단 2.8에서는 공공부문실체가 회계책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공해야 할 정보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기타 공공부문실체는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자원을 사용하여 보고기간 동안 및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존하는 사람들에 대해 회계책임이 있음. 회계책임 의무를 이행하려면, 공공부문실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자원의 관리와 그 서비스 제공 및 기타 운영을 규제하는 법률, 규정 또는 기타 권한을 준수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공공부문실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조세수익 또는 기타 비교환거래수익으로 주로 자금을 조달하고 서비스 수령자가 장기적으로 그 서비스 제공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계 책임 의무를 이행하려면 보고기간 동안의 서비스 제공 성과와 향후 기간에 걸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함 • 문단 2.29~2.30에 명시된 바와 같이, IPSASB CF는 GPFRs보다 더 넓은 범위의 GPFRs로 확장되며, 재무제표는 여전히 재무 보고의 핵심에 위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 보고의 범위는 GPFRs에서 보고될 수 있는 거래, 기타 사건 및 활동의 경계를 설정 함.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개념적 프레임워크는 재무제표에 포함된 범위 보다 더 포괄적인 재무 보고 범위를 반영하며, GPFRs 내에서 재무제표를 향상시키고 보완하며 추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개념체계는 재무제표에 포함된 범위보다 더 포괄적인 재무 보고 범위를 반영하지만, 재무 제표에 제시된 정보는 여전히 재무 보고의 핵심으로 제시됨 • 따라서 향후 지속가능성 보고 프로젝트의 정보 요구 사항과 범위를 고려할 때, 주요 이용자는 GPFRs를 넘어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위해 다른 출처의 정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수 있음. 이는 IPSASB CF 문단 2.31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PFRs는 정부나 기타 공공부문실체의 회계책임 의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사결정 목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그러나 GPFRs가 회계 책임 및 의사결정 목적을 위해 이용자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은 낮음. 정부와 독립 기관은 기존 서비스 제공 이니셔티브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 중기 및 장기적으로 경제적 조건과 지역 사회의 인구 변화가 예산과 서비스 제공 요구에 미칠 영향을 보고하는 보고서를 발행함. 따라서 주요 이용자는 GPFRs에 보고되지 않은 정부의 정책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보, 정부 예산 및 전망치, 현재 및 예상되는 경제적 조건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한 다른 출처의 정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p>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대한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PFR와 IPSASB CF는 재무제표가 포함하는 범위보다 더 포괄적인 재무보고의 범위를 반영하지만, 재무제표에 제공되는 정보는 여전히 재무보고의 핵심에 해당함(IPSASB CF 문단 2.30). IPSASB CF의 문단 2.14~2.28까지는 GPFR이 제공하는 정보 유형을 설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됨 (a)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

표 6 의 계속

■ 안건 10: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안건 항목	내용
1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b) 재무적 결과와 현금흐름이 승인된 예산에 부합하고 자원의 조달 및 사용을 규율하는 관련 법령 또는 기타 권한을 준수하는 정도에 대한 정보 (c) 서비스 제공 활동, 성과 및/또는 결과에 대한 재무 및 비재무 정보 (d) 예상되는 미래 서비스 제공 활동과 목표, 그것들이 미래의 자원 요구 사항 및 자금 조달 원천에 미칠 영향과 같은 예상 재무 및 비재무 정보 (e) 재무제표를 보강·보완·설명하는 기타 설명 정보로, 보고기간 동안의 재무 및 서비스 제공 성과를 뒷받침하는 기초적인 요소와 가정 또는 미래 전망치에 관한 정보 <p>• 따라서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에서의 IPSASB의 임무와 역할은 전반적 보고 체계에서 중요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향후 지속가능성 관련 프로젝트의 분석 및 적용범위 설정 지침을 제시함.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GPFR에 포함되어 재무제표를 보강·완성·보완하는 정도 등 (b)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에서 IPSASB SRS의 위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기준이 권장실무지침(RPGs)과 같은 기존의 IPSAS 발표물들과 어떻게 조응되는지 설명함

[의사결정 사항]

- 정보 제공 및 논의만을 위한 안건이며, 의결 요구사항 없음

권장실무지침(RPG) 1 및/또는 3에 기반한 공식 지침의 개발

[목적]

- 기존의 IPSASB 지속가능성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잠재적인 프로젝트의 연구와 범위 설정을 위한 분석과 고려사항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IPSASB의 지속가능성 업무계획 내에서 향후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IPSASB 논의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배경]

- 2013년 IPSASB는 RPG 1: 실체의 재정 장기 지속가능성에 관한 보고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정부 프로그램의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보고하고 공시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이후 2015년 IPSASB는 RPG 3: 서비스 성과 정보 보고를 발표하였고, 이는 이용자 요구를 충족하는 데 중점을 둔 원칙 기반 접근법을 도입하여 서비스 성과 정보를 보고하는 방법을 제시함
- RPG 1과 RPG 3이 개발될 당시, IPSASB는 실체들이 RPG 지침을 따르도록 권장하되, 재무제표가 IPSAS를 준수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RPG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함. 이는 당시 다음의 요소 등을 고려한 실무적인 결정이었음
 - (a) RPG 지침이 IPSAS 기준의 일부로서 공식 지침으로 결정될 경우, IPSAS 준수 재무제표의 감사 가능성
 - (b)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실무가 아직 발전 중이었으며, IPSASB는 경직된 기준을 도입하기보다는 혁신과 유연성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
 - (c) 서비스 성과 보고 또한 공식 지침을 지원할 만큼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음
- RPG 지침이 처음 발표된 이후, 여러 가지 개발과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항들은 IPSASB의 지속가능성 업무계획 내에서 향후 잠재적인 프로젝트로서 연구 및 범위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이러한 개발에는 다음이 포함됨
 - (a) IPSASB 개념체계(IPSASB CF)의 승인 2014년 10월, IPSASB는 IPSASB CF를 승인했으며, 이는 IPSAS 기준, IPSASB SRS 기준 및 RPG 지침 개발의 기초가 되는 프레임워크의 기능을 수행함. 이 프레임워크는 기준 제정의 일관성을 크게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재무보고 체계를 재편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표 6 의 계속

■ 안건 10: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안건 항목	내용
10.2.3	<p>(b) RPG 1과 RPG 3에서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정보에 대한 추가 비강제 지침 발표: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에 대응하여, IPSASB는 RPG 1과 RPG 3이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정보 보고에 적용 가능한지를 고려함. 그 결과 2023년 IPSASB는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정보 보고 - RPG 1과 RPG 3에 대한 수정 사항: 추가 비공식 지침을 발표하여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정보 보고를 촉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함</p> <p>(c) IPSASB SRS를 별도의 기준 세트로 만들기로 결정 2023년 6월, IPSASB는 IPSASB SRS를 공식 기준으로 발행하되, 현재 IPSAS 기준 세트와 별도로 해야 한다고 결정함. 별도의 기준 세트를 개발함으로써 RPG 1과/또는 RPG 3을 IPSAS 기준과는 별도로 공식 지침으로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p> <p>(d)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기준(ISA) 5000, 지속가능성 인증 계약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발표 2024년 11월, 국제감사인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지속가능성 인증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종합 국제 기준인 ISA 5000을 승인함. 이 기준은 IAASB의 기존 기준, 특히 IAASB의 국제인증계약기준 3000(개정판)을 기반으로 하며, 조직이 보고하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정보(기후 관련 위험, 배출 데이터, 사회적 및 거버넌스 지표 등)를 다루도록 설계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최근 개발들은 RPG 지침의 초기 개발 이후 중요한 진전을 나타내며, 장기 재정 지속 가능성 및 서비스 성과 보고에 대한 공식 지침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보고 체계의 적합성을 시사함 • 또한 RPG 지침이 실체의 서비스 성과와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IPSASB의 역할(안건 10.2.2 참조)과 일치하며, 일반목적재무보고서(GPFRs) 내에서 보고를 위한 기준과 지침을 개발하는 IPSASB의 목표와 부합함

[분석]

보편성

-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제공은 모든 공공부문실체에 적용되며,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전 세계적으로 정부들이 기후변화 관련 비용 증가로 인한 재정적 압박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실체에 대한 다양한 성과지표 공개와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에 관한 공시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

결과

- RPG 1과 RPG 3은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정보를 보고하는 데 있어 유용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지만, 규정 성격의 요구사항이 없으면 많은 실체들이 효과적인 보고를 위한 긴급성을 결여하게 되어 RPG 1과 RPG 3의 채택과 실행이 제한적임
- 규정 성격의 지침은 회계책임 및 의사결정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성과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부문실체들이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므로 상기의 격차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임
- IPSASB CF도 이러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문단 2.8에서는 “회계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고기간 동안 실체의 서비스 제공 성과와 향후 기간에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표 6 의 계속

■ 안건 10: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안건 항목	내용
	<p>긴급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해결하고 지속가능성 관련 기회에 투자하기 위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해짐에 따라,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고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해당 투자는 자원과 자금을 요구하며, 자본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포함함 서비스 성과와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시는 정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경쟁하는 우선순위와 자원 제한에 따른 상충을 고려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임. 또한 이는 공공 부문실체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여 공공실체가 자본 시장을 통해 중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임
10.2.3	<p>실행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aff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기술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자원 제약을 고려하여 개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기존 IPSASB 문헌: RPG 1과 RPG 3은 이러한 잠재적 기준의 강력한 기반이 될 것임. RPG 1과 RPG 3의 근본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진행할 경우, Staff는 IPSASB가 두 개의 별도 기준 제정 프로젝트를 통해 RPG 1과 RPG 3에 대한 규정 성격의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함. 이는 우선순위와 자원 상황에 따라 IPSASB 지속가능성 업무계획에 함께 추가되거나 별도로 추가될 수 있음 (b) IPSASB CF 개발: RPG 지침 개발 이후 IPSASB CF의 승인은 GPFRs 보고를 위한 기준 개발 시 따를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RPG 지침을 규정 성격의 기준으로 개발하는 데 이를 활용할 수 있음 (c) 변화하는 맥락과 국제적 성과: RPG 1과 RPG 3의 발표 이후 상당한 국제적 성과가 이루어졌음. 일부 관할권에서는 실체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성과에 대한 보고가 부분적으로 RPG에 기반을 두고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발전하였으며, 일부는 RPG에서 도출된 내용을 반영함.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2017년에 PBE FRS 48, 서비스 성과 보고를 발표했으며, 이는 RPG 3에서 제시된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의 규정 성격 기준의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따라서 RPG 지침을 바탕으로 규정 성격의 기준을 개발할 경우 IPSASB는 관할권별 보고의 개발을 고려할 수 있음
	<p>[의사결정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제공 및 논의만을 위한 안건이며, 의결 요구사항 없음
	<p>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사항</p>
10.2.4	<p>[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에 관한 잠재적인 프로젝트의 연구 및 범위 설정에 대한 분석과 고려 사항을 제공하는 것임. 이를 통해 IPSASB의 지속가능성 업무계획 내에서 향후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IPSASB 논의를 지원하고자 함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세계적인 우선순위가 지속가능성 개발로 변화함에 따라, 공공부문은 공공부문 보고서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더 나은 투명성, 회계책임 이행 및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음

표 6 의 계속

■ 안건 10: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는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필요성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식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2030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젠다의 목표가 점점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공공부문이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증가 (b)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재무 흐름을 글로벌 지속가능성 목표와 일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또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전시키는 것은 공공부문이 자본시장에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필요한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중요한 재정적 원천이 될 가능성이 큼 (c) 공공부문실체의 차별화된 역할과 책임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 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 부문 특화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의 부재 • CP는 IPSASB가 ISSB 기준을 토대로 만든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와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첫 번째 주제로 다룰 것을 제안했으며, 이 제안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음 • 이에 따라 2022년 12월 IPSASB는 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를 연구 및 범위 설정의 최우선 주제 중 하나로 포함하기로 결정함. 이 결정은 범위 설정 가정 프레임워크(Agenda 10.2.1 문단 4)를 고려하고, CP 응답에서 받은 피드백을 반영하며, IPSASB 개념체계를 활용하고, 적절한 경우 관련 민간부문 지침을 참고함으로써 연구 및 범위 설정 개발 과정을 안내할 것임
	<p>[분석]</p> <p>보편성</p> <p>10.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은 공공부문 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기본적인 요소이며, 이는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더 넓은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기인함. 따라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는 서비스 제공에서 정책 설계 및 실행에 이르기까지 공공부문 활동 전반에 걸쳐 널리 퍼져 있으며,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를 아우름 <p>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은 공공부문실체가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회계책임 이행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지속가능성의 모든 영역에서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에 대한 정보를 주요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충분히 공시하고 이를 일반목적재무 보고서에 통합할 필요성이 있음 <p>긴급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은 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연관되지만,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핵심 요소, 즉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상호 의존적이며 공공부문 운영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가치 창출에 필수적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은 2012년 UN 문서인 The Future We Want에서 설명되었으며, 이는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의 기초를 형성함 • CP에 대한 응답과 IPSASB의 2024-2028 전략 및 업무계획(2024년 6월 안건 11.2.5), 그리고 SRG 위원들은 긴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 제공에 있어서의 정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함.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지속가능성 공시의 필요성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함

표 6 의 계속

■ 안건 10: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 기준은 다른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와 관련된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초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p>실현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RS S2를 바탕으로 IPSASB SRS ED 1을 개발한 경험을 토대로, IPSASB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의 실현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기존 민간부문 지침: CP 응답을 바탕으로 IPSASB는 IFRS S1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을 공공부문 특화 일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기준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결정함. IFRS S1이 공공부문에 맞춰져 있지 않으며 공공부문의 고유한 정책 및 규제 역할을 다루지는 않지만, 당해 지침은 공공부문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 (b) IPSASB SRS ED 1 접근법: IFRS S1의 일부를 통합한 IPSASB SRS ED 1에 대한 공개 자문이 지속될 것임을 감안할 때, IPSASB는 민간부문 재무보고 지침을 공공부문에 적용 시키는 IPSASB의 확립된 접근법이 지속가능성 보고에도 유효한지, 그리고 일반 기준서를 마련하는 것이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보다 우선하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이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c) 범위 설정의 어려움: 공공부문의 핵심 기능과 사회, 경제 및 환경과 관련된 광범위한 역할 과 책임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을 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 기준을 개발하는 것은 그 주제의 복잡성에 따른 기준의 규모와 범위와 함께 다른 기준 지침 세트와의 상호 운용성 문제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함 (d) 이행 가능성: 많은 관할권이 발생주의 회계로의 전환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많은 공공 부문실체들이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기준을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음 (e) IPSASB의 임무: IPSASB의 임무에 일반목적재무제표(GPFSs)와 일반목적재무보고서(GPFRs)에서의 보고를 위한 공공부문 기준서 개발이 포함되어 있으나(안건 10.2.2 참조), IPSASB는 더 넓어진 보고 체계와 이미 제공된 지침을 고려하여 임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 후 일반목적재무보고서(GPFRs) 내에 포함되어야 할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범위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는 일반목적재무제표(GPFSs)를 개선·보완 추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p>[의사결정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제공 및 논의만을 위한 안건이며, 의결 요구사항 없음
	<p>자연 관련 공시</p>
	<p>[목적]</p>
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관련 비재무적 공시를 위한 잠재적인 프로젝트의 연구와 범위 설정을 위한 분석 및 고려 사항을 제공하는 것임. 이를 통해 IPSASB의 지속가능성 업무계획 내에서 향후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IPSASB 논의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 6 의 계속

■ 안건 10: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안건 항목	내용
10.2.5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12월, IPSASB는 천연자원 비재무적 공시를 천연자원 재무보고 프로젝트의 개발과 병행하여 연구 및 범위 설정을 위한 최우선 프로젝트로 포함하기로 결정함. 2024년 10월에 공개된 IPSASB ED 92, 유형의 천연자원은 공공부문에서의 유형 천연자원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새로운 재무보고 지침을 제안함. 이 기준서의 시행을 통해 제공되는 공시사항은 이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기후 관련 보고에 이어, 자연은 현재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에서 주요한 초점 중 하나가 되었음. 자연과 관련된 공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와 기준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UN 환경경제통합회계(SEEA) 2012 중앙 프레임워크: 경제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의 국제적 통계 기준 (b) 자연자본 프로토콜: 2021년 1월에 발표된 이 프레임워크는 조직들이 자연자본에 대해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를 파악, 측정 및 평가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음 (c)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2022년 12월에 채택된 이 프레임워크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고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위 수준의 국제적인 목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196개국이 참여하였음 (d) 자연 관련 재무 공시 태스크포스(TNFD) 권고안: 2023년 9월에 발표된 이 프레임워크는 실체들이 자연과 관련된 의존도, 영향, 위험 및 기회에 대해 GBF와 일치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500여 개 조직이 자발적인 참여를 약속함 (e) GRI 101: 생물다양성 2024: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주제를 기준으로, GRI 304: 생물다양성 2016을 기반으로 TNFD 및 자연 관련 보고의 다른 개발 사항과 일치하도록 업데이트되었음. 2024년 1월에 발표되었으며,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또한 ISSB는 2024년 4월에 시작된 생물다양성, 생태계 및 생태계 서비스(BEES)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SRG에서 ISSB Staff가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BEES 프로젝트는 현재 1단계에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투자자의 요구와 기존 프레임워크에 중점을 두고 기초적인 이해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 단계의 목표는 2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있음. 2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영향을 분석하고, IFRS S1이 이용자들의 공통된 정보 요구를 충족하는지 평가할 예정임 • 2단계가 완료되면, ISSB는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한 경우 어떤 분야에 집중할지 결정할 것임. 이는 기준 설정을 시작하고, 의견수렴 문서를 개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음. 이러한 단계들의 일정은 연구 결과와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시점에 결정될 것임 <p>[분석]</p> <p>보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경제포럼(WEF) 2023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는 향후 10년 동안 가장 심각한 5개의 글로벌 리스크 중 하나로 예상됨. 이 보고서는 또한 기후 변화 완화, 식량 불안정성, 생물다양성 파괴의 상호연결성을 설명함 • 자연과 관련된 공시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모멘텀을 얻고 있음. 공공부문실체들이 자연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많은 정부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개적인 약속을 하고 있음. SRG 회원들은 공공부문이 자연 관련 문제, 특히 생물다양성 손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성공 요소임을 강조함.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은 생물다양성 지표에 대한 주요 데이터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함

표 6 의 계속

■ 안건 10: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안건 항목	내용
10.2.5	<p>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은 자연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 관리에 대한 책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자연 관련 공시는 자연 정보의 가용성을 높여 투명성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주요 이용자들이 자연 관련 주제에 대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
	<p>긴급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2030년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 자연은 공공부문실체에게 중요한 자산이며, 기준 설정자는 이러한 국제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함. 자연 관련 공시를 현재 시점에서 다루지 않으면, 글로벌 지속가능성 노력과 일치시킬 기회를 놓치고, 자연 파괴로 인한 리스크가 공공부문실체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공부문을 위한 국제적인 자연 관련 공시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p>실현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IPSASB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의 실현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기존 민간부문 지침: IUCN, WWF, The Nature Conservancy와 같은 조직들이 이미 상당한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관련 민간부문 지침은 최근에 개발되었으며(예: TNFD 프레임워크와 GRI 표준은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발표됨) 아직 발전 중임(예: 생물 다양성, 생태계 및 생태계 서비스(BEES)에 관한 ISSB의 연구 프로젝트). 이는 민간부문 자연 관련 공시의 요구사항과 체계가 더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b) IPSAS와의 연결: 현재 진행 중인 IPSASB ED 92, 유형의 천연자원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과 이 주제의 예상되는 관련성을 고려할 때, IPSASB는 자연 관련 공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이 분야에서 얻은 응답과 시사점, 연결된 정보의 잠재적 범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c) 적용범위 설정의 어려움: 자연의 범위는 넓고 기술적으로 복잡하며, 자연·사회·경제에 걸친 다양한 상호 연결 요소를 갖고 있음. IPSASB는 공공부문 주요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는 자연 관련 공시 기준의 적절한 범위를 설정하고, UN SEEA 및 기타 통계 보고와의 상호 운용성도 고려해야 함. 기존의 프레임워크들(문단 3 참조)은 일반적으로 '자연 관련',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자연자본' 등의 폭넓은 용어를 바탕으로 범위와 요구사항을 설정하며, 각 용어는 고유한 중점을 가짐. 이러한 용어들은 부록 A: 자연 관련 정의에서 추가로 설명됨 (d) 이행 가능성: 최근 ISSB BEES 프로젝트의 업데이트에 따르면, 대부분의 관할권들은 이미 의무적이고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 BEES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갖추고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의무적 공시 항목은 물, 폐기물, 생물다양성임. 그러나 관할 구역 내에서 자연 관련 공시의 의무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SRG 위원들은 유럽의 경우 매우 구체적인 지표의 요구로 인해 ESRs 생물다양성 기준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IPSASB가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어려움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함
	<p>[의사결정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제공 및 논의만을 위한 안건이며, 의결 요구사항 없음

표 6 의 계속

■ 안건 10: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안건 항목	내용
	<p>지속가능성 보고 - 분과별 토의</p> <p>[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문서는 IPSASB 위원 등 정례회의 참석자들이 12월 회의 중 분과별 토의를 준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배경과 질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분과별 토의는 IPSASB의 프로젝트 평가 기준에 따라 잠재적인 지속가능성 보고 프로젝트가 주요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에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이 프로젝트들이 IPSASB 자원의 제약 내에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예비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0.2.6	<p>[분과별 토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12월 회의에서 IPSASB 위원, Technical Advisors, 그리고 Observers들은 IPSASB의 지속가능성 업무계획에 포함될 미래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 분과별 그룹으로 배정됨. 분과별 그룹에서 도출된 주요 시사점은 12월 회의 중에 IPSASB에 보고되며, 이 정보는 Staff가 연구 및 범위 설정 단계에서의 다음 수순을 심의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 각 분과별 그룹은 세 가지 주제를 모두 논의하고, 할당된 주제에 대해 보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RPG 1 및/또는 RPG 3에 대한 규정 성격의 지침 개발(안건 10.2.3) (b) 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안건 10.2.4) (c) 자연 관련 공시(안건 10.2.5) <p>[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분과별 그룹은 세 가지 주제를 모두 논의함. 논의가 유동적일 수 있으나, 회의에서 IPSASB에 보고될 주요 피드백은 IPSASB의 프로젝트 우선순위 선정 기준과 다음 질문들에 중점을 두어야 함 <p>일반 프로젝트 우선순위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IPSASB의 프로젝트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세 가지 잠재적인 프로젝트를 다음 기준에 따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성: 해당 이슈가 전 세계 공공부문실체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지 여부 ☞ 결과: 해당 이슈가 GPFS와 GPFRI 회계책임 이행 및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여부 ☞ 긴급성: 해당 이슈가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 실현 가능성: 다른 프로젝트의 완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시간 내에 및 현재 자원 제약 내에서 기술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 - 각 주제를 진행함으로써 예상되는 주요 이점은 무엇인가? - 각 주제를 진행함으로써 예상되는 주요 어려움은 무엇인가? - 다음 IPSASB SRS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결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추가 연구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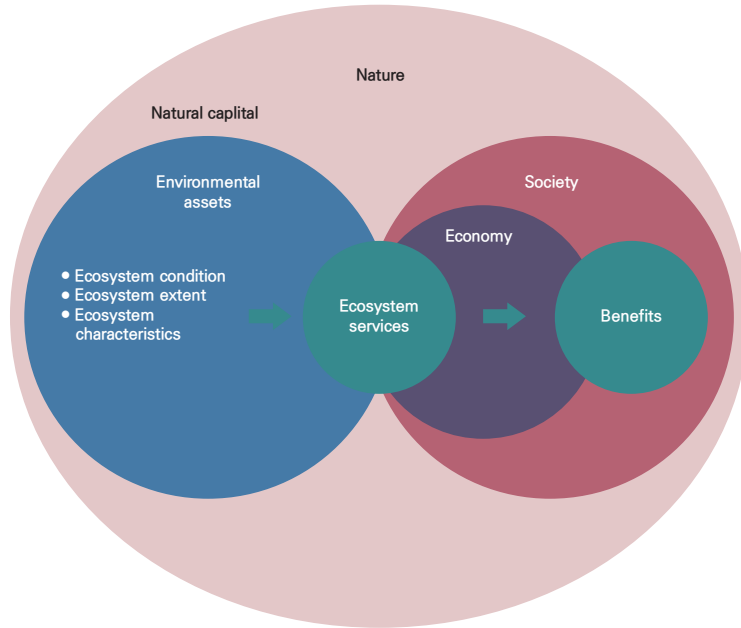
표 6 의 계속

■ 안건 10: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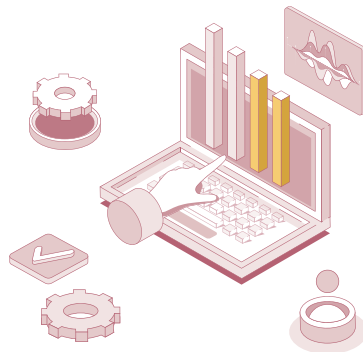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분과별 그룹은 토론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별 질문들을 고려할 수 있음
	<p>RPG 1 및 RPG 3에 대한 공식 지침 개발(안건 10.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분의 경험과 관찰에 비추어 볼 때, IPSASB가 RPG 1과 RPG 3을 비강제 지침으로 결정한 원래의 결정 요인들이 여전히 유효한지, 특히 공공부문에서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 및 서비스 성과 정보 보고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RPG 1과 RPG 3을 IPSASB SRS 기준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소나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예: 목표, 적용범위,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10.2.6	<p>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안건 10.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가 민간부문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 - 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에 대해 공공부문에서 광범위하고 표준화된 접근 방식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가? - IPSASB가 지속가능성 관련 일반 공시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다른 잠재적인 프로젝트들에 비해 얼마나 중요한가? - 자연 관련 공시(안건 10.2.5) - 자연 관련 이슈와 정의의 폭넓음 및 다양성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 관련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예: 생물 다양성, 생태계, 생태계 서비스, 토지, 물, 폐기물 등) - 기존 IPSASB 자원과 국제적 프레임워크의 현황을 고려할 때, IPSASB가 이 주제에 대해 초기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
	<p>부록 A: 자연 관련 정의</p>
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기존의 프레임워크와 기준들은 자연 관련 보고에 대해 다양한 적용 범위를 갖고 있으며, '자연 관련', '생물 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천연자본' 등과 같은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며, 각 용어는 고유한 초점과 뉘앙스 차이를 가지고 있음 • 예를 들어, TNFD 용어집에서 제공된 아래 정의들은 잠재적인 자연 관련 프로젝트의 연구 및 적용범위 설정 시 고려해야 할 복잡성과 뉘앙스를 보여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자연은 자연 세계를 의미하며, 살아 있는 유기체들(사람을 포함)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둠 (b) 자연자본은 식물, 동물, 공기, 물, 토양, 광물 등과 같은 재생 가능 및 재생 불가능 자연 자원을 의미하며,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함 (c) 환경 자원은 지구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물 및 비생물적 요소로, 생물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며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함 (d) 생물다양성은 육상, 해양 및 기타 수생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출처에서 살아 있는 유기체 들의 변동성을 의미하며, 이는 종내, 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함 (e) 생태계는 식물, 동물, 미생물 공동체와 비생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단위를 의미함 (f) 생태계 서비스는 경제적 및 기타 인간 활동에 혜택을 주는 생태계의 기여를 의미함 • 또한 TNFD 권장 사항에서 제공된 다음 다이어그램은 이 용어들 간의 관계의 복잡성과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며, 사회 및 경제와의 상호작용을 보여줌

■ 안건 10: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안건 항목	내용
-------	----



Agenda Item 10.3.1
Page 1



라. IPSASB 업무계획(2024년 12월~2025년)

프로젝트	2024		2025		
	12월	3월	6월	9월	12월
기준 제정 프로젝트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		RR	RR/DI	RR/DI	IP
측정-적용 단계		RR/IP	IP		
천연자원		RR	RR/IP	RR/IP	IP
재무제표 표시	DI/CP	DI/CP	DI/CP	CP	
IPSAS 33-제한된 범위 업데이트		RR/IP	IP		
IPSAS - GFSM 2014 연결고리 강화	RS/PB				
IFRIC 대응-제한된 범위	IP				
연차개선과제(Improvements)		ED		DI/IP	
IPSAS31 무형자산-제한된 범위		RS	PB		
중요성 판단 기준-제한된 범위	RS	PB			
유지보수 및 연구 활동					
응용 패널	RS				
시행 후 검토	RS				
학술 자문 그룹 - 공공부문 연구				RS	
기타 프로젝트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개발 i) 일반 요구사항 ii) 천연자원 관련-비재무적 정보 공시	RS				
IPSASB 핸드북	발간		발간		

* RS: 연구 및 범위 설정(Initial Project Research and Scoping Activities)

PB: 프로젝트 개요 승인(Approval of Project Brief)

CP: 자문보고서 승인(Approval of Consultation Paper)

ED: 공개초안 승인(Approval of Exposure Draft)

RR: 응답 검토(Review Responses)

DI: 이슈 논의(Discussion of Issues)

IP: 기준서 제개정 승인(Approval of Final Standard or Amendments to IPSAS)

03 IPSASB SRS ED 1- ‘기후 관련 공시’ 의견 제출



가. 공개초안 발표 배경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취하고 있는 조치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보고를 원하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의 경우 재무적·경제적·기후 관련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보고할 수 있는 국제적인 보고 프레임워크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세계은행의 요청²⁾에 따라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³⁾는 2022년 5월에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보고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글로벌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하였으며, 2024년 10월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IPSAS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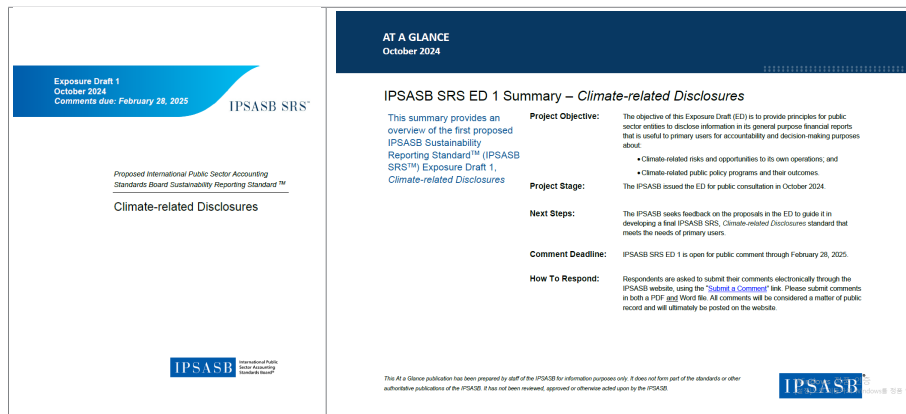
2) World Bank, *SOVEREIGN CLIMATE AND NATURE REPORTING*, 2022.

3)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 Board)는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 국제기구로 1996년부터 정부 등 공공부문실체를 위한 회계기준(IPSAS) 제·개정 역할을 맡아 왔으나, 2023년부터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기준 제·개정 기구로서의 기능도 병행하여 수행 중에 있음

SRS ED 1, 기후 관련 공시⁴⁾를 IPSASB의 첫 번째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으로 발표하였다.

IPSASB는 공공부문의 기후 관련 공시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이 공개초안을 민간부문의 지속가능성 보고 프레임워크 기반 위에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방식⁵⁾으로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CFD)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⁶⁾를 기반으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공시사항을 제안하고 있으며,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의 다중 이해관계자 관점을 이용하여 공공부문의 규제자적 역할과 책임을 반영하는 기후 정책 결과와 관련된 공시사항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IPSASB의 개념체계⁷⁾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IFRS S1, 일반 요구사항⁸⁾을 기후 관련 공시의 개념적 기반과 일반 규정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1 IPSASB SRS ED 1 표지 및 요약 안내자료



- 4) IPSASB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Exposure Draft 1, Climate-related Disclosures
- 5) IPS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공공부문 간 일관되고, 비교가능하며, 검증 가능한 공시를 요구하는 기준 정립에 용이한 접근방법으로 판단함
- 6) IFRS S2, Climate-related Disclosures
- 7)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ing by Public Sector Entities
- 8) IFRS S1,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그림 2 IPSASB SRS ED 1 개발 접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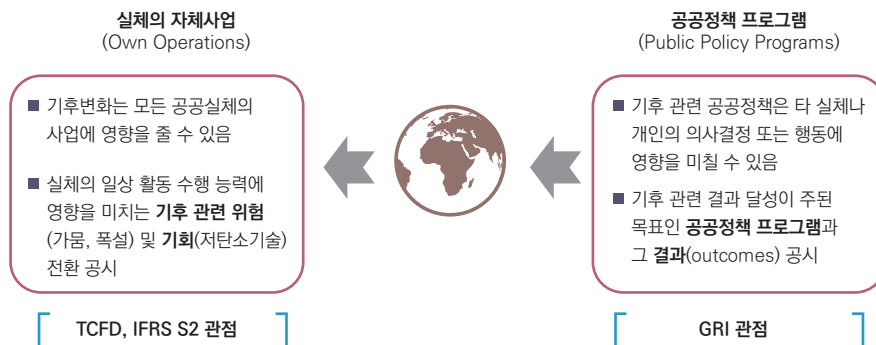


출처: IPSASB, IPSASB SRS ED 1 – At a Glance, p. 4.

나. 공개초안 주요 제안사항

IPSASB는 이 공개초안의 주요 목적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주요 이용자의 회계 책임 이행과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공공부문의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들은 공공부문실체의 사업에 대해 기후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공공부문실체가 기후 행동(climate action)의 측면에서 기후 관련 공공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도 필요로 한다. 공개초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후 관련 공시사항을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자체사업에 대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와 ‘기후 관련 공공정책 프로그램 및 그 결과’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그림 3 IPSASB SRS ED 1의 기후 공시의 관점



출처: 임정혁, 「2024년 12월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

1) 자체사업에 대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Climate-related risks and opportunities to its own operations)

자체사업에 대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공시는 기후변화가 공공부문실체의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알리기 위한 공시사항이다. 이 공시는 공공부문실체가 계속적으로 일상활동을 수행하고 공익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에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예: 가뭄, 폭설) 및 기회(예: 저탄소기술 전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후변화는 공공부문실체의 모든 자체사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체사업에 대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는 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실체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공공부문실체에게 적용된다.

공개초안은 자체사업에 대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공시를 거버넌스(governance), 전략(strategy), 위험 및 결과 관리(risk and outcome management), 지표 및 목표(metrics and targets), 이상 네 가지의 핵심요소(pillar)로 구분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TCFD 및 IFRS S2와 동일한 것으로, IPSASB는 그 이유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의 상호 호환성(interoperability)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⁹⁾

자체사업에 대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표적인 공시 내용을 네 가지 핵심 요소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거버넌스**: 실체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와 통제 수단, 절차를 공시한다. 여기에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9) SRS ED 1의 BC9에 따르면 IPSASB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가치사슬의 상호 연결성,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국채의 중요성,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혼합 금융의 확대 활용을 고려할 때 민간부문의 지속가능성 지침과 상호 호환성을 갖춘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전략:** 실체의 전략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에 대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미치는 영향, 실체의 전략과 사업모형이 갖고 있는 기후 회복력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한다.
- **위험 및 결과 관리:**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평가·우선순위 설정·모니터링하기 위해 실체가 사용하는 위험관리 프로세스 및 정책에 관한 정보 등을 공시한다.
- **지표 및 목표:** 실체가 설정하였거나 법률이나 규제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기후 관련 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와 그 측정 방법 등을 공시하며, 여기에는 스코프 1 내지 스코프 3으로 분류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포함된다.¹⁰⁾

2) 기후 관련 공공정책 프로그램 및 그 결과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s and their outcomes)

기후 관련 공공정책 프로그램 및 그 결과에 관한 공시는 공공부문실체가 국제 협약이나 국가 차원의 약속을 통해 설정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공공정책과 그 성과에 대해 보고하기 위한 공시사항이다.

여기서 기후 관련 공공정책 프로그램은 공공부문실체가 기후와 관련된 결과 달성을 주된 목표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 타 실체나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법률이나 규제, 세금, 보조금 등 모든 형태의 개입 조치를 의미한다. 이 범주의 공시사항은 기후 관련 공공정책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는 공공부문실체에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자체사업에 대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와 동일하게, 기후 관련 공공정책 프로그램 및 그 결과에 관한 공시도 거버넌스, 전략, 위험 및 결과 관리, 지표 및 목표의 핵심 요소로 구분되며, 핵심요소별 대표적인 공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거버넌스:** 실체가 기후 관련 공공정책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결과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와 통제 수단, 절차를 공시

10) 공개초안은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위한 다른 방법이 주요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더 충족시킨다고 판단되거나 실체가 관할 당국으로부터 실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받지 않는 한,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Greenhouse Gas Protocol: A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2004)'에 따라 실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것을 요구함.

한다. 여기에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 **전략:** 기후 관련 공공정책 프로그램 및 그 결과에 대한 실체의 전략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공공정책 프로그램의 재무적 영향 등을 공시한다.
- **위험 및 결과 관리:** 기후 관련 공공정책 프로그램의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예상되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식별·평가·우선순위 설정·모니터링 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험관리 프로세스 및 내부 정책 등을 공시한다.
- **지표 및 목표:** 기후 관련 공공정책 프로그램에 합리적으로 기인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와 그 측정 방법 등을 공시하며, 실체가 정책의 결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온실가스 외 다른 지표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공시한다.

다. 공개초안에 대한 센터 의견

SRS ED 1의 공시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IPSASB는 총 10개의 의견요청 사항(Specific Matters for Comment)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묻고 있다.

표 1 IPSASB SRS ED 1의 의견요청 사항

- (1) 기후 관련 공시의 구분 접근법의 적정성(자체사업 vs 기후정책)
- (2) GHG 프로토콜의 원칙적 사용에 대한 평가
- (3) 공시 대상 공공정책 프로그램 범위의 적정성
- (4) 공공부문 특유 용어의 정의(기후 관련 공공정책 프로그램 등)
- (5) 기후 관련 공공정책의 전략 관련 공시의 정보수요 충족 여부
- (6) 기후 관련 공공정책의 지표·목표 관련 공시의 정보수요 충족 여부
- (7) IPSASB 개념체계에 따른 중요성 및 주요 이용자 정의 간의 정합성
- (8) 공시의 위치 및 보고시기 관련 일반 요구사항의 적정성
- (9) 경과규정 적용 대상 공시사항의 범위 판단
- (10) 기타 제안

센터는 현재 지속가능성 보고 경험이 풍부한 일부 공기업 및 정책연구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견제출에 필요한 제반 정보와 실무자 관점의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국가회계자문위원회¹¹⁾의 자문을 거쳐 SRS ED 1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IPSASB 측에 회신하였다.

11) 제33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2025. 2. 17.)

표 2 IPSASB SRS ED 1의 의견요청사항에 대한 센터 의견서

February 28, 2025
 Ross Smith
 Program and Technical Director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277 Wellington Street West
 Toronto, ON M5V 3H2 Canada

Re: The comments on the SRS Exposure Draft 1,
 Climate-related Disclosures

Dear Mr. Smith,

The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the GAFSC”) at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is pleased to respond to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the IPSASB”) SRS ED 1, Climate-related Disclosures. We firmly believe that the IPSASB’s efforts to develop public sector-specific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sustainability information and facilitating communication between public sector entities and a diverse range of stakeholders, including private companies and citizens.

To ensure that our comments accurately reflect Korea’s institutional and practical circumstances regarding climate change,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several public sector entities. We believe that this approach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ublic sector-specific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Based on the interviews conducted, while we generally support most of IPSASB’s proposals, we would like to propose a few revisions to SRS ED 1.

The following comments constitute our responses to the eight specific matters for comment.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if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our comments. You may direct your inquiries to the technical staff of the GAFSC, Jung-Hyuk Yim (junghyim@kipf.re.kr).

Sincerely,
 Chang, Woo Hyun
 Executive Directo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Appendix 1: Responses to the Specific Matters for Comment in ED 1]**Specific Matter for Comment 1:**

Public sector operations and regulatory role (paragraphs 1-4)

This Exposure Draft requires a public sector entity to provide disclosures about (i) the climate-related risks and opportunities that are expected to affect its own operations, and (ii)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s and their outcomes when an entity has responsibility for those programs and their outcomes (see paragraphs 3 and AG2.7-AG2.8).

Do you agree the proposed approach meets the information needs of primary users (see paragraphs 1-4)? If not, what alternative approach would you propose and why?

The Exposure Draft includes an Alternative View on the approach to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s.

표 2 의 계속

We, GAFSC, generally agree with the approach of the Exposure Draft, which classifies climate-related disclosures into (i) climate-related risks and opportunities associated with an entity's own operations and (ii)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s and their outcomes.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multiple public power generation companies and a research institution responsible for climate-related policy design to assess the applicability of the Exposure Draft. Interviewees currently disclose climate-related information in CDP reports, ESG reports, and Carbon Neutrality TCFD reports. The primary users of these reports mainly include the government, investors (including shareholders), citizens (including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ions. Even if these public power generation companies were to apply the Exposure Draft for climate-related disclosures, it is expected that the composition of primary users would remain largely unchanged.

Given these considerations, the disclosures of (i) climate-related risks and opportunities to an entity's own operations under the Exposure Draft are generally expected to meet the information needs of primary users.

- Currently published sustainability reports deliver distinct information to various stakeholders: the government primarily utilizes them for supervising public companies (e.g., compliance with emission targets), investors use information for evaluating the progress of climate-related strategies implemented by public companies, and citizen groups, including environmental organizations, use them mainly for assessing companies' efforts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 The public companies stated that, based on past experience, there have been no additional information requests from primary user groups regarding their currently published sustainability reports
- The climate-related disclosure requirements for an entity's own operations under the Exposure Draft are expected to largely align with the scope of climate-related information included in currently published sustainability reports.

However, in the case of (ii) disclosures on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s and their outcom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se disclosures may not fully meet the information needs of primary users due to practical limitations in measuring policy outcomes.

- According to the 2023 implementation review of National Framework Plan for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Korea's national-level climate strategy, except for a few, most of the 82 subtasks do not include climate-related targets or outcomes, such as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 Due to the nature of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s, it is currently extremely difficult to measure the respective outcomes (GHG emissions) of individual programs. Instead, outcomes can only be measured at an aggregate or collective level for groups of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s.

표 2 의 계속

Specific Matter for Comment 2:

Own Operations (Appendix A1: Application Guidance – Own Operations)

The Exposure Draft primarily aligns disclosure requirements about an entity's own operations with private sector guidance (IFRS S1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and IFRS S2 Climate-related Disclosures), with public sector guidance, including a rebuttable presumption that entities use the GHG Protocol: A Corporate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2004), unless another established method of measuring its greenhouse gas emissions is more appropriate or required by a jurisdictional authority (see paragraph AG1.72).

Do you agree with the proposed approach and guidance? If not, what alternative approach would you propose and why?

We agree with the approach and related guidance that allow entities not to use the GHG Protocol (2004) if a more appropriate alternative method exists or if another calculation method is required by national regulatory authorities. This approach aligns with Korea'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KSDS), which Korean public entities are expected to adopt.

In the case of Korea's public power generation companies, they are expected to apply a dual approach to GHG emission calc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KSDS No.1 and No.2 Exposure Drafts:

- High-emission entities, such as those subject to the Korean Emissions Trading Scheme (K-ETS) or Target Management System, apply Korea's independent methodology as stipulated in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 The other entities apply the GHG Protocol (2004) for emission calculations.

For reference, the GHG emission calculation method defined by the Act requires the application of Tier 1 to Tier 3 coefficient depending on the emission scale. If an entity opts for Continuous Emission Monitoring (CEM) method, Tier 4 is applied.

Therefore, compared to the GHG Protocol (2004), which primarily adopts Tier 1 coefficient for calculation, the approach based on the Act is considered more precise and suitable in ensuring comparability between entities operating similar emission facilities or engaging in similar activities.

Specific Matter for Comment 3:

Scope of Public Policy Programs (paragraph 3 and AG2.4-AG2.6)

This Exposure Draft requires disclosures about public policy programs with a primary objective to achieve climate-related outcomes. Do you agree with this approach and the scope of public policy programs included in required disclosures? If not, what alternative approach would you propose and why?

The Exposure Draft includes an Alternative View on the approach to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s.

We agree with the proposal in the Exposure Draft, which limits disclosure requirements to public policy programs primarily aimed at achieving climate-related outcomes.

표 2 의 계속

Specific Matter for Comment 4:

Public Sector-Specific Definitions (paragraph 7)

This Exposure Draft provides public sector-specific definitions and related guidance for:

- (a) Public policy programs;
- (b) Public policy program outcomes; and
- (c)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s.

Do you agree with the proposed public sector-specific definitions and guidance? If not, what alternative definitions would you propose and why?

We generally agree with the proposal in the Exposure Draft. However, it is necessary to clearly provide criteria in the core text or Application Guidance, rather than in the Implementation Guidance, for identifying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s within public policy programs and for identifying climate-related outcomes within public policy program outcomes.

Paragraph 7 defines a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 as a public policy program primarily aimed at achieving climate-related outcomes. However, even when referring to the definitions of “public policy programs” and “public policy program outcomes” in the same paragraph,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specific conditions under which a program or outcome can be considered climate-related.

In the Application Guidance, paragraphs AG2.5, AG2.6, and AG2.9-AG2.14 describe typical types and key characteristics of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 outcomes. However, these paragraphs do not provide direct principles for identifying which outcomes can be considered climate-related. Implementation Guidance (IG 1) provides only a principle-level explanation, stating that a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 is one that primarily aims to achieve outcomes that impact the climate.

Specific Matter for Comment 5:

Strategy for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s (paragraphs 12 and AG2.24-AG2.31)

This Exposure Draft proposes disclosure requirements about an entity’s strategy for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s which include information that enables primary users to understand the entity’s strategy and decision-making, anticipated challenges to achieving intended outcomes and financial implications of the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

Do you agree that the disclosure requirements on strategy for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s meet the information needs of primary users? If not, what alternative approach would you propose and why?

Withhold of Response

※ The interview results alone are not sufficient to fully identify the primary users of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 disclosures and their information needs.

표 2 의 계속

Specific Matter for Comment 6:

Metrics and Targets for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s (paragraphs 26-27 and AG2.34-AG2.44)

This Exposure Draft proposes to require disclosures about metrics and targets, including (a) the change in greenhouse gas emissions reasonably attributed to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s and (b) other metrics to measure and monitor performance in relation to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s.

Do you agree these disclosures meet the information needs of primary users of the report (see paragraph 26)? If not, what alternative approach would you propose and why?

We generally agree with the proposal in the Exposure Draft. However, we propose paragraph 26 to be revised to allow reporting entities to solely disclose “Other metrics”, as the reporting entity may face practical challenges in disclosing indicators based on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It is our understanding that paragraph 26 requires disclosures of both (a) the change in GHG emissions attributable to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s and the methodology used for its calculation, and (b) “Other metrics” and the methods used for their measurement.

However, considering the following practical circumstances in Korea, it may be challenging to accurately estimate and disclose changes in GHG emissions attributable to certain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s.

- In the case of Korea, according to the “2023 Implementation Review of the National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Master Plan” published in April 2024 by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the commission has developed sector-specific mitigation policies and policies to enhance infrastructure for implementation under the National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Master Plan, which spans 2023 to 2042. These policies are managed through 82 subtasks. This review report provides quantified performance data, including emission reduction rates, forecasts, and targets, for certain subtasks under sector-specific mitigation policies. However, for most other subtasks, the disclosed information is presented in the form of output indicators such as budget expenditures, rather than climate-related outcomes measured by GHG emissions.
- Based on an interview with AA Research Institute, which is responsible for research functions related to the design of climate-related policies, it was found that,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s, it is currently highly challenging to measure respective outcomes (GHG emissions) of individual public policy programs. Instead, it is presumed that outcome measurement is only feasible at the collective level of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s.

표 2 의 계속

Specific Matter for Comment 7:

Conceptual foundations (paragraphs B2-B15)

This Exposure Draft includes conceptual foundations aligned with the IPSASB Conceptual Framework including the definition of materiality (see paragraphs B8-B10) and primary users of public sector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s (see paragraphs B.AG28-B.AG33).

Do you agree that the proposed definition of materiality based on the IPSASB Conceptual Framework meets the information needs of primary users for climate-related disclosures? If not, what alternative approach would you propose and why?

We generally agree with the proposal in the Exposure Draft. Public power generation companies have been regularly reporting climate-related information in CDP reports, ESG reports, and Carbon Neutrality TCFD reports. The primary user groups of these reports mainly consist of the government, investors (including shareholders), and citizens (including environmental organizations). This composition is expected to remain largely unchanged even if climate-related disclosures ar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Exposure Draft.

The information needs of each group are as follows:

- The government primarily requires information necessary to supervise public companies (e.g., compliance with emissions target).
- Investors requires information to evaluate progress and performance of climate-related strategies.
- he citizen groups, including environmental organizations, mainly seeks information to assess companies' efforts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Considering that these public companies have stated, based on past experience, that there have been no additional information requests from primary user groups regarding related reports, it appears that the information needs of primary users would still be met even if the definition of materiality under the Exposure Draft were applied.

Specific Matter for Comment 8:

General requirements (paragraphs B16-B46)

This Exposure Draft includes general requirements aligned with private sector guidance (IFRS S1) including the requirements for (a) an entity to include its climate-related disclosures in its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s (see paragraphs B22-B25) and (b) an entity to report its climate-related disclosures at the same time as its related financial statements (see paragraphs B26-B31).

Do you agree that the disclosure requirements proposed in the general requirements are appropriate for public sector entities? If not, what alternative approach would you propose and why?

We do not fully agree with the proposed disclosure requirements, and therefore propose partial revisions to the relevant paragraphs, taking into account practical constraints.

표 2 의 계속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several public power generation companies that have been actively preparing for the mandatory implementation of KSSB's Korean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based on IFRS S1 and IFRS S2,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Exposure Draft.

According to the interview, these public companies have been reporting climate-related information for several years in CDP reports, ESG reports, and Carbon Neutrality TCFD reports. As these reports are subject to third-party verification by government authorities or external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y are typically published approximately 11 months after the end of the fiscal year.

Based on their experience in preparing climate-related reports, public companies are expected to disclose the climate-related information required by the Exposure Draft no earlier than six to eight months after the issuance of the business report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

Although these public companies are listed companies with extensive experience and expertise in climate-related disclosures, it is expected that institutional and practical constraints will persist for a considerable period in incorporating climate-related disclosures in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s, as outlined in paragraph B22-B25.

Taking these constraints into account, we propose revisions to paragraph B.AG62.(a) or paragraph 31.(a) of the Exposure Draft concerning the placement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 (Proposed Revision A) Removal of the Requirement for Simultaneous Availability of Cross-Referenced Information and Climate-Related Disclosures
 - Paragraph B.AG62.(a) stipulates that when a reporting entit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B25, chooses to include climate-related disclosures in a report other than the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 and discloses them by cross-reference, the cross-referenced information in the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 must be available at the same time as the climate-related disclosures.
 - In cases where legal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hinder the simultaneous availability of cross-referenced information and climate-related disclosures, paragraph B.AG62.(a) should be revised to permit a reporting lag (e.g., nine months) between the availability of cross-referenced information and climate-related disclosures.
- (Proposed Revision B) Relaxation of Requirements in Paragraph 31.(a)
 - Paragraph 31.(a), as a transitional provision, permits climate-related disclosures to be reported within nine months of the issuance of the relevant financial statements, but only for the initial reporting period in which this standard is adopted.
 - To allow an extension of the reporting date following the initial adoption period, paragraph 31.(a) should be revised to enable entities to apply the nine months transition provision in subsequent reporting periods.

표 2 의 계속

Specific Matter for Comment 9:

Transition (paragraphs 30–33)

This Exposure Draft proposes to provide transitional relief only in the first year of adoption (see paragraphs 30–33) for disclosures relating to an entity’s own operations and where applicable, relating to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s and their outcomes.

Do you agree that the proposed transition provisions approach should be applicable to both own operations and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s? If not, what alternative approach would you propose and why?

Withhold of Response.

※ We have not identified a fundamental reason to dispute the application of the transitional provision on disclosure requirements, both for own operations and climate-related public policy programs. However, as we have not obtained sufficient grounds from the interviews to provide a response on SMC 9, we have decided to withhold our response.

Specific Matter for Comment 10:

Do you have any other comments on the proposed Exposure Draft?

We propose the following two points regarding the Exposure Draft:

- Extension of the transitional relief for Scope 3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disclosure and provision of Scope 3 GHG emissions calculation guidelines
- Implementation of measures to mitigate the disclosure burden for entities subject to both the Exposure Draft and IFRS S2

First, the transitional provision in paragraph 31.(b), which allows a deferral of Scope 3 GHG emissions disclosure only for the initial reporting period upon adoption, should be significantly exten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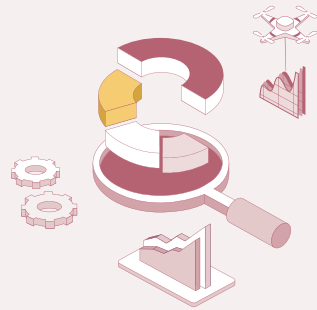
Interviews conducted with several public power generation companies in Korea indicate that these companies commonly anticipate significant challenges in calculating and disclosing Scope 3 emissions under the Exposure Draft. Specifically, public companies have expressed concerns that the absence of established guidance on Scope 3 GHG emissions calculation could result in substantial variability in reported figures, depending on the measurement methodology adopted by each entity. As a consequence, they argue that the deferral of Scope 3 GHG emissions disclosure should be permitted until a standardized calculation framework is established.

Considering these practical constraints, we recommends extending the transitional relief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31.(b) to a minimum of three years starting from the initial adoption year. Furthermore, to improve comparability of Scope 3 GHG emissions data among public sector entities applying the Exposure Draft, IPSASB should provide official guidelines for Scope 3 emissions calculations.

표 2 의 계속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measures to mitigate the disclosure burden for reporting entities subject to both the Exposure Draft and IFRS S2. In Korea, listed public companies are required to comply with the KSDS issued by KSSB, which are based on IFRS S1 and IFRS S2. Onc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adopt the Exposure Draft, these companies would also qualify as public sector entities under the Exposure Draft, thereby becoming subject to its disclosure requirements as well.

Since the disclosure requirements for the climate-related risk and opportunity to an entity's own operations under the Exposure Draft are largely derived from IFRS S2 and substantially overlap with its requirements, we propose revising paragraph B34 to permit entities that comply with IFRS S2 (or an equivalent national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 to be deemed compliant with the Exposure Draft as well.



04 해외 재무결산 동향(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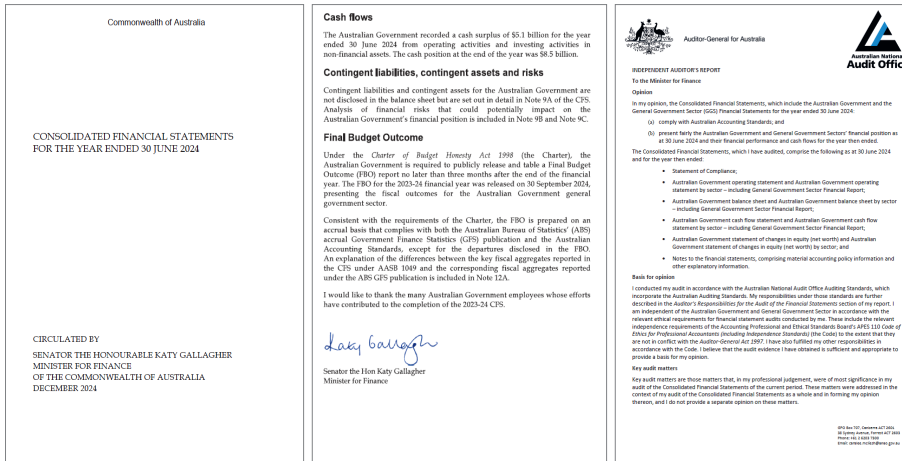
본 재무결산 동향은 2024년 12월에 발간된 호주 정부의 2023-24회계연도 재무결산서를 요약한 것으로, 원문(*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4*)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inance.gov.au/sites/default/files/2024-12/2023-2024-Consolidated-Financial-Statements.pdf>

가. 결산서의 구성

「호주 정부 재무제표」는 재무부장관 메시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감사관 등의 독립감사보고서, 호주 정부의 재무제표 및 관련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제표는 총 5종으로 재정운영표(Operating statement), 재정상태표(Balance sheet), 현금흐름표(Cash flow statement), 순자산변동표(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net worth)) 및 부문별 명세서(Sector statements)로 구성되며, 관련 주식으로 총 14종의 정보를 제공한다.

부문별 명세서는 4종의 재무제표(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 현금흐름표 및 순자산 변동표)를 각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비금융공기업(Public non-financial corporations), 금융공기업(Public financial corporations)으로 구분한 후 내부거래 및 상계(Eliminations and netting)를 반영하여 호주 정부(Australian Government)의 재무제표를 산출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내부거래 및 상계의 경우 부문 간 거래 및 손익, 상호 간 잔액 제거 금액을 보여준다.



결산보고서 표지

재무부장관 메시지

독립감사보고서

나. 결산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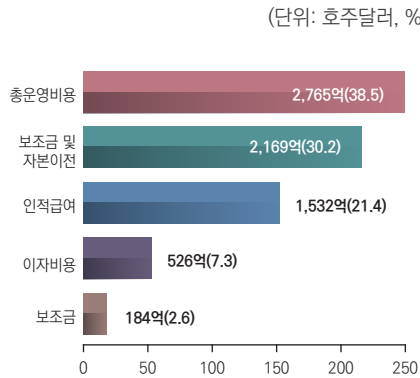
1) 수익 및 비용

2024년 6월 30일 마감 회계연도의 총수익은 7,276억AUD, 총비용은 7,176억AUD를 기록했다. 2024년 6월 28일(금)의 환율(1AUD=923.4KRW)을 적용하면 총수익은 약 672조원, 총비용은 약 663조원이다.

수익 중 국세수익은 6,494억AUD인데, 그 비중은 개인 및 기타 원천징수세(Individuals and other withholding taxes)가 52%를 차지하며 법인세가 22%로 그 뒤를 잇는다. 국세수익은 전년 대비 320억AUD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고용 및 임금의 강력한 성장을 반영한 개인 및 기타 원천징수세의 352억AUD 증가, 소비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세(Goods, GST and Services Taxes) 수입의 증가를 반영한 판매세 증가(24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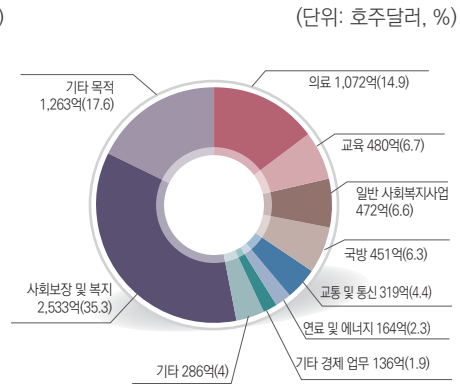
AUD), 연금기금세(Superannuation fund taxes)의 증가(23억AUD)에 기인한다. 이 증가는 기업 이익 감소로 인한 법인세 102억AUD의 감소로 일부 상쇄된다.

그림 1 비용의 구성



출처: 호주 재무부,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4*, p. 11, <Chart 5>.

그림 2 기능별 총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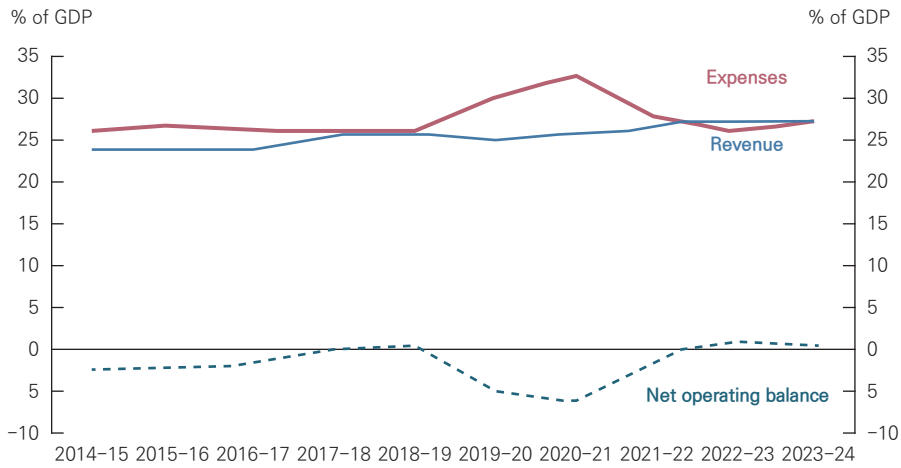


출처: 호주 재무부,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4*, p. 12, <Chart 6>.

비용은 총운영비용이 38.5%를 차지하며, 보조금 및 자본이전은 30.2%, 그리고 인적급여가 21.4%를 차지한다. 총운영비용의 변동 중 가계에 대한 재화 및 용역혜택이 183억AUD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국가장애보험제도(67억AUD)에 따른 참여자 청구의 증가 및 간접 건강 및 노인 요양 개인 혜택 비용 증가(45억AUD)와 관련이 있다. 개인복지급여는 104억AUD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개인에의 사회보장급여의 증가(111억AUD)에 기인한다. 이자비용은 67억AUD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호주 중앙은행의 정산잔액의 증가(20억AUD) 및 연금 이자비용의 증가(10억AUD)에서 기인한다. 보조금 및 자본이전은 56억AUD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주(State Government) 및 준주정부(Territory Government)¹²⁾에 대한 보조금 증가(66억AUD)에서 기인한다.

12)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 및 NT(Northern Territory)의 2개의 본토 준주 및 7개의 외부준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주는 일반적으로 주보다 자치권이 제한적이며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음

그림 3 2014-15회계연도 이후의 재정운영표(GDP의 %)



출처: 호주 재무부,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4*, p. 6, <Chart 1>.

결산개요를 통해 제시하는 상기 차트는 수익(Revenue), 비용(Expenses) 및 순운영결과(Net operating balance)의 GDP 대비 비중 및 변동 추이를 나타낸다. 수익 및 비용은 GDP의 20%를 상회하는 추세를 보이며, 비용의 경우 COVID-19가 발생한 2020-21회계연도에 10년 내 GDP 대비 비중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순운영결과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값으로, 양(+의 값을 기록하기도 하고 음(-)의 값을 기록하기도 했다. 순운영결과는 GDP 대비 5% 내외의 값을 기록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0-21회계연도에 가장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2) 자산 및 부채

2024년 6월 30일 현재 호주 정부의 총자산은 9,890억AUD(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1,013억AUD(9.3%)가 감소하였으며, 총부채는 1조 5,565억AUD로 전년 대비 1,041억AUD(6.3%)가 감소하였다. 2024년 6월 28일(금)의 환율(1AUD=923.4KRW)을 적용하면 총자산은 약 913조원, 총부채는 약 1,437조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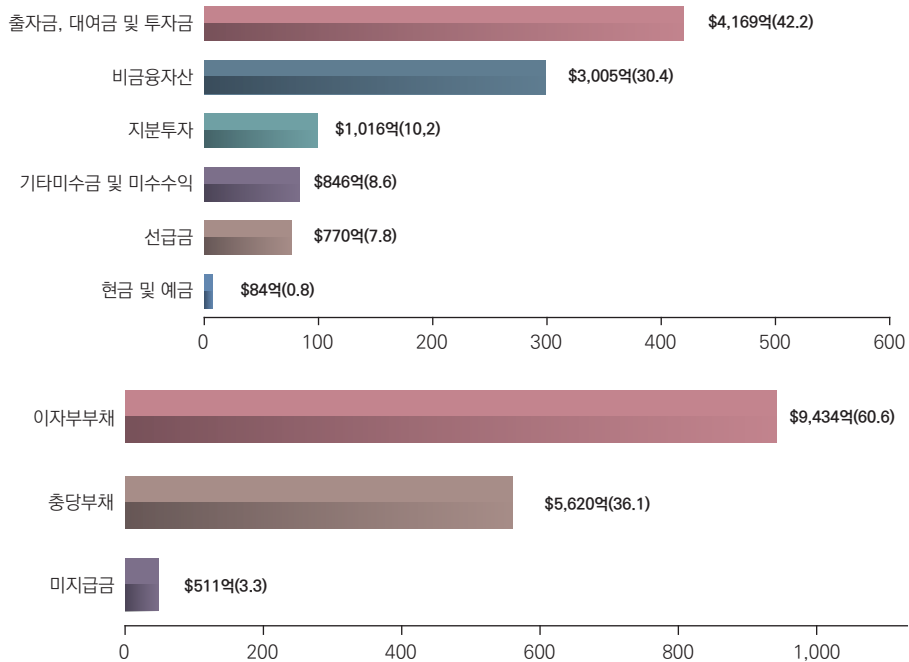
호주 정부의 순자산은 28억AUD 증가하여 대체로 변동이 없었으며(변동 폭 0.5%), 자산의 감소는 주로 금융자산의 감소에 기인한다. 금융자산은 2024회계연도 기준 6,885억AUD로 전년 대비 1,189억AUD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출자금, 대여금 및 투자금이 1,526억AUD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이며, 이는 지분투자 금액의 증가

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상쇄된다. 비금융자산은 전년 대비 175억AUD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자산의 증가 및 재평가 조정의 결과로 인한 공장, 장비 및 기반시설(Plant, equipment and infrastructure), 군사 장비, 토지 및 건물 증가에서 기인한다.

부채는 전년 대비 1,041억AUD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이자부부채(Interest bearing liabilities)의 1,459억AUD 감소에서 기인한다. 이자부부채의 감소는 주로 환율 정산 기금이 1,861억AUD 감소한 데에서 기인하며, 이는 371억AUD의 국채 증가 및 100억AUD의 차입 증가로 일부 상쇄된다. 총당부채 및 미지급금은 418억AUD 증가하였는데 주로 군 관련 개인 복지 보상의 증가(156억AUD), 군 관련 의료 보상의 증가(141억AUD)에서 기인하며, 미적립 퇴직연금 총당부채의 감소(46억AUD)로 일부 상쇄된다. 이 증감들은 주로 보험계리적 재평가에서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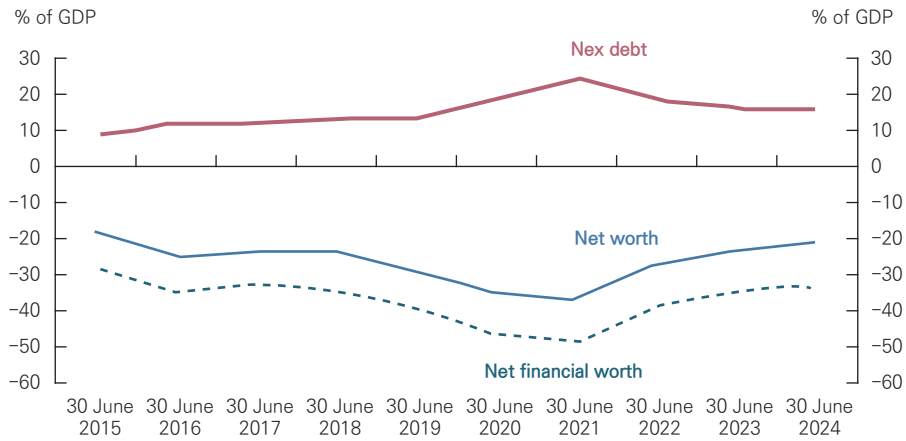
그림 4 자산 및 부채의 구성

(단위: 호주달러, %)



출처: 호주 재무부,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4*, p.14, <Chart 8>, p.15, <Chart 9>

그림 5 2014-15회계연도 이후의 재정상태표(GDP의 %)



출처: 호주 재무부,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4*, p. 7, <Chart 2>

결산개요를 통해 제시하는 상기 차트는 2014-15회계연도 이후 순자산(Net worth), 순금융자산(Net financial worth) 및 순부채(Net debt)의 GDP 대비 비중 및 변동 추이를 나타낸다. 순자산은 총자산(Total assets)에서 총부채(Total liabilities)를 차감한 값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며 GDP의 -20%를 하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순금융자산은 총금융자산(Total financial assets)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값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며 GDP의 -30%를 하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순부채는 예치금, 국채, 차입금 및 리스 부채의 합계에서 특정 금융자산(현금 및 예금, 선급금, 출자금, 대출금 및 투자금)의 합계를 차감한 값¹³⁾으로, 양(+)의 값을 나타내며 GDP의 10%를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세 지표 모두 2021회계연도까지 악화되다가 그 이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13) the sum of deposits held, government securities, loans and lease liabilities less the sum of selected financial assets (cash and deposits, advances paid and investments, loans and placements)

국가회계
재지통계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 2025년 국가회계교육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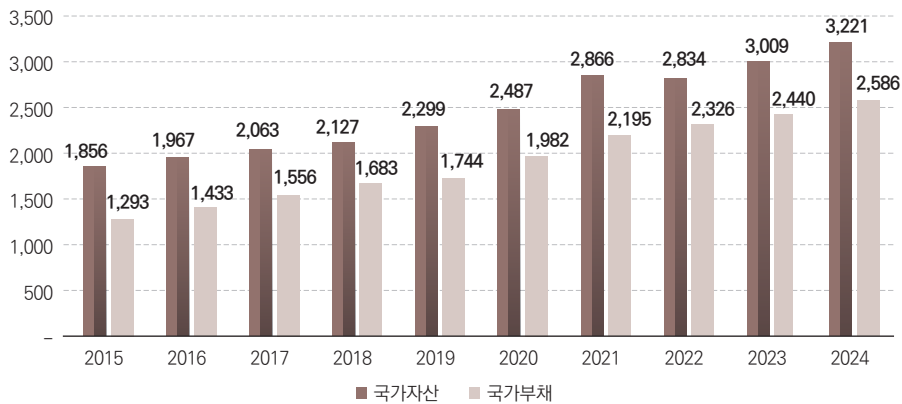
01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기획재정부는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2025년 4월 8일 발표하였다. 국가결산 결과 2024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회계·기금을 통합한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기금·여유자금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11.9조원 증가한 3,221.3조원, 부채는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46.3조원 증가한 2,585.8조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35.4조원이다.

2024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3,221.3조원으로 전년 대비 211.9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투자자산 171.8조원, 유동자산 27.8조원, 일반유형자산 11.3조원, 사회기반시설 1.4조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4년 말 현재 자산항목 중 투자자산과 일반유형자산이 각각 전체 자산의 45.0%와 22.7%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유동자산 18.0% 순이다.

그림 1 연도별 국가자산과 국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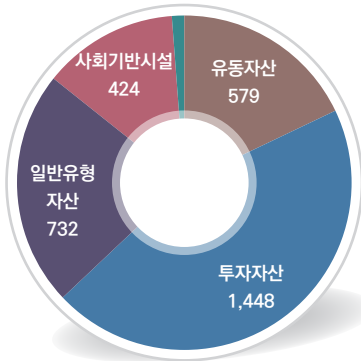
(단위: 조원)



출처: 2015~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그림 2 국가자산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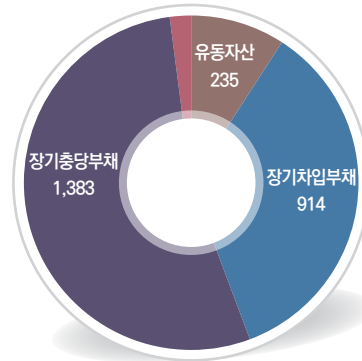
(단위: 조원)



출처: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그림 3 국가부채의 구성

(단위: 조원)



출처: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4년 말 현재 자산 세부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은 단기투자증권 397.5조원, 미수채권 41.8조원, 단기대여금 41.1조원 등 총 579.0조원이며, 투자자산은 장기투자증권 1,020.2조원, 기타투자자산 221.5조원, 장기대여금 205.7조원 등 총 1,448.1조원이다.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464.6조원, 전비품 124.0, 건물 70.1조원 등 총 732.2조원이다.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257.8조원, 하천 72.9조원, 철도 41.9조원 등 총 423.8조원이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2.5조원 등 총 2.8조원이다. 기타비유동자산은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22.8조원, 장기미수채권 12.6조원 등 총 35.4조원이다.

2024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총 2,585.8조원으로 전년 대비 146.3조원 증가하였다. 주요 요인은 장기총당부채 90.0조원, 장기차입부채 39.6조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4년 말 현재 부채 항목 중 장기총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53.5%, 장기차입부채는 35.3%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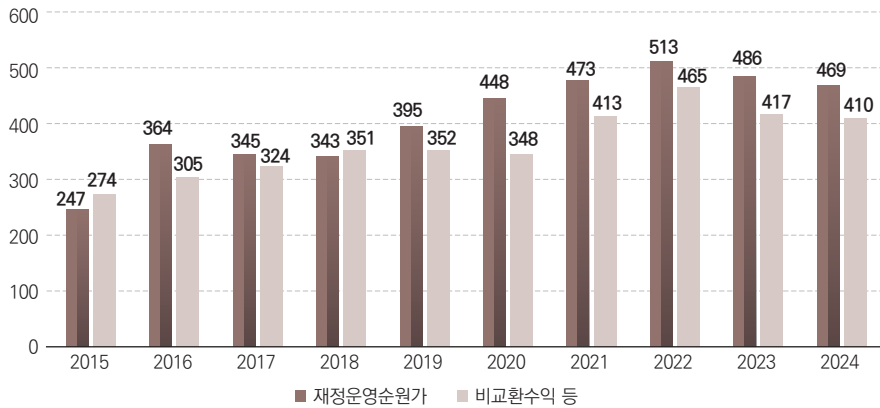
2024년 말 현재 부채의 세부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는 유동성장기차입부채 103.4조원, 단기차입금 97.5조원 등 총 234.8조원이고, 장기차입부채는 국채(자기국채 차감) 892.3조원, 공채(자기공채 차감) 18.4조원 등 총 913.8조원이다. 장기총당부채 1,383.4조원은 연금총당부채 1,312.9조원, 퇴직수당총당부채 58.9조원, 기타 11.5조원(보증총당부채 6.4조원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비유동부채 53.9조원은 장기미지급이자를 포함한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39.1조원, 장기미지급금 14.8조원이다.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순원가는 468.8조원이며 전년 대비 17.0조원이 감소하였다. 국세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등의 비교환수익 등은 410.1조원,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58.7조원이다.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림 4 연도별 재정운영순원가와 비교환수익

(단위: 조원)



출처: 2015~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02 2025년 국가회계교육 사업 추진

국가회계교육 사업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가회계와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가회계 업무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되어 오고 있다. 본 사업은 2017년까지 기획재정부에서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2018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운영과 전문적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가회계 분야의 전문기관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집합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국가회계 전문 교육, 국가회계의 활용,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 등 수강생 중심의 교육 운영과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국가회계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공무원의 회계 업무역량 강화 및 국가회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2025년 국가회계교육’ 사업에서 추진하는 네 가지 중점 실행 과제와 국가회계 전문교육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2025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일정을 소개한다.

가. 교육 목표

국가회계교육은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국가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국가회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업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네 가지 중점 실행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교육생 니즈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커리큘럼,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림 1 2025년도 국가회계교육 중점 실행 과제

비전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 운영	
미션	국가회계 전문기관으로서 센터의 전문성 발휘를 통해 공무원 회계 업무역량 강화 및 국가회계 활용 가능성 제고	
2025 년도 중점 실행 과제	1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실무 온라인 교육 과정 신규 개발</p> </div> <div style="width: 45%;"> <p>국가결산보고서 개편에 따라 해당 과정의 신규 제작</p> </div> </div>
	2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국가회계실무 교육생 확장</p> </div> <div style="width: 45%;"> <p>온라인 교육 홍보 강화하고 재무결산실무 개최 지역 변경 고려</p> </div> </div>
	3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교육 참석율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 개최 장소 및 일정 고려</p> </div> <div style="width: 45%;"> <p>실문조사를 반영하여 국가회계 전문교육과 집합교육의 장소 및 일정 조정</p> </div> </div>
	4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수강생 개인정보 보호 강화</p> </div> <div style="width: 45%;"> <p>개인정보 보호 및 파기를 위한 자체 매뉴얼 제작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p> </div> </div>

나. 중점 추진 과제

1)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실무 온라인 교육 과정 신규 개발

국가결산보고서 개편에 따른 국가회계법령, 국가회계예규 등의 변경을 반영하여 신규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작한다. 기존 온라인 교육과정은 2014년에 개발되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였지만, 교육영상이 노후화되어 최근 동향에 따른 신규 제작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규로 제작되는 온라인 교육과정은 강사가 강의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2025년 신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2026년에 교육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매년 발생하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예규 개정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2) 국가회계실무 교육생 확장

국가회계전문교육은 1개 차수가 3일 동안 진행되며, 1일차와 2일차는 국가회계이론, 3일차는 국가회계실무를 교육한다. 2024년도 국가회계전문교육 7차(서울)를 제외하고 국가회계실무 교육의 수강생 수는 국가회계이론 수강생 수의 평균에 비해

85% 수준으로, 이론 교육에 비해 실무 교육의 참석자 수가 적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국가회계교육포털'에서 국가회계실무 과정에 대한 설명을 보면, 국가회계이론 과정의 대상자는 '국가회계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회계실무 과정의 대상자는 '회계 담당 공무원'으로 설명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수강자를 한정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교육 신청자 입장에서는 국가회계실무 과정은 실무 담당자만 수강하는 과목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대상자를 회계 담당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실무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3) 교육 참석율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 개최 장소 및 일정 고려

국가회계전문교육은 지역별 주요 거점 도시(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세종)에서 집합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재무결산실무과정은 2024년까지 세종에서 개최하였지만, 2025년에는 서울에서 개최하여 참석율을 높이고자 한다. 주요 거점 도시에서 개최하는 국가회계전문교육도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참석자들이 참석하기 편하고, 강의하기 적절한 교육장을 탐색하여 차년도 국가회계전문교육 계획에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일정과 교육시간, 강의 장소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4) 수강생 개인정보 보호 강화

국가회계교육사업 운영으로 센터에 저장되어 있는 교육 신청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관 및 파기 절차를 매뉴얼로 만들고, 향후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센터에는 수년간 이어진 국가회계교육으로 수강자들의 개인정보가 다수 보관되어 있다. 수집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지는 시점을 논의하여 파기 시점을 정하고,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에 파기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고자 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에 따라 매뉴얼을 만들고, 이에 따라 센터는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절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파악하고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으로 우선 현황을 인지하고, 이후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전에는 일정 기간 해당 자료를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파기 시점에 파기하여 암호화 기간과 파기 시점을 기록하여 관리하고자 한다.

다. 2025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

2025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6월부터 10월까지 총 13차에 걸쳐 진행된다.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가회계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그리고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가 무료로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다.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2019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졌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과정이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부터는 집합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국가회계이론 과정(2일)

첫째 날에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의 기초 원리, 재무제표 만들기 실습, 국가회계제도의 이해를 다루며, 둘째 날에는 세입세출거래, 복식부기, 결산조정과 발생주의 관련 이론 및 실습을 통해 기초적인 내용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한다.

● 국가회계실무 과정(1일)

이 과정은 국가회계업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업무 유형별 유의사항을 알아보고, 실습과 국가재무제표를 통한 국가재정상태 이해 등의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 수입·지출 과정과 국유·물품 과정을 각각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두 과정을 모두 듣는 것도 가능하다.

● 재무결산실무 과정(2일)

중앙부처 재무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10월에 2회(회당 2일)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국가재무결산의 이해부터 수정전시산표 마감 전 유의사항, 내부거래실무, 결산조정분개 및 결산보고서 작성 방법까지 자세하게 다룬다.

●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1일)

국가자산과 부채의 특성, 프로그램세입과 프로그램 원가 등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본적인 국가회계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국가회계이론 과정을 먼저 수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교육이 필요한 부처를 위해 센터의 강사들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가회계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회계이론기초와 국가회계실무 동영상 교육 역시 ‘국가회계교육포털(<https://www.kipf.re.kr/edu/>)’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다양한 교육 방식과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이론은 물론 실무 역량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일정은 <표 1>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회계교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2025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일정(예정)

차수	지역	교육과정	일정(예정)	기간	비고
1차	서울	국가회계이론	6. 18.(수) ~ 6. 19.(목)	2일	
		국가회계실무	6. 20.(금)	1일	
2차	대구	국가회계이론	6. 25.(수) ~ 6. 26.(목)	2일	
		국가회계실무	6. 27.(금)	1일	
3차	부산	국가회계이론	7. 2.(수) ~ 7. 3.(목)	2일	
		국가회계실무	7. 4.(금)	1일	국유·물품
4차	대전	국가회계이론	7. 9.(수) ~ 7. 10.(목)	2일	
		국가회계실무	7. 11.(금)	1일	국유·물품
5차	서울	국가회계이론	7. 23.(수) ~ 7. 24.(목)	2일	
		국가회계실무	7. 25.(금)	1일	
6차	광주	국가회계이론	8. 6.(수) ~ 8. 7.(목)	2일	
		국가회계실무	8. 8.(금)	1일	
7차	서울	국가회계이론	8. 27.(수) ~ 8. 28.(목)	2일	
		국가회계실무	8. 29.(금)	1일	국유·물품
8차	세종	국가회계이론	9. 3.(수) ~ 9. 4.(목)	2일	
		국가회계실무	9. 5.(금)	1일	국유·물품
9차	비대면	국가회계이론	9. 10.(수) ~ 9. 11.(목)	2일	
		국가회계실무	9. 12.(금)	1일	
10차	비대면	국가회계이론	9. 17.(수) ~ 9. 18.(목)	2일	
		국가회계실무	9. 19.(금)	1일	국유·물품
11차	서울	재무결산실무	10. 16.(목) ~ 10. 17.(금)	2일	
12차	비대면	재무결산실무	10. 23.(목) ~ 10. 24.(금)	2일	
13차	비대면	국가회계의 활용	10. 29.(수)	1일	

※ 본 교육은 내부사정에 따라 장소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국가회계
재지통계



재정통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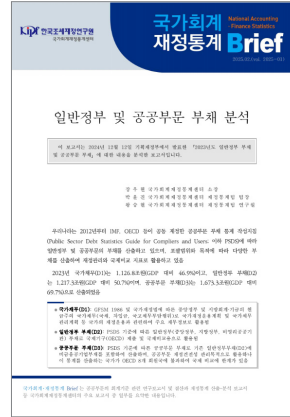


-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분석」 발간
- 『2024 알기 쉬운 재정통계』 발간

01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분석」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분석」을 주제로 한 국가회계·재정통계 Brief(2025-01)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Brief는 2024년 12월 1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를 기초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 내용에 적자성 국가 채무 추세 분석, 국제동향 분석 등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였다.



가. 부채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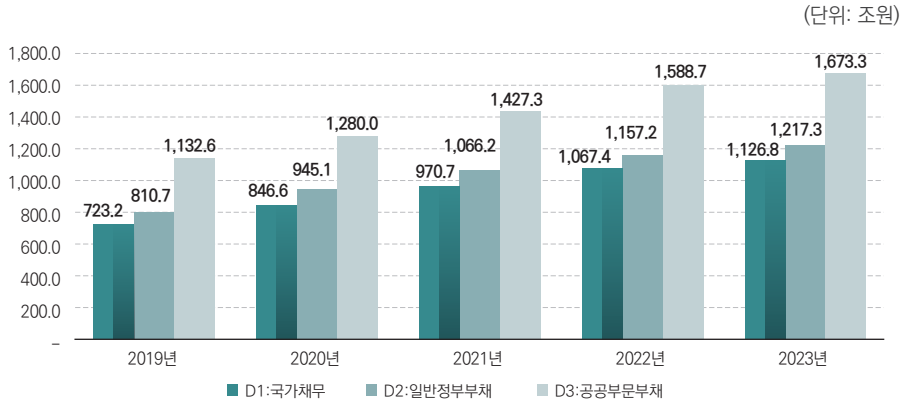
2023년 정부의 포괄 범위에 따른 국가채무와 부채(총부채¹⁴⁾)의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유형	2023년 규모 (GDP 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 (D1)	1,126.8조원 (46.9%)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일반정부 부채 (D2)	1,217.3조원 (50.7%)	D1+비영리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PSDS 발생주의	국제 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673.3조원 (69.7%)	D2+비금융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PSDS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

우리나라의 부채 종류별 총부채 금액의 최근 5개년 추세는 [그림 1]과 같으며,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D2는 2019년 810.7조원에서 2023년 1,217.3조원으로 증가(연평균 10.7%)하였고, D3은 1,132.6조원에서 1,673.3조원으로 증가함(연평균 10.2%). 2020년의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확대가 2022년까지 이어지면서 부채가 증가하였고, 최근 경기 여건 악화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로 부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14) 총부채(Gross Debt Liabilities)란 채무상품의 형태를 띤 모든 종류의 부채로, 채무상품(Debt Instruments)은 채무자가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로 채권, 차입금,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

그림 1 부채 종류별 총부채의 5개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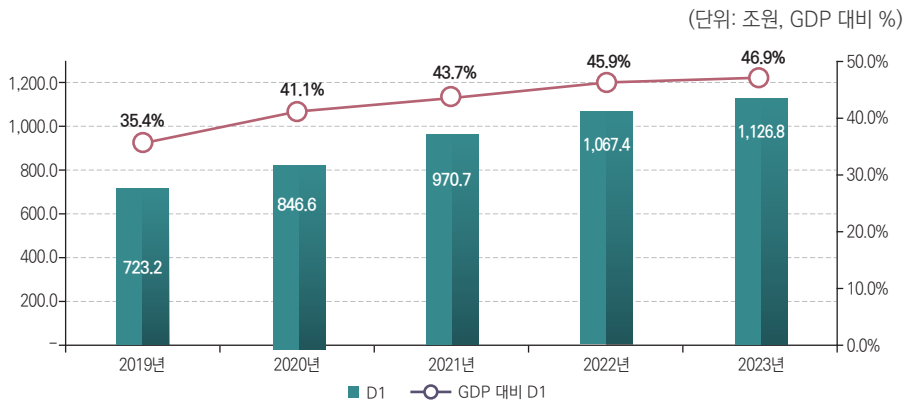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1월, VOL. 132, 2025.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D1 분석

2023년의 D1은 1,126.8조원(GDP 대비 46.9%)으로 전년 대비 59.4조원(GDP 대비 비중 1.0%p)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54.3조원) 등을 위한 국고채 증가(60.5조원)에서 주로 기인함. D1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한 지출 증가로 인해 매년 증가하여 왔으나 그 증가 폭은 감소하는 추세임*

* 2020년 123.4조(5.7%p), 2021년 124.1조(2.6%p), 2022년 96.7조(2.2%p), 2023년 59.4조(1.0%p) 증가

그림 2 D1의 현황 및 추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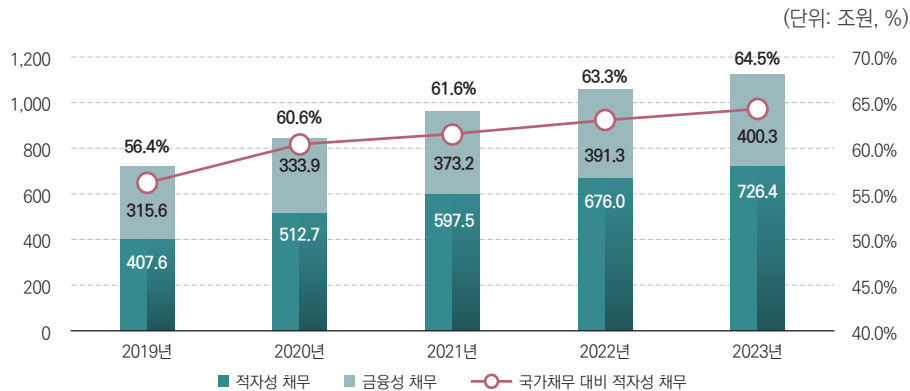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1월 VOL.132, 2025, p. 29

D1은 대응자산 유무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할 수 있음.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이며, 금융성 채무는 자산매각,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임. 적자성 채무의 최근 5개년

추세를 살펴보면,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2019년 56.4%에서 2023년 64.5%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그림 3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 추세 분석



출처: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국가채무 추이」, 검색일자: 2025. 1. 15.

다. D2 분석

1) 증감 분석

2023년의 D2는 1,217.3조원(GDP 대비 50.7%)으로 전년 대비 60.1조원(GDP 대비 비중 0.9%p)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을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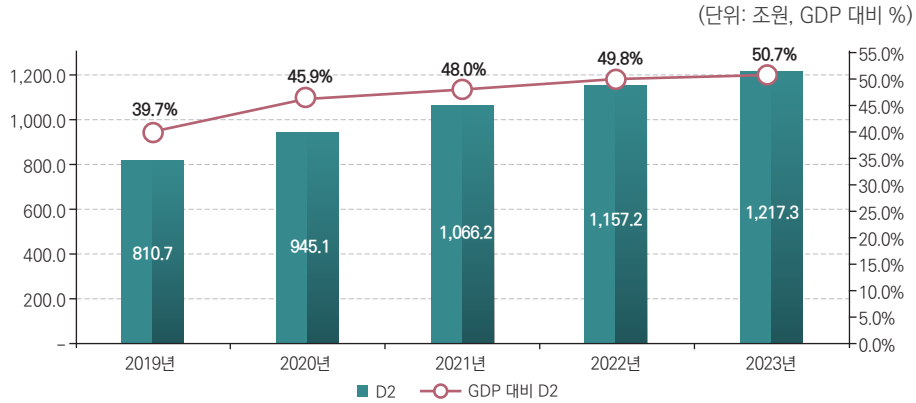
중앙정부 부채(1,167.6조원)는 전년(1,104.2조원) 대비 63.4조원 증가함. 일반회계 적자보전 등을 위한 국고채 및 공채 등 채무증권이 59.9조원 증가하였으며 주택 도시기금 청약저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 차입금이 0.8조원 증가하였음

지방정부 부채(70.7조원)는 전년(72.8조원) 대비 2.0조원 감소함. 지방자치단체는 기타미지급 감소 등으로 부채가 2.5조원 감소하였고, 교육자치단체는 민자사업(BTL) 부채 감소 등으로 부채가 0.6조원 감소함

D2는 2019년 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부채 증가율은 10.7%임.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로 D2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증가폭은 감소하였으나 완만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20년 134.4조(6.2%p), 2021년 121.1조(2.1%p), 2022년 90.0조(1.8%p), 2023년 60.1조(0.9%p) 증가

그림 4 D2의 현황 및 추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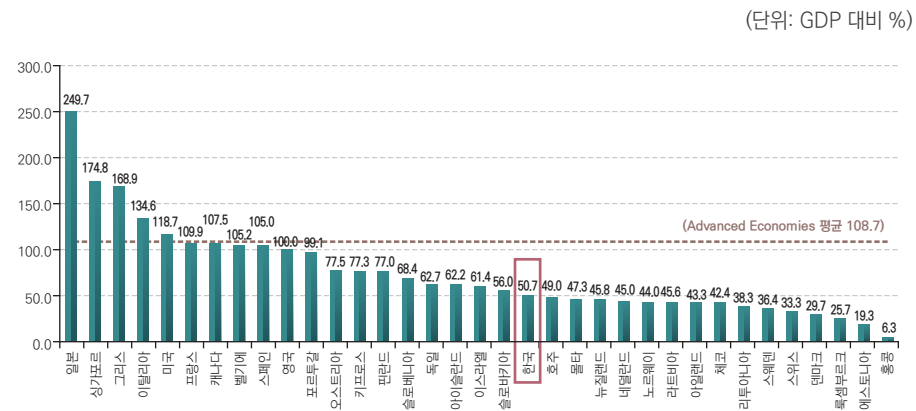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1월, VOL. 132, 2025.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국제동향

IMF Fiscal Monitor에서 Advanced Economies(이하 '선진국'이라 함) 자료를 이용해 GDP 대비 D2 비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50.7%)는 선진국 전체 평균(108.7%)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D2의 5개년 추세를 살펴보면 선진국 평균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2020년(121.8%)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정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유의적인 관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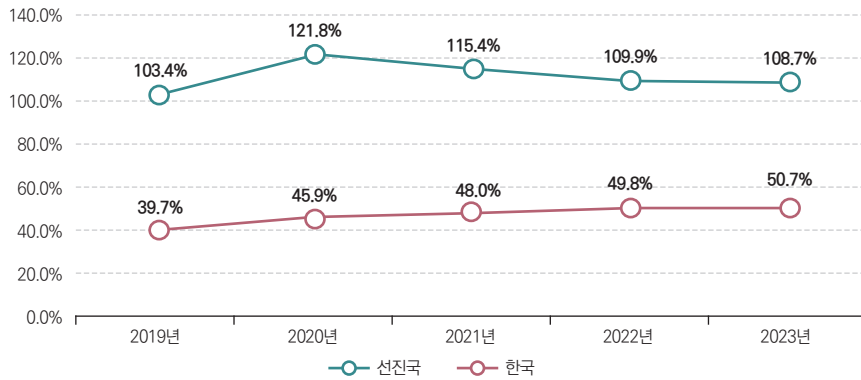
그림 5 일반정부 총부채(D2)의 국제 비교



출처: IMF Fiscal Monitor('24. 10.) <Table A7. Advanced Economies: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한국은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D2) 기준

그림 6 일반정부 총부채(D2)의 5개년 추세 비교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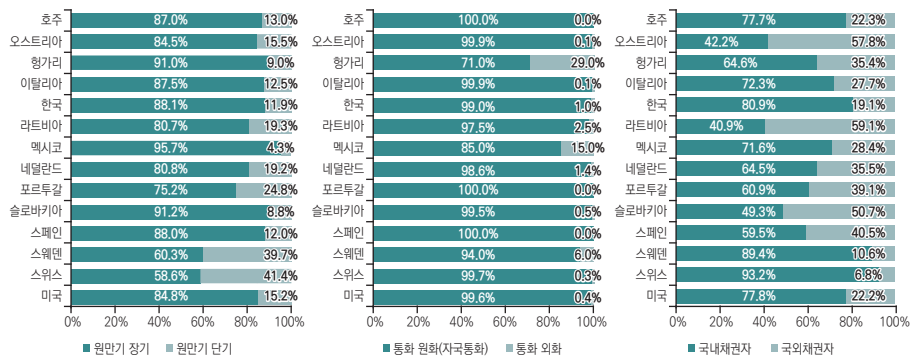


출처: IMF Fiscal Monitor('24. 10), <Table A7. Advanced Economies: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한국은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D2) 기준

부채유형별 추가 분석을 위해 OECD 회원국의 만기별(장기/단기), 통화별(자국/외화), 채권자 거주지별(국내/국외) 비중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장기부채(88.1%), 자국통화(99.0%), 국내채권자 보유(80.9%) 비중이 높아 부채의 질적 측면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림 7 일반정부 부채(D2) 유형별 비교

(단위: %)



출처: OECD Data Explorer, "National Accounts >> Quarterly Public Sector Debt," 검색일자: 2025. 2. 5.

(원만기별) 대부분 장기부채의 비중이 더 높으며, 장기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로 95.7%임. 반면 단기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로 41.4%임. 단기부채가 많으면 유동성 위험이 높아지므로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에 상응하는 단기 금융자산 보유를 통한 유동성 관리가 필요함

(통화별) 대부분 원화(자국통화) 부채의 비중이 더 높으며, 원화(자국통화) 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100%인 반면, 외화 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헝가리로 29.0%의 비중을 보임. 외화 부채가 많으면 환위험이 높아지며, 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등 환위험 관리가 필요함

(채권자 거주지별) 국내채권자가 보유하는 부채 비중이 더 높은 편이나, 그렇지 않은 국가도 일부 있음. 국내 채권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로 93.2%이며, 국외 채권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로 59.1%임

라. D3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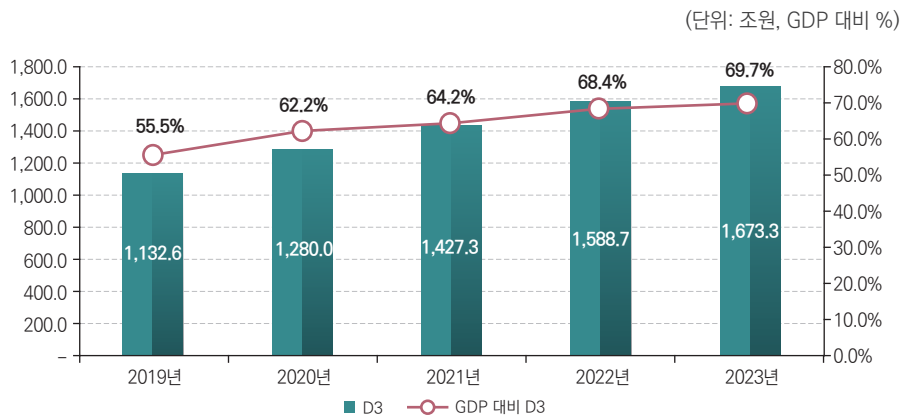
1) 증감 분석

2023년의 D3은 1,673.3조원(GDP 대비 69.7%)으로 전년 대비 84.6조원(GDP 대비 비중 1.3%p) 증가함. 공공부문 부채 중 일반정부 부채(D2)는 전년 대비 60.1조원 증가하고,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8.0조원 증가함.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한전 및 발전자회사 12.9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6.8조원, 한국도로공사 2.4조원 등으로 주로 차입금 및 공사채 증가에 기인함

D3의 GDP 대비 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임*

* 2020년 147.4조(6.7%p), 2021년 147.4조(2.0%p), 2022년 161.4조(4.2%p), 2023년 84.6조(1.3%p) 증가

그림 8 D3의 현황 및 추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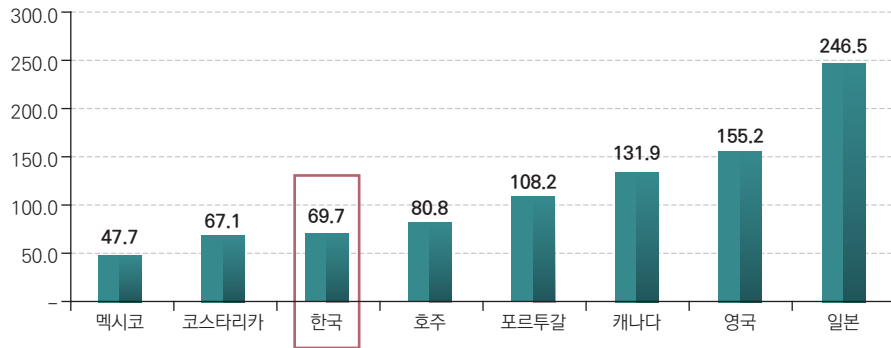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1월, VOL. 132, 2025.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국제동향

한국의 D3은 OECD 회원국 중 공공부문 부채를 공시하는 8개국 중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임

그림 9 D3의 국제 비교

(단위: GDP 대비 %)



출처: OECD Data Explorer, "National Accounts >> Quarterly Public Sector Debt," 검색일자: 2025. 2. 5.



02 『2025 알기 쉬운 재정통계』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재정통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통계 산출방식 및 분석결과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5 알기 쉬운 재정통계』를 발간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통계 개념과 작성대상 정부 범위, 통계 산출과정 등 산출방식 전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결과에 대한 분석을 수록하고 있어 우리나라 재정통계 주요 지표의 추이 변화와 국제비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정부의 범위나 부채의 개념 등 누구나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Q&A 형식으로 구성하여 정보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도입 과정과 이로 인한 효과를 기술하였으며, 최근 GFSM 2014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를 담고 있어 재정통계 활용과 관련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 알기 쉬운 재정통계』는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누구나 쉽게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표 1 『2025 알기 쉬운 재정통계』 목차

PART	목차
1	재정통계 살펴보기
2	재정통계 작성대상 알아보기
3	재정통계 보고서 이해하기
4	재정통계 주요 계정과목 찾아보기
5	우리나라 재정통계 산출결과 분석하기
부록	2023 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

국가회계
재정토계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 동향



-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현황
-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일정 및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현황
- 일본의 공익법인 관련 회계기준 현황

01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현황

가.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현황

기획재정부는 2025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총 331개 기관(전년 대비 +4개)을 2025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관리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구분하고,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표 1 공공기관 유형 구분

공공기관 유형		지정요건	
공기업 (31개)	시장형 (14개)	자체수입 / 총수입 $\geq 50\%$ (기금관리기관은 $\geq 85\%$)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 / 총수입 $\geq 85\%$
	준시장형 (17개)	직원정원 ≥ 300 명, 총수입액 ≥ 200 억원, 자산규모 ≥ 30 억원	시장형이 아닌 공기업
준정부 기관 (57개)	기금관리형 (12개)	자체수입 / 총수입 $< 50\%$ (기금관리기관은 $< 85\%$)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45개)		기금관리형이 아닌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출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4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였고, 정원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 유형 재분류가 필요한 3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 지정하였다.

표 2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상세 변동내역

구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신규 지정 (+4)	문체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기타공공기관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유형 변경 (±3)	산업부	대한석탄공사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산림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기타공공기관 → 준정부기관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5. 1. 21.

표 3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

구분	'24년	'25년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2	31	△1	-	-	△1
▪ 시장형	14	14	-	-	-	-
▪ 준시장형	18	17	△1	-	-	△1
② 준정부기관	55	57	+2	-	-	+2
▪ 기금관리형	12	12	-	-	-	-
▪ 위탁집행형	43	45	+2	-	-	+2
③ 기타공공기관	240	243	+3	+4	-	△1
계	327	331	+4	+4	-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5. 1. 21.



02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일정 및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현황



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절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에 따라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사원총회 등의 승인 의결로 확정하고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 규칙에 따라 회계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3월 15일까지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후 4월 10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확정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확정된 결산서를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공기업은 제외한다.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5월 15일까지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에 감사원 결산 검사 결과(7월 10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 보고 후 7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 1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일정 요약

결산서 제출	결산서 승인	감사원 제출	감사원 → 기획재정부 송부	국회 제출
3월 15일	4월 10일	5월 15일	7월 10일	7월 31일

나.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4조에 따라 기관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 전 재무제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4조(결산서 제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결산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 7. 1.〉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84개의 기관은 2024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를 공공기관 결산 시스템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였다. 제출대상 자료는 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자본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⑤ 주석이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별도 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감사 전 재무제표의 기한 내 제출 여부, 제출된 자료의 완전성, 기관별 주석 작성의 충실성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모든 기관이 기한 내 감사 전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주석 내용도 충실하게 작성하였다.

표 2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전 재무제표 제출 현황

(단위 : 기관 수)

구분		2023 회계연도	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 유형별		
				연결/개별	(별도)	
전부 제출		83	84	84	40	
제출 위반(부실기재)		1	-	-	-	
공기업	시장형	전부 제출	12	13	13	13
		제출 위반	1	-	-	-
	준시장형	전부 제출	19	19	19	14
		제출 위반	-	-	-	-
준정부	기금관리형	전부 제출	8	8	8	4
		제출 위반	-	-	-	-
	위탁집행형	전부 제출	44	44	44	9
		제출 위반	-	-	-	-
합 계		84	84	84	40	

향후 감사 전 재무제표가 보다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결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관의 회계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인의 감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회계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03 일본의 공익법인 관련 회계기준 현황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공익법인회계기준 발전을 위해 지난 2022년 「공익법인회계기준 해외사례 비교 분석」 위탁연구과제를 진행하였다. 위탁연구보고서에는 해외 각국의 공익법인과 관련한 회계기준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이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해외 공익법인과 관련한 회계기준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일본의 공익법인과 관련한 회계기준 현황을 다루며, 추후 다른 국가들의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가. 회계기준 제·개정

일본은 1971년 행정관리청의 권고에 따라 공익법인감독사무연락협의회를 설치하였으며, 1977년 공익법인감독사무연락협의회로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1978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다.

일본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은 1977년 제정 후 3회 전면 개정(1985년, 2004년, 2008년) 및 2회 일부 개정(2009년, 2020년)되었고,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본 공익법인회계기준 주요 제·개정 내용

제·개정 시기	제·개정 주요 내용
1977. 3. 4.(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지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제시 복식부기로 수지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유기적 관련
1985. 9.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지에산서, 회계장부 및 계산서류(수지계산서, 순재산증감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작성 의무화
2004. 10.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산서류를 대신하여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순재산증감계산서 및 재산목록) 작성 의무화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에서 일반에 대한 정보공개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목적 전환
2008.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년 공익법인 제도 개혁 관련 3법 제정을 근거로 기준 정비 회계기준 및 주해의 부분을 본 회계기준으로 하고 별표 및 양식의 부분은 운용 지침으로 함 재무제표 범위에서 재산목록 제외, 부속명세서 작성 규정

일본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인정등위원회에서 개정한다. 공익인정등위원회는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국가 부처 소관의 공익법인의 인정과 공익법인의 감독에 관한 심의를 진행한다. 공익인정등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개최하고, 위원 과반수 참석 및 참석 위원 반수 이상으로 의결이 이루어진다. 또한 공익인정등위원회 내부에 공익법인의 회계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여 공익법인 회계의 실무상 과제, 환경 변화에 따른 회계 이슈 등을 검토한다.

나. 회계기준 적용 대상

일본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공익법인인 공익사단·재단법인과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신청을 하는 일반사단·재단법인이 있으며,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제123조 제1항에 규정된 이행법인과 제60조에 규정된 특례민법법인(공익사단·재단법인 또는 일반사단·재단법인으로 이행 신청을 할 때 계산서류를 작성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다. 공시

일본의 공익법인 제도와 현황 정보는 일본 공익법인 정보 사이트¹⁵⁾에 공개되어 있다. 사이트는 공익법인의 기본적인 제도 해설, 기부세제의 내용, 법인의 공익성을 인정받기 위한 정보, 행정서류 등 법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 공익인정등위원회의 정보 및 공익법인 제도 관련 법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일본의 공익법인 정보 사이트에 공익법인의 상세 정보를 공시하지만, 공익법인의 일반 현황(법인 명칭, 구분, 행정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홈페이지, 사업연도, 사업 종류, 사업 개요 등)에 국한하여 공시한다. 공익법인의 재무정보는 별도로 공시하지 않으며, 행정청에 제출할 의무만 있다. 공익법인이 행정청에 제출한 재무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열람 청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라. 회계기준 내용

1) 일반원칙

일본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은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계속조직(공익법인이 사업 폐지, 청산 등을 하지 않고 계속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다. 회계기준은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순재산증감계산서, 현금흐름표)와 부속명세서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며, 중요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기록한다. 필요한 경우 구분회계를 적용하며, 이때 내부거래 금액은 대차대조표와 순재산증감계산서에서 상계한다.

2)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해당 사업연도 말 자산, 부채, 순재산의 상태를 표시한다. 자산과 부채는 각각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분류하고, 순재산은 지정순재산과 일반순재산으로 분류한다. 지정순재산은 기부에 의해 받아들인 자산으로 기부자의 의사에 의해 해당 자산의 사용에 제약이 부과되는 순재산이고, 일반순재산은 순재산 금액 중 지정순재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한다.

15) 公益法人Information, <https://www.koeki-info.go.jp>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으로 측정하며 자산 유형별 가액 측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른다. 교환, 수증 등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어음·미수금·대부금 등의 채권은 취득가액에서 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을 가액으로 측정한다. 만기보유채권, 자회사 주식 및 관련 회사 주식은 취득가액으로 하며 그 외 유가증권은 시가를 가액으로 한다. 만기보유채권의 액면금액과 취득가액이 다를 경우 상각후원가법에 근거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액으로 측정한다. 재고자산은 취득가액을 가액으로 하며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시가를 가액으로 측정한다. 유·무형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액으로 측정하며 시가가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시가를 가액으로 한다. 다만 사용가치가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용가치를 가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3) 순재산증감계산서

순재산증감계산서는 일반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재무제표로, 공익법인은 영리 활동을 수행하지 않기에 손익이라 표현하지 않고 순재산증감으로 표현한다. 순재산증감계산서는 일반순재산증감과 지정순재산증감으로 나뉘고, 일반순재산증감을 경상증감과 경상외증감으로 구분한다.

일반순재산증감은 경상수익과 경상비용을 기재하여 당기 경상증감을 표시하고, 경상외증감을 가감하여 당기 일반순재산증감액을 표시한다. 또한 일반순재산 기초잔액을 표시한 후 가산하여 일반순재산 기말 잔액을 표시한다. 지정순재산증감은 발생원인별로 지정순재산 증감액을 표시하고 지정순재산 기초 잔액을 표시한 후 가산하여 지정순재산 기말 잔액을 표시한다.

기부로 받아 지정순재산으로 구분된 자산의 제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지정순재산에서 일반순재산으로 이체하며 이체금액은 성격에 따라 경상수익 또는 경상외수익으로 기재한다.

공익법인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보조금, 부담금, 이자 보급금 및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급부금)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을 수취보조금으로서 지정순재산증감에 기재한다. 이후 보조금 등의 지출 목적에 따라 지정순재산에서 일반순재산으로 이체한다. 또한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목적하는

지출이 예정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처음부터 일반순재산증감에 기재할 수 있다. 보조금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교부 업무를 대행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인 경우 해당 보조금 등은 예치 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사업연도 말의 잔고를 부채에 기재한다.

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해당 연도의 현금과 현금등가물의 수입과 지출을 대상으로 기록하며,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현금흐름은 사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및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한다.

5) 필수주석 및 부속명세서와 재산목록

일본의 공익법인회계기준은 17개의 필수주석을 규정하고 있다. 필수주석의 목록은 <표 2>와 같다.

표 2 일본 공익법인회계기준 필수주석 목록

(1) 계속조직의 전제에 관한 주석
(2) 자산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총당금의 계상 기준 등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중요한 회계 방침
(3) 중요한 회계 방침을 변경했을 때는 그 취지, 변경의 이유 및 해당 변경에 의한 영향액
(4) 기본재산 및 특정자산의 증감액 및 그 잔액
(5) 기본재산 및 특정자산의 재원 등의 내역
(6) 담보에 제공하는 자산
(7)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누계액을 직접 공제한 잔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및 당기 말 잔액
(8) 채권에 대해 대손총당금을 직접 공제한 잔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채권금액, 대손총당금의 당기 말 잔고 및 해당 채권의 당기 말 잔액
(9) 보증채무(채무의 보증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우발채무
(10) 만기 보유 목적 채권의 내역 및 장부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11) 보조금 등의 내역 및 교부자, 당기의 증감액 및 잔액
(12) 기금 및 대체 기금의 증감액 및 그 잔액
(13) 지정순재산에서 일반순재산으로의 이체액의 내역
(14) 관련 당사자와의 거래의 내용
(15) 현금흐름표의 자금 범위 및 중요한 비(非)자금거래
(16) 중요한 후발 사건
(17) 그 외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재산의 상태 및 순재산 증감의 상황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부속명세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순재산증감계산서와 관련된 사항을 표시한다. 재산 및 특정자산 명세서와 총당금명세서가 포함된다. 다만 부속명세서에 해당 재무제표의 중요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지만 재무제표의 주기에 기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의 기재 생략 가능하다.

재산목록은 해당 사업연도 말 모든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명칭, 수량, 사용목적, 가액 등을 상세히 표시한다. 재산목록은 대차대조표의 구분과 동일하게 자산과 부채, 순재산으로 나누며, 재산목록의 가액은 대차대조표에 기재한 가액과 동일하다.





센터 동향



- 제25차 OECD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01 제25차 OECD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장우현 소장과 윤영훈 초빙연구위원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5차 OECD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작업반 연례회의(25th Annual Meeting of Working Party on Financial Management and Reporting)」에 참석하였다. 이번 연례회의는 주요 국가회계기준 제정기구의 동향 보고, OECD 사무국 및 회원국의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기준 제정 및 보고 사례와 함께 디지털 전환 전략 등 공공재정관리 개혁의 발전 및 사례 공유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이번 연례회의에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장우현 소장은 공공부문 재무관리 및 보고에서의 디지털 전환 전략 세션에서 ‘한국의 디지털 및 상호작용형 재정 보고의 성과와 도전과제(DIFR(Digital and Interactive Fiscal Reporting) in Korea: Achievements and Challenges)’를 주제로 한국의 사례와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발표를 통해 dBrain+ 시스템을 통한 한국 정부의 재정 관리 디지털 전환의 성과를 소개하고, 새로운 정책 분류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시스템 개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본 연례회의 참석을 통해 주요 국제기구와 OECD 사무국 및 회원국들의 최신 동향과 국제적 이슈를 파악하고, 우리나라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의 개선 연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센터에서는 이를 향후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관련 정책 제안 및 연구과제 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가. 출장 개요

출장기간: 2025. 3. 12.(수)~2025. 3. 16.(일)(3박 5일)

출장지: OECD 본부(파리, 프랑스)

출장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장우현 소장, 운영훈 초빙연구위원

	일시	내용
3.13.(목)	09:45~11:00	(세션 1) 지속가능성 보고: 선진 사례
	11:30~13:00	(세션 2) 지속가능성 보고: 민간에서 공공까지
	14:30~16:00	(세션 3) 기준 제정 활동 보고
	16:30~18:00	(세션 4) 재무보고의 대중 이해도 증진(분과 세션)
3.14.(금)	09:30~11:00	(세션 5) 공공 재정에서의 미래 인력 구축
	11:30~12:45	(세션 6) 공공부문 재무관리 및 보고에서의 디지털 전환 전략 (한국 사례 발표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장우현 소장)

나. 주요 내용 요약

세션 1 지속가능성 보고: 선진 사례(Advancing Public Sector Sustainability Reporting: Pioneering Practices)

1) OECD - 과거 개혁으로부터 얻은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의 발전에 대한 통찰(Advancing Public Sector Sustainability Reporting Insights from Past Reforms)

-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보고가 단순한 규정 준수를 위한 실행이 아닌, 의사결정과 책임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 지속가능성이 공공 및 민간부문의 중요한 거버넌스 차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수십 년 동안 지속가능성 관련 예산 및 재무보고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 중임
- 현재 OECD 회원국의 약 2/3가 녹색 예산을 편성하여 실행 중임

● 최근 지속가능성 보고 동향

- 민간부문의 경우 IFRS 재단이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ISSB)를 설립하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하였음
- 공공부문의 경우 국제 공공부문 회계기준 위원회(IPSASB)가 기후 관련 공시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IPSASB 기준은 기관 운영과 기후 관련 공공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음

● 과거 개혁의 교훈

- 정보 통합의 중요성
 - 추가 보고가 반드시 더 나은 투명성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병렬적이거나 조정되지 않은 보고 체계가 생성될 위험이 존재함
 - 녹색 예산, SDG 예산, 새로운 지속가능성 공시 등의 요구사항 간의 관계 명확화 필요
- 의사결정을 위한 보고로의 활용
 - 비재무정보(NFI)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조직적, 정보적, 문화적 장애요인이 존재하며, 그린워싱 등 NFI의 상징적 또는 비도구적 사용의 위험이 존재함
 - 분석적 NFI 사용을 위한 조직 문화, 리더십 지원, 의사결정 자율성 등이 필요함

● 향후 방향

- 공공 부문 지속가능성 보고의 합리화
 - 통합 보고 접근법 채택: 일관된 개념, 데이터와 표현을 사용
 - 계층화된 보고: 일반 대중용 간결한 보고서와 전문가용 상세 문서를 결합
- 체계적인 지속가능성 보고 프레임워크 개발
 - 지속가능성 정보의 생산, 해석, 사용을 포괄하는 체계적 모델을 제안
 - 이해관계자 중심 접근: 의사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초점을 맞춤 필요
- 감사 커뮤니티의 역할
 - 지속가능성 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문을 제공
 - 보고된 정보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한 보증 업무를 수행
 - 내부 및 외부 감사 기능 간의 협력을 강화

2) 캐나다 -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의 발전

● 배경 및 주요 정책

- 캐나다 정부는 기후 변화가 정부 운영, 경제 안정성,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캐나다는 연방 지속가능발전법, Net-Zero 배출 책임법 등의 법률과 함께 기후·자연·경제 관점 도구, 연방 지속가능발전 전략 등 다양한 정책 도구를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를 통해 정부 전체의 배출량을 추적하였고, 2005-06회계연도 대비 42% 감축을 달성함

● 향후 과제

- 데이터의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개선하여 보고 부담의 경감과 정보 유용성의 향상 사이의 균형을 유지
- 국제 표준과 캐나다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고 체계 개발

- 캐나다의 사례는 공공 부문에서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며, 법적 기반, 전략적 도구, 다양한 보고 메커니즘을 통해 지속가능성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3) 프랑스 - 재무부 산하 공공재정총국(DGFIP)의 녹색 전환 접근

● 주요 정책 및 이니셔티브

- 녹색 예산(Green Budgeting)을 통해 2021년부터 예산의 환경 영향을 측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예산법안의 부록으로 국가 예산 및 재정 지출의 환경 영향을 -1에서 3까지의 척도로 평가
- Bercy Vert(녹색 베르시) 계획은 2020년 채택된 재무부의 생태적 전환 계획으로, 주요 목표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 책임 있는 구매 개발, 지속가능한 이동성 개발, 직원 교육 및 인식 제고 등임

- 2022년 온실가스 배출 탄소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는데, 2019년 데이터 기반 첫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BEGES)를 작성하였으며, 목표는 2019년 대비 2024년까지 가스 배출량을 22% 감축하는 것임
- 생태적 전환의 주요 조치 및 성과
 -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2021년 구매 차량의 75%가 저공해 차량
 - 지속가능한 조달: 2022년 구매의 51%가 친환경적, 2024년 12월까지 100% 달성 목표
 - 친환경 디지털 관행: 데이터 센터 수 감축(2012년 56개→2024년 10개)
 - 교육: 2025년까지 공무원 교육, 2027년까지 100% 직원 교육 목표
- 프랑스 재정총국은 생태적 전환을 위해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예산, 운영,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국가의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음

세션 2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민간에서 공공까지(Standards in Sustainability Reporting: From private to public sector)

1)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

- ISSB는 투자자, 기업, 국제 정책 입안자들의 요구에 따라 IFRS 재단 산하에 설립 되었으며, 의사결정에 유용하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 이니셔티브 의 난립 종식 및 효율적인 보고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ISSB 기준의 특징은 글로벌 기준선 역할을 하는 포괄적인 공시 기반을 제공하며, 비교 가능하고 의사결정에 유용한 공시를 위한 공통 언어로, 글로벌 자본 시장의 투자자 요구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요 기준으로는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기후 관련 공시)가 있으며, 2025년 3월 기준 22개 국가가 ISSB 표준을 채택 또는 사용 결정을 완료하였고, 14개 국가가 채택 또는 사용을 위한 진행 과정 중에 있음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ISSB 표준을 승인하고 자본시장 사용에 적합함을 인정하였으며, 130개 회원 국가에 ISSB 표준을 각국 규제 체계에 통합하도록 권고하였음
- 2026년까지의 작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속적인 기준 개발 및 개선을 계획하고 있음
- ISSB는 지속가능성 보고의 글로벌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와 기관의 지지를 받고 있음

2) IPSASB(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 공공부문 회계기준 위원회)

- IPSASB는 글로벌 공공부문 회계기준 제정 기관으로 39개의 발생주의 기반 국제 공공부문의 회계기준(IPSAS)과 3개의 권장실무지침(RPG)을 보유하고 있음
- 1개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공개초안(SRS ED)을 통해 기후 관련 공시를 발표
- 2024~2028년의 전략은 발생주의 IPSAS와 국제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의 채택 및 이행 증대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공공재정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화하는 것임
-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함께 기업의 기후 보고에는 진전이 있는 반면, 국가 기관에 대해서는 중요한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IPSASB가 지속가능성 해결의 조력자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SRS ED 1 기후 관련 공시의 제안 내용으로는 먼저 중요성(Materiality)을 정의하면서 IPSASB 개념체계와 일치하였고, 첫 연차 보고기간에 대한 특별 규정을 제시함
- 공시를 통해 전략 및 계획, 예산 집행, 성과 관리, 이해관계자 보고, 감사 및 감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2025년 2월 28일에 공개초안 의견수렴 기간이 종료되었고, 2025년 12월에 최종 기준이 승인될 예정임
- IPSASB는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 관련 공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는 공공부문의 재정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세션 3 기준 제정 활동 보고(Report on Standards Setting Activities)

1)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 회계기준 위원회)

- 주요 프로젝트 현황
 - 사후이행 검토: IFRS 16 리스에 대한 사후이행 검토 진행 중
 - 연구 프로젝트: 현금흐름표, 무형자산, 상각후 원가 측정 등 진행 중
 - 기준 제정 프로젝트: 동적 위험관리, 지분법, 사업결합 등 진행 중
 - 유지보수 프로젝트: 충당부채 개선, 초 인플레이션 경제의 표시통화 등 진행 중
-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 보고 개선 활동으로 재무제표에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 영향 보고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ISSB와 협력하여 예시 개발 및 인식 제고 활동을 수행하였음
- 주요 기준서 발표 및 시행 예정
 - IFRS 18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IFRS 19 '공시의무가 없는 종속기업':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중소기업을 위한 IFRS 회계기준 제3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IFRS 해석위원회의 활동으로 2024년 9건의 의제결정을 발표하였으며, IASB 프로젝트에 8건의 의견 제공함
 - IASB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개발하고 개선하면서, 특히 기후 관련 보고와 재무제표 표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

2) IPSASB(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 공공부문 회계기준 위원회)

- 2024년의 주요 성과
 - 최종 발표된 기준서로 ① IPSAS 50 '광물자원의 탐사 및 평가' ② 양허 리스 및 자산 사용권 이전 계약에 관한 기준서 ③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리비용(IPSAS 12 개정) ④ 특정 IFRIC 해석서를 반영한 IPSAS 기준서 개정
 - 공개초안(ED) 발표: ED 88 '자산 사용권 이전 계약', ED 89 'IFRIC 해석서 반영을 위한 개정', ED 90 'IPSAS 46 측정 적용에 따른 IPSAS 기준서 개정', ED 91 '발생주의 IPSAS 최초채택 제한적 범위 업데이트', ED 92 '유형 천연자원'
- 2024~2028년 전략 및 업무 계획은 발생주의 IPSAS와 국제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의 채택 및 이행 증대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공공재정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화하는 것임
 - 글로벌 기준 제정과 채택 및 이행 장려에 초점을 맞추며, 유지보수 활동을 강화하여 적용 그룹 운영 및 사후이행 검토(PIR)를 수행함

3) EPSAS(European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유럽 공공부문 회계기준)

- 예산 프레임워크 지침을 개정하고 있으며, 유럽 위원회는 2025년 말까지, 그 이후 5년마다 EU 내 일반정부의 공공 회계 현황에 대해 보고해야 함
- 향후 계획
 - 2025년 말까지 EU 내 공공 회계 현황에 대한 보고서 발표 예정
 - EPSAS 구조 개정 및 이슈 페이퍼 개발 지속
 - 회계 성숙도 및 구현 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EPSAS의 발전은 EU 회원국들의 공공부문 회계 표준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IPSAS를 기반으로 하되 EU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세션 4 재무보고의 대중 이해도 증진(Empowering Fiscal Understanding) 관련 분임 토의

- 현재 전략 및 주도 기관
 - 대중의 재정 및 재무 보고서 이해도를 높이고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이를 주도하는 조직(정부 부처, 국제 금융 기관 등)에 대한 논의
- 이니셔티브의 실행 중 겪은 어려움
 -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에서 직면한 규제적, 제도적, 정치적 및 지식적 장애물 등
- 교훈 및 개선 방향
 - 기존 전략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방법과 새로운 접근법을 탐색

세션 5 공공 재정에서의 미래 인력 구축 (Building Tomorrow's Workforce in Public Finance)

1) 영국 - GFF(Government Finance Function, 정부 재무 기능)의 사례

- 주요 소개
 - 2019년 기준 약 1만명의 인력이 정부 재무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9~2024년에 GFF의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였고, 2030년까지 기술 격차 해소에 초점에 초점
 - 주요 성과로는 ① 재무 경력 프레임워크(Finance Career Framework) 도입 ② 기술 포착 도구(Skills Capture Tool, SCT) 개발 및 구현 ③ 정부 재무 아카데미(Government Finance Academy, GFA) 설립 ④ 외부 인재 유치를 위한 채용 웹사이트 개설 등이 있음
- 기술 격차 해소
 - SCT를 통해 기술 격차를 파악하고 있으며, 투자, 상업 지식, 정부 재무, 전략, 데이터 분석 등 5개 주요 영역에서 기술 격차를 확인함
 - GFA를 통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미래 전략

- 2025년 2월에 GFF 전략 2030을 발표하면서, 미래 지향적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도구의 활용을 확대하며 인재 유치 및 유지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영국 GFF는 미래 지향적이고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여 공공 재정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2) 호주 - 재무관리 및 보고 환경의 변화

- 공공재정 전문가의 역할이 전통적인 재무 관리에서 현대적인 지속가능성 보고 및 기술 통합으로 변화하고 있음
 -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역량이 중요하며, 호주에서는 기후 및 배출 보고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음
 - AI는 공공재정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분석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호주 재무부는 AI를 정책 및 프로세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음
- 공공재정 분야의 인력 개발과 훈련이 주요 도전 과제이며, 협업, 후견, 인재 유치, 개발 및 유지 전략이 필요함
 - 공공재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학습, 역량 구축, 비전통적 재무 기술의 유연성 개발이 중요함

3) 이탈리아 - 공공 부문 회계 및 보고에서 AI와 디지털화 통합에 필요한 기술

- 연구 질문
 - 디지털 전환(DT)과 인공지능(AI)이 공공부문 회계 및 보고의 기술과 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등 6개 중앙 행정부에서 데이터를 수집
- 공공부문에서의 디지털 변혁과 AI 및 자동화
 - 공공부문의 변화는 민간부문보다 복잡하게 인식되며, 디지털 도구는 기존 재무 보고 프로세스와 일치해야 함
 - 새로운 IT 시스템은 보고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위험관리를 강화함

- AI와 자동화는 회계사들이 루틴 작업을 처리하고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는 회계사들이 더 중요한 업무와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회계사의 역할 및 기술 개발
 - 경험은 프로세스 설계 단계에서 특히 중요함
 - 필요한 기술로는 회계 시스템 설계 및 계획에 필요한 IT 지식, 데이터 해석과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문제 해결,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등이 중요해지고 있음
 - 기술을 향상시키면서도 강력한 공공 부문 회계 지식을 유지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 필요함
- 전통적인 지식은 여전히 가치있지만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며, 새로운 기술과 비판적 사고 및 창의성이 중요해짐
 - 디지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관련 지식과 복잡한 데이터 관리를 위한 고급 분석 기술이 필요함
 - 기술 투자와 함께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세션 6

공공부문 재무관리 및 보고에서의 디지털 전환 전략(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ies in financial management and reporting)

1) OECD – 공공 재정 관리에서 인공지능 활용(Us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 AI는 공공재정관리(PFM)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나타내고 있음
- AI는 예산 계획 및 모니터링에서 기준선 예측, 정책 비용 산정, 재정위험 패턴 식별에 사용되며, 머신러닝(ML)과 딥러닝(DL)은 예측 모델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여주지만, 모델 내부의 가정과 계산이 불투명한 ‘블랙박스’로 인식될 수 있음
- 재무 관리에서 AI, 특히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분석 작업에 시간을 할당할 수 있으며, ML과 DL은 프로세스의 품질과 내구성을 개선하여 부정합 지급(사기 또는 오류)을 방지함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에서는 자연어처리(NLP) 기반 챗봇을 통해 재정 문제에 대한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
- AI는 재정 보고를 디지털화하고 상호작용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나 AI 프로젝트의 비용과 성과는 대부분 공개되지 않아 평가가 어려우며, 오래된 IT 시스템과 취약한 데이터 거버넌스는 프로젝트 개발을 방해할 수 있음
- 필요한 조치로는 AI 도입 시 수요와 기술을 일치시키고, 기능의 도입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델 훈련은 AI 모델의 한계를 이해하는 고급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임
- 정부 차원의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실행 커뮤니티가 필요함
- 공공재정관리 프레임워크에 대한 영향
 - 알고리즘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 책임성은 어떻게 정의될 것인가?: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함
 - AI 도입에 따른 감시 기관의 역할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AI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필요함

2) 덴마크 - 재정 관리의 디지털 전환 전략

- 2025년 기준 재무부의 주요 디지털 솔루션
 - 재정 보고 및 분석 시스템, 예산 계획 및 모니터링 시스템, 회계 데이터 통제 및 승인 시스템, 재무 관리 시스템, 시스템 간 데이터 통합 플랫폼 등
 - 재정 법안 및 중앙 정부 회계 시스템에서 기존 메인프레임 기반의 솔루션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도입하여, 기존 플랫폼을 재사용하면서 필요한 경우 맞춤형 솔루션을 추가하여 기능 확장
 - 급여 및 공무원 연금 솔루션 재구성을 진행 중으로, 기존 레거시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솔루션의 개발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급여 지급 기능의 복잡성을 줄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킴

- 향후 전략으로는 시스템 간의 통합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솔루션 간의 긴밀한 연결, 데이터 통합 및 보안 강화, 기존 플랫폼 재사용 및 확장을 통한 전략적 플랫폼 통합, 그리고 재무 관리에서 RPA, 머신러닝 및 생성형 AI 활용 확대 등이 있음
- AI 활용의 경우 RPA에서 머신러닝 및 생성형 AI로의 전환, AI 기반 영수증 자동 처리 시스템 도입, 시스템 지원 및 테스트 솔루션 개발 등이 있음

3) 한국 - 디지털 및 상호작용형 재정 보고의 성과와 도전과제(DIFR(Digital and Interactive Fiscal Reporting) in Korea: Achievements and Challen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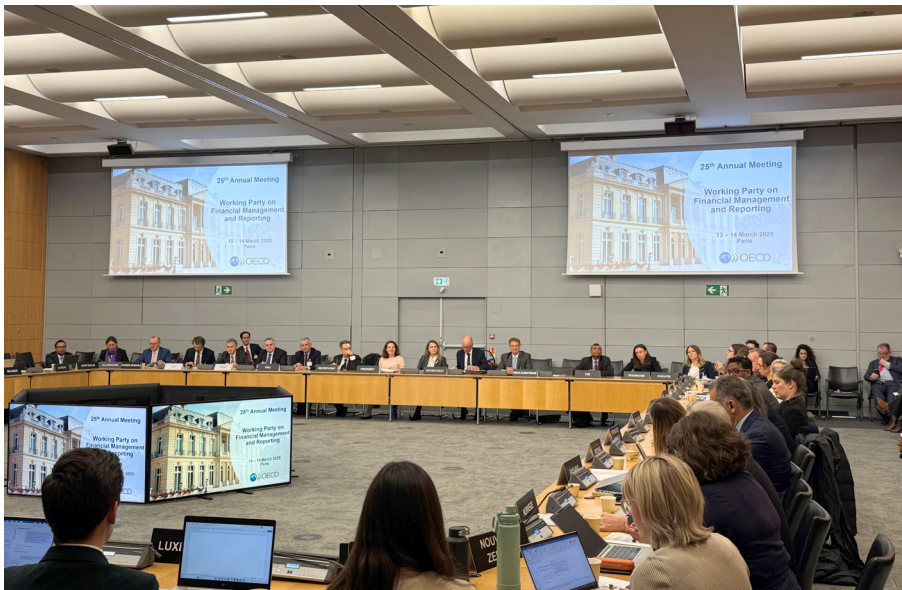
- dBrain+는 한국 정부의 최신 재정 관리 시스템으로, 예산, 회계, 재정 투명성을 혁신적으로 다루는 통합 시스템
 - 통합 데이터 분석, 부처 간 네트워킹, AI 기반 예측을 결합하여 24개 재정 프로세스를 관리함
 - 수입 및 지출 처리를 실시간으로 자동화하여 오류와 지연을 줄임
 - 발생주의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여 재정 정보의 전반적인 가시성을 제공
- dBrain+는 투명성 및 공공 연계, 효율성 증대, 정책 지원 등의 성과
 - 국민이 예산, 지출,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열린재정 포털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예산 모니터링 대시보드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촉진
 - 1만 7,000개 이상의 중앙 및 지방 기관과 공공기관의 재정 시스템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증대
 - AI 기반 예측을 통해 국고 잔액을 일단위로 예측하고, 장기 재정 위험을 시뮬레이션함
 - 프로젝트와 결과를 연결하여 데이터 기반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성과 기반 예산 정책을 지원하며, IMF의 보고 기준을 준수하여 국제 비교를 가능하게 함
- 그러나 dBrain+의 경우 하드웨어는 우수하지만 관리 인력의 기술 수준이 시스템에 미치지 못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며, 기존 시스템의 정책 분류 체계와 유연하지 않은 회계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COFOG의 한계

- COFOG은 프로그램에 여러 특성이 있더라도 한 가지로 분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K-Pop 산업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문화와 산업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COFOG에서는 이를 하나의 카테고리만으로 분류해야 함
- COFOG은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5W1H 정보(Who, What, When, Where, Why, How)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 관리와 재정 보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함

● 새로운 정책 분류 시스템(IBPCS) 개발

- COFOG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MECE(상호 배타적이면서 전체를 포괄) 기준에 기반한 새로운 IBPCS(Information Based Policy Classification System)을 개발 중임
- 이 시스템은 프로그램의 다양한 특성을 다중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5W1H 정보를 포함하여 정책 관리와 재정 보고에 필요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



제25차 OECD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작업반 연례회의(2025. 3. 13.~14., 프랑스 파리)

국가회계
재정토계



공지사항



구독 안내

- 「국가회계재정통계」는 회계전문연구기관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발간하는 분기 발간물로서, 주요 내용으로 국가회계, 국가결산, 국가회계교육, 재정통계,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에 대한 동향 및 분석 자료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 구독을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신청 <http://gafsc.kipf.re.kr>
- 이메일 신청 gafsc@kipf.re.kr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신 발간자료와 주요 발간자료 메뉴를 통해 연구보고서, 기타보고서, 브리프, 세미나자료 등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발간물 등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과 투명한 회계를 위한 노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앞장섭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440 Fax 044.414.2570

